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

연구책임 |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진 | 이지연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 이주연 한국지방세연구원 위촉연구원

요 약

본 연구는 지방세로 전환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지난해 11월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발표하였고, 이후 유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관련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권자가 ‘관할 세무서장’에서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되는 등 종합부동산세 징수업무가 국세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현재 국세청의 각 세무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면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운영인력 확보와 징수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체계에 부합하는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방세로 전환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 각각의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종합부동산세 징수업무는 시·도세 징수위임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징수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등)를 징수한 지자체가 세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방세로 전환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등 여타 지방세와 달리 세금을 부과·징수한 기초자치단체에 세입이 귀속되지 않고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복지 등에 의해 배부된다. 부과·징수와 세수귀속이 분리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상위정부로부터 시·도세나 부담금 징수를 위임받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임받는 경우 징수비용을 지급받고 있다. 시·도세를 징수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징수액의 3%를 받으며, 중앙정부의 부담금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다.

징수비용 지급규모는 인건비 및 시스템 구축비 등 징수업무에 들어가는 비용보전과 징수독려 차원의 징수인센티브가 고려되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시·도세 징수 부담금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 징수관련 인건비 및 시스템 구축비 등 업무처리 비용보전 규모로는 징수액의 3% 선이 적절하다.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시·도세 징수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징수비용으로 징수액의 3%를 지급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을 추정하여 산정된 징세비용도 3% 수준이다. 즉, 추정된 징세비용 규모는 332.3억원이고 이는 2012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1조 1311억원)의 2.9%이다. 다음으로, 업무처리 비용보전에 추가하여 종합부동산세 징수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징수액의 1~2%를 징수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율(82.8%)은 재산세(96.4%)보다 훨씬 낮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징수를 독려하는 주체와 수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있다. 시·도세, 부담금, 체납액의 징수위임은 위탁·수탁관계가 명확한데 반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징수를 담당하는 수탁주체는 분명하지만 위탁주체는 모호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시·도세 징수를 독려할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징수관리 수단이 없다.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불분명한 위탁·수탁관계와 징수관리수단의 부재로 인해 징수율이 더욱 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액의 1~2% 정도를 징수인센티브 재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업무처리 비용보전과 징수인센티브를 고려한 징수비용 지급규모는 징수액의 3~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2012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징수비용 지급규모를 추정하면 339(3%)~566억원(5%) 규모이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운영인력이 지방자치단체로 재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규모나 징수업무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단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 전체로 보면 인력 증가요인이 없으므로 지방세로 전환된 종합부동산세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수도 현행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합부동산세 인력확보는 징세비용의 최소화, 납세자 편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현행 국세청 등에서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지방자치단체로 재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 국세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배치되는 인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정을 거쳐야 한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세목별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목을 통합하여 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량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납세인원을 사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관련인력을 추정하였다. ‘납세인원’을 사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관련 운영인력을 추정한 결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 수는 474명이다.

추정된 종합부동산세 관련인력을 기초자치단체별로 배정하는 방법으로 ‘납세인원 비례 방식’과 ‘단계적 배정방식’을 설정하였다. ‘납세인원 비례방식’은 기초자치단체별 납세인원에 비례하여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을 배정하는 방안이다. ‘단계적 배정방식’은 기초자치단체가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수행하려면 최소한 1명 이상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별 납세인원 수에 따라 인력을 차등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이다. 납세인원 비례방식은 업무량에 비례하여 인원이 산정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무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 납세인원 비례방식으로 필요인력이 산정되면 1명도 배정받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상당수 발생한다. 인력을 배정받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징세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업무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인원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최소 1명 이상의 세무공무원을 배정하는 단계적 배정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체계에 부합하는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으로 재산세 비중을 상향하는 방안을 설정하였다.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면 세수배분에 대한 논의는 더욱 복잡해진다. 기존의 세수배분기준에 추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에 부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역공공재에 대한 가격기능을 어느 정도 담보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적 성격을 강화하려면 세수의 일정부분을 재산세규모나 징수규모에 따라 배분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현행 배분기준들 중 교육수요의 비중을 줄이고 재산세부과실적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제시하였다. 취약계층의 축소와 같은 교육재정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재산세부과실적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종합부동산세 배분공식에서 교육수요의 비중을 줄이고 재산세 부과실적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대표적인 지방세목인 재산세로 취급하여 그 비중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편리성과 투명성 면에서 우월한 대안일 수 있다. 몇 개의 예외치를 제외하면, 5%p나 10%p 수준에서 교육수요 비중의 축소와 재산세 부과실적 비중의 확대에 의한 자치단체들의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변화는 전체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수요비중의 축소와 재산세부과실적 비중의 확대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정형평화기능의 축소를 초래하

여,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일수록 현행보다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을 배분받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교부액 변화는 일부지역에서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교부액 변화는 $\pm 10\%$ 를 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물건소재지에 귀속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구(舊) 종합토지세에 적용된 선례가 있다.

주제어 :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 징수비용, 운영인력, 세수배분기준

목 차

✿ 요약

I. 연구목적 및 방법	1
1.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II.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의 주요 논의	9
1.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논의	11
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및 변천	11
나. 지방세 전환 논의	13
2. 지방세 전환에 대한 의견	14
가. 지방세 전환의 찬성	14
나. 지방세 전환의 반대	15
3. 지방세 전환 시 과세체계 변경	16
가. 현행 과세체계와 현황	16
나. 지방세 전환 시 과세체계	20
4. 지방세 전환 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변화	23
III. 징수비용의 지급 근거와 지급규모 추정	29
1. 징수위임의 종류와 현황	31
가. 시·도세 징수위임	31
나. 부담금 징수위임	34
다. 체납액 징수위임	39
라. 사무처리비	42
2. 징수비용의 지급 근거	43
가. 기초자치단체 간 징수위임	43

나.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	45
다. 적극적 징수독려	48
3. 징수비용의 지급규모 추정	50
가. 업무처리 비용보전 성격의 징수비용	50
나. 인센티브 성격의 징수비용	51
다. 전체 징수비용	53
4. 기초자치단체별 징수비용 시뮬레이션	53
가. 기본 가정	53
나. 기초자치단체별 시뮬레이션 결과	54
IV.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 확보와 인원 추정	67
1. 지방세 관련 업무와 인력현황	69
가. 지방세 관련 업무현황	69
나. 지방세 관련 인력현황	71
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인력현황	76
2. 인력 확보의 기본방향	79
3. 운영인력 추정	81
4. 기초자치단체별 운영인력 시뮬레이션	84
가. 운영인력 산정방법	84
나. 기초자치단체별 운영인력 시뮬레이션 결과	87
V.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 세수배분 방안	99
1. 기본방향	101
2. 향후 세수배분의 대안 모색	103
가. 세수배분의 현황 및 평가	103
나. 현행 배분비율의 합리적 조정	108
다. 징수지 귀속방식과 현행 배분방식의 혼합형태	109
3. 배분방식 시뮬레이션을 통한 장·단점 분석	115
가. 현행 교부액 산정요인별 배분효과	117

나. 교육수요와 재산세부과액지수 간 비중조정 결과	124
다. 3% 징수지 귀속방식의 배분효과	129
VI. 정책 제언	135
참고문헌 및 부록	143

표 목 차

〈표 II-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18
〈표 II-2〉 종합부동산세 연도별 납세인원과 세액	19
〈표 II-3〉 지방세 전환 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	21
〈표 II-4〉 지방세 전환 시 종합부동산의 부과·징수	22
〈표 III-1〉 국세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수수료	41
〈표 III-2〉 징수위임의 종류와 내용	45
〈표 III-3〉 광역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2012년)	46
〈표 III-4〉 건당 부과액과 징수율 비교	51
〈표 III-5〉 배부기준에 따른 징수비용 시뮬레이션 (징수액의 3% 가정)	55
〈표 III-6〉 기초자치단체별 징수비용 시뮬레이션 (징수액의 3% 가정)	58
〈표 IV-1〉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의 담당 업무	70
〈표 IV-2〉 광양시 세정과의 담당 업무	71
〈표 IV-3〉 연도별 지방세 인력 및 1인당 징수비 현황	73
〈표 IV-4〉 국세청의 연도별 인력 및 징세비 현황	74
〈표 IV-5〉 국세와 지방세 조직 및 인력비교	75
〈표 IV-6〉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과 세무서 수	76
〈표 IV-7〉 국세의 재산세과 납세인원 추이	77
〈표 IV-8〉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납세인원	78
〈표 IV-9〉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비율 추이	83
〈표 IV-10〉 기초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필요공무원 수	89
〈표 V-1〉 부동산교부세액 시·도별 배분현황 (2012년)	104
〈표 V-2〉 부동산교부세의 배분현황 (2012년)	105
〈표 V-3〉 부동산교부세액의 시·군·구 배분현황 설명통계 (2012년)	106
〈표 V-4〉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2012년)	107
〈표 V-5〉 징수지 세수규모의 결정요인 분석 (2012년도)	114

〈표 V-6〉 각 대안별 기초통계량	133
〈표 V-7〉 각 대안별 부동산교부액의 증감분포	133

그림 목 차

〈그림 II-1〉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후 업무변화	25
〈그림 II-2〉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후 업무처리 비교	26
〈그림 III-1〉 서울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지급규모와 비율	38
〈그림 III-2〉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상위 기초자치단체	47
〈그림 III-3〉 지자체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과 부동산교부세의 관계 (2012년)	52
〈그림 IV-1〉 연도별 국세청 및 지방세공무원 인력증가 현황	72
〈그림 IV-2〉 납세인원별 필요공무원 수	87
〈그림 V-1〉 부동산교부세의 배분현황 (2012년)	105
〈그림 V-2〉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종합부동산세 세수분포 I (2012년)	110
〈그림 V-3〉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종합부동산세 세수분포 II (2012년)	111
〈그림 V-4〉 배분기준별 교부세 배분결과의 도수분포그래프	119
〈그림 V-5〉 배분기준별 교부세 배분액과 재정력역지수와의 관계	121
〈그림 V-6〉 배분기준별 교부세 배분액과 현행 배분액의 비교	123
〈그림 V-7〉 교육수요지수와 재산세부과지수 간의 가중치 조정 후의 교부액 분포	125
〈그림 V-8〉 교육수요지수와 재산세부과지수 간의 가중치 조정 후의 교부액 분포와 재정력역지수와의 관계 (2012년)	127
〈그림 V-9〉 가중치 조정 후의 교부액 변화율과 재정력역지수와의 관계	128
〈그림 V-10〉 3% 징수지 귀속방식에 따른 교부액 분포와 재정력 간의 관계	131
〈그림 V-11〉 3% 징수지 귀속방식에 따른 교부액 변화와 재정력 간의 관계	132

I.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I.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목적

-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경우,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경우,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정부는 2005년 1월에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고 이후 부동산시장여건 등에 따라 수차례 개정함
 -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은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 부동산시장 안정의 일환으로 2005년 말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대폭 강화함
 -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대폭적으로 완화됨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재원인 점을 고려하여 2013년 11월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발표하였고, 2013년 11월에 유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이유로 ‘현재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전액은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지방의 과세자주권과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힘
 - 2013년 11월에 유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법률안’에서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전환 이유로 부동산시장 및 과세여건의 변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재원이라는 점을 들고 있음

○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징수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춤

-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
 -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간 등이 현재와 동일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되어 현재와 세수변동이 크게 달라지지 않음
-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종합부동산세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경우 징수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임
-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경우 현행 세수배부기준이 지방세 체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살펴봄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자주적으로 부과·징수하여 자체재원으로 활용하는 세금임
 -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배부기준은 지방세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세 체계에 부합하려면 세수배부 기준도 현재와 달라질 필요가 있음

2.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지방세로 전환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운영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방세 체계에 부합하는 세수배부 기준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의 구체적 범위는 징수비용 지급방안, 운영인력 확보방안, 세수배분의 바람직한 방안 모색임

○ 징수비용 지급방안 모색

-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
 -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권자는 납세의무자 주소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납세의무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됨
 - 기초자치단체는 신고·부과·징수·감면·환급관련업무, 과세자료 수집·통보·관리업무, 감면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 납세고지서 발급·송달, 불복·고충 등 민원처리를 수행함
- 지방세로 전환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등 여타 지방세와 달리 세금을 부과·징수한 기초자치단체에 세입이 귀속되지 않음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거둔 지자체가 세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소재지와 부과·징수권자가 일치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주체와 세입귀속주체가 다름
-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주체와 세입귀속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단순히 부과·징수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에 불과함
-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징수를 위임하는 경우 지방세나 부담금 관련법에서는 징수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종합부동산세 징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징수비용 지급방안을 모색함

○ 징수인력 확보방안 강구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경우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징수인력이 필요함
- 납세자 편의, 징세비용의 최소화, 원활한 업무수행 등의 차원에서 징수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강구함
- 또한 지방세 특성에 따른 업무량 증가요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통합업무수행에 따른 감소요인 등을 고려하여 인력수요를 산정하고 기초자치단체별 필요인력을 파악하고자 함

○ 중·장기적 시각에서 세수배분의 바람직한 방안 모색

-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고 있지만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기초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음
-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은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에 따라 배분
 -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는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부동산보유세 규모에 따라 배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임
- 지방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배분이 현행처럼 지방교부세로서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각각의 배분방식의 특성을 파악
 -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약 85%는 수도권에서 징수되고 있지만, 약 27%만 수도권에 배분됨
 - 종합부동산세의 배분기준이 최근 재정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이 학생수가 줄어들어 따라 교육재정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나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증가율이 높아지는 상황과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상황들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기 다른 배분방식의 특징을 상호 비교·분석하고자 함

○ 계량모형을 활용한 분석과 시뮬레이션 실시

- 기초자치단체별 징수비용, 필요인력, 세수배분액은 가정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분석할 것임
 - 구체적 운영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계량모형을 활용한 분석 등을 활용할 것임
- 또한 각각의 대안별로 징수비용, 징수인력, 세수배분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비교·분석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배경과 찬반의견을 정리하고, 지방세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체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주요업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징수비용을 지급해야 할 근거와 징수비용의 지급규모를 제시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징수비용을 시뮬레이션 함
- 제Ⅳ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인력의 확보방안과 인력 수를 강구하고 기초자치단체별 필요인력 수를 시뮬레이션 함
- 제Ⅴ장에서는 향후 바람직한 세수배부기준을 모색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세수배분액을 시뮬레이션 함
-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정책 제언을 함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II.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의 주요 논의

1.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논의
2. 지방세 전환에 대한 의견
3. 지방세 전환 시 과세체계 변경
4. 지방세 전환 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변화



II.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의 주요 논의

1.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논의

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및 변천

- 2000년대 초반 국내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벗어나면서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함
- 정부는 부동산, 그 중 주택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부동산보유세제를 개편하기로 함
 - 2003년 9월 1일 관계장관 회의 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함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중앙정부가 전국을 단위로 개인별 보유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고액의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함
- 종합부동산세의 전신은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라 할 수 있음
 - 1986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토지과다보유세는 공한지(空閑地)와 비업무용 토지를 합산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
 - 토지과다보유세는 1988~1989년에 한시적으로 운용되었는데, 과세대상 비중이 전 국토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여 종합토지세로 바뀜
 - 1990년부터 시행된 종합토지세는 개인 또는 법인 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함
 - 한편 1990년 1월 1일부터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유희토지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30~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토지초과이득세법」도 시행하였으나, 실현되지 않는 이익에 과세한다는 것에서 논란이 일다가 1994년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의 결정으로 1998년에 폐지됨(박영규, 2012)
-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 부동산보유세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었으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2005년 이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의 낮은 현실화율과 지역간·건물간 과세 표준 현실화율의 격차로 인해 낮은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기능이 미약하였음
-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특성상 전국적인 토지 합산기능에 부적합함
- 종합토지세를 보완하고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
 - 2005년 1월 5일에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
 -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더불어 부동산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 차원에서 과세표준 현실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을 병행함
-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말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 과세표준 적용률을 2005년의 50%에서 2006년 70%,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 등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함
 - 전년대비 세부담의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함
 -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함
 - 주택에 대한 세율체계를 종전의 3단계 초과누진율 체계에서 진입단계의 1단계가 추가된 4단계의 초과누진율 체계로 변경함
- 2008년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대폭적으로 개편되어 완화됨(김대영 등, 2011)
 -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족 생활 보호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임
 -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일반 주택보유자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고율의 누진과세를 적용한 것은 재산권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임
-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세대별 합산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조정됨

-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기준금액,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과 세부담 상한액을 조정함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은 주택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토지는 종합합산이 3억원에서 5억원, 별도합산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아짐
-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은 종전의 4개에서 5개로 확대되었고 각각에 적용되는 세율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됨
-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경우에도 과표구간의 조정과 함께 전반적인 세율인하가 이루어짐
-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각각의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됨

나. 지방세 전환 논의

-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과세 및 징수하여 그 세수를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로 분배하는 세목임
 - 「지방세 교부세법」 제4조 제1호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이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임을 밝히고 있음
- 일반적인 국세와는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는 점 때문에 2005년 도입 이전에도 국세로 할 것인지 지방세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음(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 2004년 8월 29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함
 - 종합부동산세의 국세·지방세 논의에서 당시 재정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사용하는 세금이므로 지방세로 하는 안을 지지함
 - 반면 안전행정부는 종합부동산세는 조세저항이 심한 세금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국세로 하는 안을 지지함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재원인 점을 고려하여 2013년 11월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발표함(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3)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이유로 ‘현재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전액은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지방의 과세자주권과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힘
- 2013년 11월에 유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법률안’ 에서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전환 이유로 부동산 시장 및 과세여건의 변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재원이라는 점을 들고 있음(국회 안전행정위원회, 2013)
- 2005년부터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위해 국세로 과세되어온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변경되는 등 과세여건의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은 물론 소득재분배 및 지역 간 재원배분 기능이 약화되어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바뀜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시·군·구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시·군·구에 교부되고 있어 지방세 전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2. 지방세 전환에 대한 의견

가. 지방세 전환의 찬성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함에 따라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전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에서 52.0%로 0.9%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3)
-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어 부동산교부세로 지역에 배분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성격이었으나, 지방세로 전환되면 기초자치단체가 과세권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자체세입으로 됨
-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변경되는 등 지역 간 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반면, 일반 재산세적 성격이 보다 강화되어 지방세와 달리 규정할만한 실익이 별로 없음(국회 안전행정위원회, 2013)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기반으로 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경우보다 효율적인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현재 종합부동산세 계산과정에서 재산세와 관련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이 아닌 안전행정부가 정정함
 - 2012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율은 82.8%로 재산세 징수율인 96.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므로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유인체계를 적절히 설계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일원화 효과가 발휘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율이 상승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경우 업무의 비효율성이 줄어들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수백만 건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업무의 비효율이 존재
 - 지방세 전환으로 말미암아 지방(재산세)과 국가(종합부동산세)가 유사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낭비 요인이 줄어들 수 있음

나. 지방세 전환의 반대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기능을 하고 있고 전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보다 현행과 같이 국세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이 예전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따른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부동산세의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등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가 동일하게 유지됨
 - 2013년 11월 안전행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에도 현행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과 동일하게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세수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액수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
-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 종합부동산세의 배분근거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면 물건소재지, 징세지, 세수귀속지 간의 불일치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인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물세인 재산세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임
- 지자체의 과세자주권과 관련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별 전국합산을 할 경우에 타 지자체의 과세권 침해문제 등 위헌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박종수·서보국, 2010)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배분기능이라는 정책목표에 더해서 이제 지방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는 지역공공재 소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이라는 성격을 추가로 띠게 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배분근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고 지자체별 평균 1명씩 운영인원을 확보해야 하는 등, 5년간 총 1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국회 안전행정위원회, 2013)

3. 지방세 전환 시 과세체계 변경

가. 현행 과세체계와 현황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이며, 과세대상별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별로 인별 합산을 하여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각각 5억원과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를 지님
-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¹⁾을 곱한 금액

1) 부동산의 시장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의 과세표준은 개인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공시가격의 합에서 6억원을 차감한 후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하여 산정
-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토지분의 과세표준은 개인이 전국에 보유한 종합합산토지공시가격의 합에서 5억원을 차감한 후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하여 산정
-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분의 과세표준은 개인이 전국에 보유한 별도합산토지공시가격의 합에서 80억원을 차감한 후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하여 산정
-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5~2%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
 -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은 각각 0.75~2%, 0.5~0.7%까지 3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
-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용
 - 세부담 상한액은 전년대비 150%
 - 주택의 경우 그 해에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총세액)이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의 150%를 초과 시,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와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 60세 이상 주택보유자 및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해 세액공제
 - 고령자의 세액공제는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 적용
 -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10년 보유한 경우 20%,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40% 공제

<표 II-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주택		토지(종합합산)		토지(별도합산)	
과세방법	인별 전국합산		인별 전국합산		인별 전국합산	
과세기준액	공시가격 합 6억원 (단, 1세대 1주택 9억원)		공시지가 합 5억원		공시지가 합 80억원	
과세표준	$(\Sigma \text{주택공시가격} - 6\text{억원}) \times \text{FMV} \times 1\text{세대 1주택 9억원}$		$(\Sigma \text{토지공시가격} - 5\text{억원}) \times \text{FMV}$		$(\Sigma \text{토지공시가격} - 80\text{억원}) \times \text{FMV}$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1억원+(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94억원 초과 ~ 1억1천150만원 이하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세부담상한액	전년대비 150%		전년대비 150%		전년대비 150%	
공정시장가액 비율(FMV)	80%		80%		80%	

자료: 김대영 등(2011), “지방세제의 선진화”, p.162 <표 3-3> 재구성

- 201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1조 1311억원임
-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2010년 1조 289억원, 2011년 1조 1019억원, 2012년 1조 1311억원임
- 2010년 이후 2012년까지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함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보다는 주로 토지에서 세수를 거두고 있음
 - 2012년 부과액 기준 전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6%(2560억원),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79.4%(9870억원)
- 납세의무자별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을 살펴보면 개인보다는 법인이 납부하는 세액이 훨씬 많음
 - 2012년 부과액기준 전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0.1%(3737억원),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9.9%(8690억원)임
- 201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인원은 27만 4천명임
 - 2008년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편되면서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
 - 2009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표 II-2> 종합부동산세 연도별 납세인원과 세액

(단위: 억원, 만명)

구분	합계		개인		법인		주택분 세액	토지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종합	별도
								세액	세액
2005년	7.1	6,426	6.2	892	0.9	5,534	391	2,420	3,615
2006년	34.1	17,180	32.8	7,672	1.3	9,508	5,222	7,063	4,895
2007년	48.3	27,671	46.9	15,731	1.4	11,940	12,611	9,170	5,890
2008년	41.3	23,280	39.8	10,939	1.4	12,342	8,449	8,210	6,622
2009년	21.3	9,677	20.3	3,185	1.0	6,492	1,946	4,413	3,318
2010년	25.0	10,860	24.0	3,607	1.1	7,255	2,413	4,713	3,735
2011년	24.8	11,370	23.7	3,544	1.1	7,827	2,446	4,834	4,091
2012년	27.4	12,427	26.2	3,737	1.2	8,690	2,560	5,500	4,370

주: 부과액 기준

자료: 국세청(2013), 『국세통계연보』

-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2012년 기준 전체 종합부동산세액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84.5%임
 - 2012년 기준 전체 종합부동산세액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58.5%, 인천은 4.8%, 경기도는 21.2%임
 -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 15.0%, 서울 중구 12.1%, 서울 서초구 7.0%, 경기 성남시 5.0%, 서울 종로구 4.9% 순임

나. 지방세 전환 시 과세체계

- 국세이던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그 세목의 명칭을 종합부동산세로 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세목으로 함
 - 2013년 11월에 유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7조인 지방세의 세목과 제8조인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형태임
-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요건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음
 - 2013년 11월에 유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조의 3 제1항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로 함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조의 4 제1항에서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제123조의 4 제2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제123조의 4 제2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

<표 II-3> 지방세 전환 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

구 분	지방세 전환 시 과세요건 주요 내용	종부세(국세)
과세대상	·주택, 토지(종합합산, 별도합산)	좌동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 주택 : 6억원 초과자 - 토지 : 종합 5억원, 별도 80억원 초과자	좌동
과세표준	·공시가격 전국 합산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한 금액 * 주택공제 :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토지공제 : 종합 5억원, 별도 80억원	좌동
세율	·주 택 : 0.5 ~ 2%(5단계 누진세율) ·토지(종합) : 0.75 ~ 2%(3단계 누진세율) ·토지(별도) : 0.5 ~ 0.7%(3단계 누진세율)	좌동
세부담 상한액	·직전 연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	좌동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도 현행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도 변화가 없음
 - 2013년 11월 안전행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되어 현재와 세수변동이 없게 된다’고 밝히고 있음
 - 향후에도 현행 부동산교부세의 배부기준과 동일하게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에 따라 배분받음
 -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재정조정 역할을 지방세의 성격과 어떻게 부합시킬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권자가 ‘관할 세무서장’에서 납세자의 주소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됨
 - 지난해 11월에 유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조의 13 제1항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주소지 또는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이 제123조의 4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

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권자는 납세의무자 주소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납세의무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됨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전국에 흩어져있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함
 - 만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재산세와 동일하게 부동산 소재지와 부과·징수권자를 일치시키는 경우, 납세자는 전국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게 되는 불편을 겪게 됨
 - 지방세법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자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납세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전국에 소재한 납세자의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함

<표 II-4> 지방세 전환 시 종합부동산의 부과·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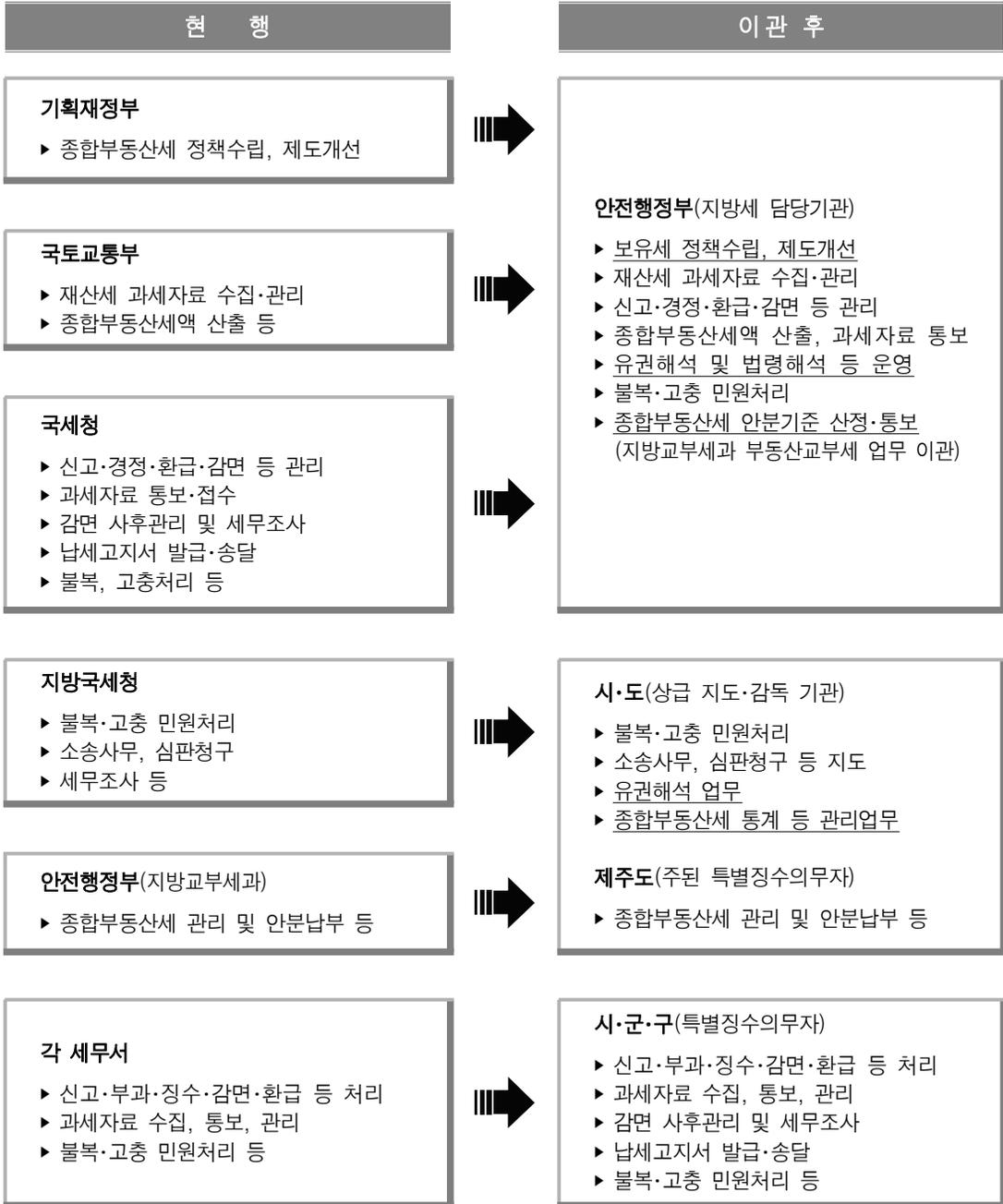
구 분	지방세 전환 시 부과·징수 주요 내용	종부세(국세)
과세방법	·(원칙) 부과·징수, (예외) 신고·납부	좌동
부과·징수	·특별징수의무자 : 주소지 등 관할 지자체장 ※ 납기 : 12.1 ~ 12.15	관할 세무서장
안분기준	·안행부장관이 시·군·구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산정 :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 ※ 제주도는 종부세액의 1.8% 해당금액	좌동
안분납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안행부장관 (부동산교부세)
안분납부기한	·12.31일까지	좌동

4. 지방세 전환 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변화

-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
-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수립, 제도개선업무와 국세청 본청의 종합부동산세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 등이 안전행정부로 이관됨
 - 안전행 정부는 보유세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재산세 과세자료 수집·관리, 신고·경정·환급·감면 등 관리, 중부세액 산출, 과세자료 통보, 유권해석 및 법령해석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지방국세청의 불복·고충 등 민원처리업무는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됨
 - 광역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의 민원처리, 소송사무·심판청구지도업무, 유권해석업무, 종합부동산세 통계 등 관리업무를 수행함
- 세무서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부과·징수·감면·환급 관련업무는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
 - 기초자치단체는 신고·부과·징수·감면·환급관련업무, 과세자료 수집·통보·관리업무, 감면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 납세고지서 발급·송달, 불복·고충 등 민원처리를 수행함
- 각 세무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가 크게 늘어남
 - 기초자치단체는 구체적으로 부과·징수, 결정과 경정, 물납, 분납, 부족세액 등의 추징, 이의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가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과세표준·세액 등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도 가능함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조의 1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 한다고 규정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조의 13 제2항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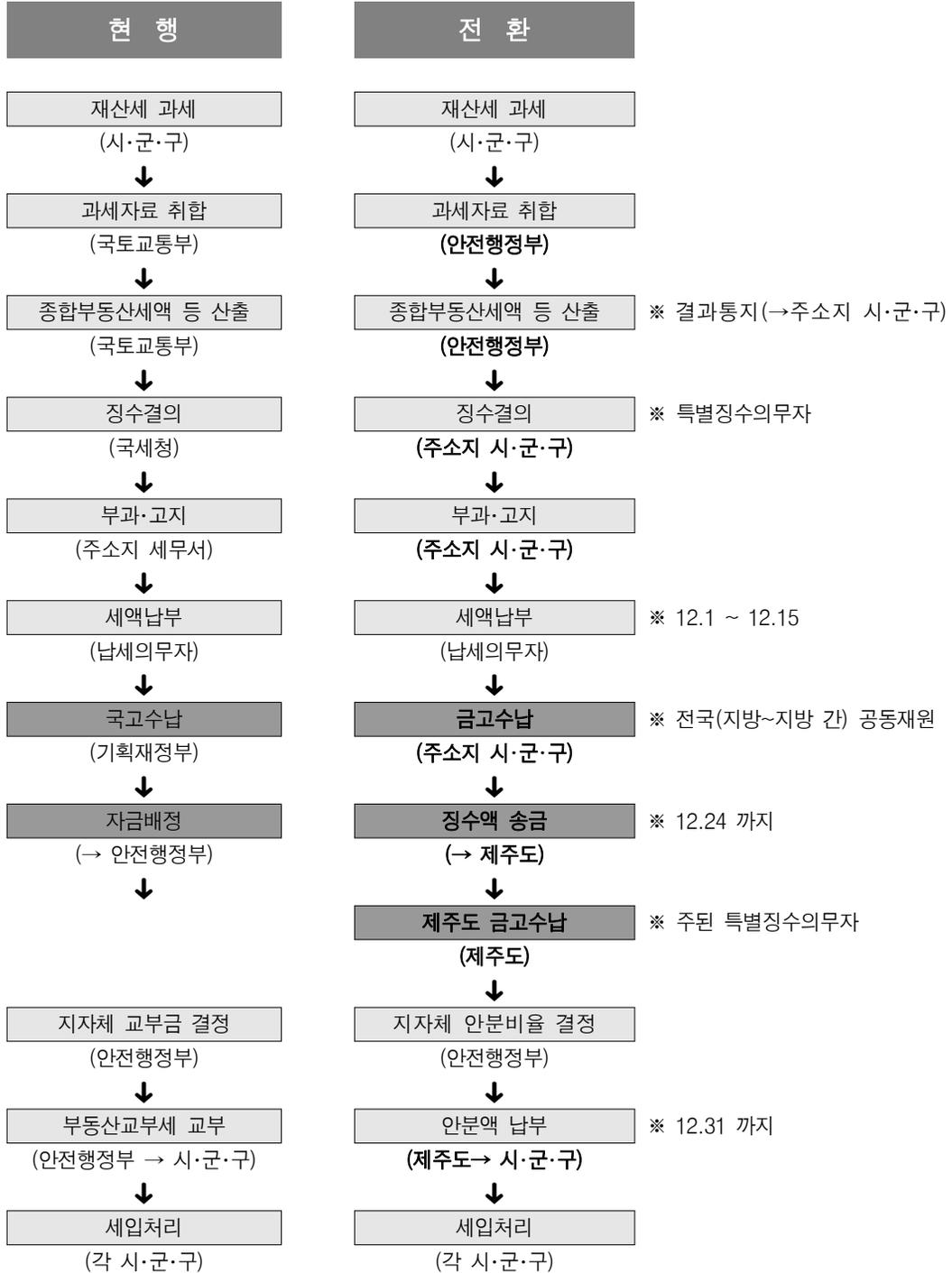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조의 13 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기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특별징수의무자인 기초자치단체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고,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하는 업무를 수행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조의 14 제1항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때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조의 14 제2항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23조의 13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함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조의 14 제3항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림 II-1>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후 업무변화



주: 밑줄(-)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후 추가되는 업무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

<그림 II-2>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후 업무처리 비교



- 기초자치단체는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
 - 물납은 납세의무자가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납세의무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임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조의 15 제1항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조의 15 제2항에서 ‘취득한 물납재산의 운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함
 - 특별징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업무도 담당함
 -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제도는 물납제도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현금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조의 16 제1항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기초자치단체는 부족세액의 추징 등의 업무도 수행함
 -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성실한 신고 또는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함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조의 17 제2항에서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제123조의 13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부정과소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3부터 제53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함

- 특별징수의무자인 기초자치단체는 이의신청의 처리, 지방세 환급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조의 19 제1항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23조의 13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고 규정함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조의 19 제2항에서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한다’고 규정함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Ⅲ. 징수비용의 지급 근거와 지급규모 추정

1. 징수위임의 종류와 현황
2. 징수비용의 지급 근거
3. 징수비용의 지급규모 추정
4. 기초자치단체별 징수비용 시뮬레이션



Ⅲ. 징수비용의 지급 근거와 지급규모 추정

1. 징수위임의 종류와 현황

-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주체와 세입귀속주체가 달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한 기초자치단체에 세입이 귀속되지 않음
- 세입이 귀속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세금을 대신 징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부담금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세를 대신 징수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함
 -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징수비용 규모, 징수비용 지급방식 등을 살펴봄

가. 시·도세 징수위임

- 지방세 관련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함
 -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그 시·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징수교부금’으로 보전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에서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징수교부금은 시·도세 징수에 따른 필요경비를 보상하기 위한 수수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징수교부금은 시·군·구의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징세행정기구가 없는 본청에서 시·군·구가 시·도세의 징수업무를 대행함에 따른 필요경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수수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김중희, 2003)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할 규모는 시·도세 징수액의 3%이며 교부기준으로 시·군·구의 징수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서 ‘교부율(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군 및 자치구별 분배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고 규정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시·군 및 자치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군 및 자치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고 규정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으로 원칙적으로는 징수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단서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으로 징수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부정확한 업무처리비용의 보전과 재정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최병호 등, 2010)
- 징수교부금을 시·도세 징수액의 3%로 규정한 것은 시·군·구의 징수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징수액과 비례함을 전제로 하지만 징수업무 관련 비용은 징수액이 아닌 징수건수와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음
 - 즉, 세액이 소액이어서 징수건수가 많은 시·군·구의 경우에는 징수관련 업무량과 부담은 많지만 전체 징수액은 크지 않아 징수교부금 수입이 징수비용을 밑돌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별시·광역시에서 재산가치가 높은 중심지역의 자치구가 재산가치가 낮은 주변지역의 자치구에 비해 자치구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징수됨
 - 중심지역의 자치구는 징수건수가 비슷하더라도 재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징수액은 주변지역의 자치구에 비해 훨씬 클 것임
 - 결과적으로 징수교부금을 징수액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은 재정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여지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는 시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으로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사용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시세 징수교부금을 통해 자치구에 위임되고 있는 시세징수율 제고, 누락세원 발굴 등을 극대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달성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17조 제1항에서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5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해당 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17조 제2항에서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함
 -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위임한 세목은 취득세, 레저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임
 - 서울특별시가 본청에서 직접 징수하는 세목은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38세금징수와 징수액 등임
-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부담금 등을 대신 징수하고 받는 수입은 약 1조원 규모임
- 징수교부금은 지방세입 분류에서 자체재원인 경상세외수입으로 분류됨
 - 경상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에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추후 보전해 주는 교부금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부담금(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교부금도 포함하고 있음
 - 2013년 예산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교부금 수입규모는 1조 64억원(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임
 - 2013년 징수교부금 수입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시 2852억원, 군 561억원, 자치구 5570억원임²⁾
-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전체 징수교부금수입 중,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72.1%임
- 2012년 최종 예산 기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징수교부금 수입규모는 3622억원이고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2610억원임

2) 환경개선부담금 등 중앙정부에서 시·도 본청이 받는 징수교부금 수입규모는 1082억원에 달함

나. 부담금 징수위임

1) 부담금 개념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자가 공공사업을 필요로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특정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게 되는 경우 등에 부과됨
- 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그 성격이 유사함
- 특히 조세 중에서 목적세는 특정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는 점에서 부담금과 성질이 같으나, 부담금과 같이 그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개인에 대하여 그 납세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부담금은 부과대상, 부과기준, 사용목적 등이 조세와 다름
 -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비하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함
 - 부담금은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데 반해, 조세는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함
 - 부담금은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반면, 조세는 납세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함
-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도 부담금 수는 97개, 부담금 징수 규모는 15조 6690억원임
 - 전체부담금 가운데 13.6조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1조원(13.2%)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함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시·도세 징수를 위임하는 것처럼 중앙정부는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음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일정비율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음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징수비용 지급규모는 부담금에 따라 다름

- 이하에서는 부담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징수비용 규모를 살펴보고자 함

2)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위임

- 오염물질 배출억제, 환경자원의 보전, 폐기물 줄이기 등 환경 분야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부담금이 도입됨
 - 환경관련부담금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폐기물배출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 환경관련부담금 중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금액이 비교적 큼
 - 2011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건수는 3천 4백만 건, 부과액은 1조 4530억원임
 - 2011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건수는 1천 8백만 건, 징수액은 6627억원임
 - 2011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의 전국 평균징수율(징수액/부과액)은 45.6%임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임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조에서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함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함
-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2조에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4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환경부는 광역자치단체에 원칙적으로 징수액의 10%를 지급하지만 부과액의 60%를 초과하여 징수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초과 징수액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음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 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급하는 징수비용은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지사에게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이 되는 시·도지사에게는 전년도 징수한 부담금의 초과징수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 제2항에서 '기본 징수비용 이외 시·도지사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광역자치단체는 환경부에서 받은 징수비용의 10% 이내에서 행정관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에 재교부함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34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에게 지급된 징수비용은 영 제11조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입 등과 관련된'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제34조 제2항 제6호에서 '기타 시·도의 부담금 사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 경비(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의 10% 이내로 한다)'로 사용할 수 있음
 - 서울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중 사무처리 경비로 징수교부금 10%를 교부받으며 1%는 시의 수입으로 계산하고 9%는 자치구에 교부함

3)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위임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의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부담금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8호에서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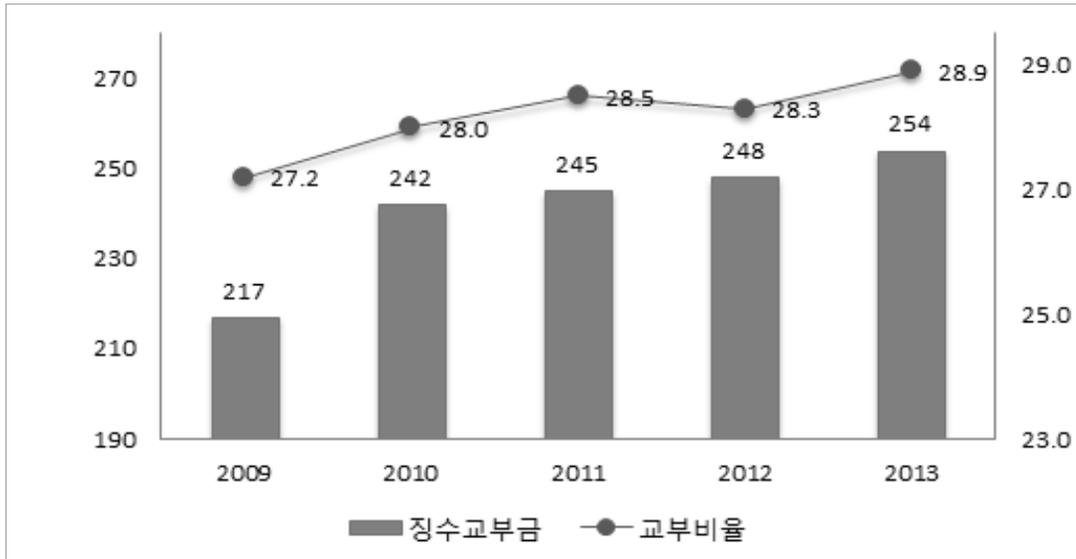
- 2011년 기준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규모는 1750억원 정도임
 - 2011년 기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건수는 25만 6822건, 부과액은 1879억원임
 - 2011년 기준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건수는 22만 6228건, 징수액은 1752억원임
 - 2011년 기준 교통유발부담금의 전국 평균 징수율(징수액/부과액)은 93.2%임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주체는 시장이지만 구청장에게 위임이 가능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에서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시장은 구청장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를 위임하면서 징수비용으로 징수액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시장은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처리비용 등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를 위임하면서 징수비용 배부기준으로 징수실적과 교통수요 관리실적을 사용함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시장은 징수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함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교부총액의 2분의 1은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교부총액의 2분의 1은 교통수요 관리³⁾실적에 따라 교부’한다고 규정함
- 서울특별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의 28~29%를 자치구에 지급함
 - 서울특별시는 2013년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878억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교부금으로 254억원을 지급함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7호에서 ‘교통수요관리란 교통혼잡을 완화(緩和)하기 위하여 교통 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통행을 줄이거나, 통행 유형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산하거나,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함

- 서울특별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대비 징수교부금 지급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27.2%, 2010년 28.0%, 2011년 28.5%, 2012년 28.3%, 2013년 28.9%임

<그림 Ⅲ-1> 서울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지급규모와 비율

(단위: 억원, %)



자료: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2013), 「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4) 부담금 징수위임의 시사점

- 중앙정부는 부담금 징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징수액의 일정비율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음
 - 중앙정부가 부담금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 실제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기초자치단체임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징수비용 지급규모나 방식은 부담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징수액의 10~30%를 지급하고 있음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징수비용은 부담금 징수에 들어가는 인력, IT 장비 등 투입비용 보전과 징수독려라는 인센티브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에서 ‘기본징수비용’은 투입비용 보전차원이고 ‘추가징수비용’은 인센티브 성격을 지니는 것임
-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배부기준으로 ‘징수실적’과 ‘교통수요관리실적’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수요관리가 인센티브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체납액 징수위임

1)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위임

- 징수촉탁은 부과·징수권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임하는 것을 말함
 - 촉탁은 대등한 지위의 관청 간에 행하여지는 위임을 말함
 - 촉탁은 어느 관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다른 관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권한의 촉탁은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함(전동훈, 2011)
- 징수촉탁은 징세비를 절약하고 징세를 원활히 하는 등 징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임
 -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징수는 본래 부과징수권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체능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권강웅, 2011)
 - 하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과세물건에 대해 과세된 지방세의 체납액을 직접 찾아가서 징수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징세비의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전제로 징수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징수를 위임할 수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징수를 의뢰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에 관계되는 사무에 따른 체납처분비와 체납처분비를 차감한 징수금의 30%를 받음
 -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서 ‘촉탁 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함
 - 촉탁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제68조 제2항 제2호의 ‘체납처분비’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임

2) 국세 체납액의 징수위임

- 국세의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
 -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임
 - 「국세징수법」 제23조의 2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위탁업무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 2 제1항 제1~4호에서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사’,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상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임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액의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징수금의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의 3에서 ‘법 제23조의 2 제2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23조의 2 제1항에 따른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의 3 제1호와 제2호에서 위탁 수수료의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납자가 채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 해당금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임
- 기획재정부령에 의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받는 위탁 수수료는 징수금액이 100만원 이하 일 때는 10%이고, 징수금액이 커짐에 따라 위탁 수수료는 8% → 5% → 2%로 낮아짐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 5에서 채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있음
 - 징수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 수수료가 10%임
 - 징수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 수수료가 '10만원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임
 - 징수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 수수료가 '82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임
 - 징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 수수료가 '532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임
 - 징수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탁 수수료가 '1332만원'임

<표 III-1> 국세 채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수수료

징수금액	수수료율
1백만원 이하	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82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5억원 초과	1332만원

자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 5

라. 사무처리비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시·군별 안분,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을 울산광역시장(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하도록 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2항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 받은 자동차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자동차세액을 합한 세액을 제133조에 따라 시·군별로 안분하고, 그 안분한 자동차세를 법 제137조 제3항 전단에서 정한 기한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통보서에 따라 각 시·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안분명세서를 각 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의 사무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무처리비로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0.01%를 받음
 - 「지방세법」 제137조 제3항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사무처리비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1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자동차세를 각 시·군 금고에 납부할 때에는 영 제134조 제2항에 따른 시·군별 안분명세서와 함께 시·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2. 징수비용의 지급 근거

가. 기초자치단체 간 징수위임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촉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위임의 성격을 가지므로 징수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거둔 지자체가 세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하지만 지방세로 전환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등 여타 지방세와 달리 세금을 부과·징수한 기초자치단체에 세입이 귀속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소재지와 부과·징수권자가 일치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주체와 세입귀속주체가 다름
-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권자는 납세의무자 주소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 종합부동산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해야 함
 - 특별징수의무자인 기초자치단체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부과·징수·감면·환급 등을 처리해야 하고 과세자료를 관리해야 하며, 감면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함
- 특별징수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지만 세수귀속은 별도의 안분기준에 의해 정해짐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조의 18 제1항에서 ‘종합부동산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금’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세법 개정안」 제123조의 18 제3항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송금 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안분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개정안」 제123조의 18 제4항에서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의 안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⁴⁾

4) 현행 부동산교부세의 배부기준은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재산세 부과액(5%)임

-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주체와 세입귀속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단순히 부과·징수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에 불과함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안분기준이 동일하다면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계상되는 종합부동산세는 달라지지 않음
 - 지난해 11월 안전행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동안 부동산 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되어 현재와 세수변동이 없게 된다”고 언급함
 -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세수가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징수업무를 위임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여길 수 있음
 - 징수위임의 주체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라는 것만 다름
- 종합부동산세는 기초자치단체간 징수위임이라는 성격을 지니지만 시·도세, 부담금, 체납액의 징수위임과는 달리 징수위임과 수탁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표 Ⅲ-2>에서 보는 것처럼 시·도세, 부담금, 체납액의 경우에는 징수를 위임하는 주체가 명확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누가, 얼마나 위임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징수를 위임하는 경우 지방세나 부담금 관련법에서는 징수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와 부담금 관련법 등에 의거하여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에 시·도세나 부담금 징수를 위임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등 상위정부가 하위정부에 징수위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초자치단체 간 징수위임도 가능함
-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징수비용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음

<표 Ⅲ-2> 징수위임의 종류와 내용

종류	징수위임자	징수수탁자	징수비용	특징
시·도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징수액의 3%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시·도세를 일괄적으로 위임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 (재위임)	· 기본 징수비용 : 징수액의 10% · 추가 징수비용 : 징수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가능	· 징수 장려차원의 추가 징수비용 지급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징수비용을 나눔(서울시는 본청 1%, 자치구 9%임)
교통유발 부담금	시장	구청장	· 징수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 구체적 징수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함 (2013년 서울시는 징수액의 28.9%를 자치구에 지급)
지방세 체납액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체납처분비 + 징수액의 30%	· 지방자치단체 간 체납액 징수의 위임
국세 체납액	세무서장	한국자산 관리공사	· 징수액의 2~10%	· 체납자별 징수액에 따른 징수 비율이 달라짐 · 체납자별 징수액이 커짐에 따라 징수비용 지급률이 하락함

나.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

-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면 각 세무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
- 기초자치단체는 부과·징수, 결정과 경정, 물납, 분납, 부족세액 등의 추징, 이의처리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관련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기초자치단체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징수인력과 징수비용의 지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관련업무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비슷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치단체에서 크게 늘어남
- 납세인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관련업무증가를 가늠하면, 종합부동산세 관련업무는 수도권 지역에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7만 3955명임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납세인원은 22만 9673명으로 전체에서 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83.8%임
-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서울(15만 2476명, 55.7%)과 경기(6만 9416명, 25.3%)가 납세인원이 많고 세종(223명, 0.1%)과 제주(1240명, 0.5%)가 적음

<표 Ⅲ-3> 광역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2012년)

(단위: 명, %)

광역자치단체별	납세인원	비율
전국	273,955	100.0
서울	152,476	55.7
부산	8,663	3.2
대구	4,115	1.5
인천	7,782	2.8
광주	1,875	0.7
대전	3,714	1.4
울산	2,068	0.8
세종	223	0.1
경기	69,416	25.3
강원	3,028	1.1
충북	2,301	0.8
충남	4,691	1.7
전북	2,566	0.9
전남	1,904	0.7
경북	3,089	1.1
경남	4,805	0.8
제주	1,240	0.5
특별시·광역시계	180,915	66.0
도계	93,040	34.0
수도권계	229,673	83.8
비수도권계	44,282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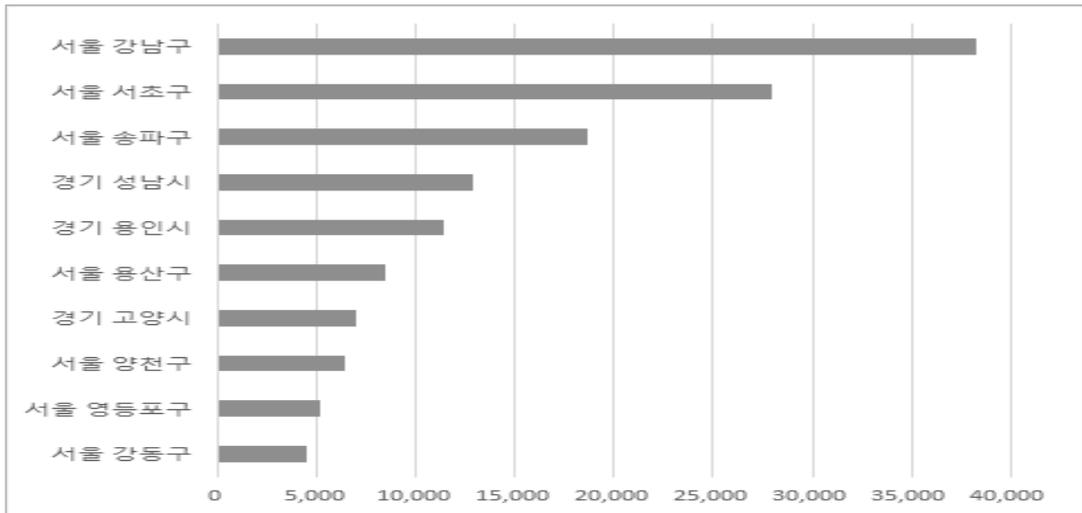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특히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납세인원 분포를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는 서울의 특정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폭 증가함
-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이 많은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3만 8299명), 서울 서초구(2만 7926명), 서울 송파구(1만 8764명), 경기 성남시(1만 2889명), 경기 용인시(1만 1371명) 순임

-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상위 10개 자치단체의 납세인원 합계는 14만 689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1.4%나 됨
- 종합부동산세 전체 납세인원에서 서울의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1.0%임

<그림 Ⅲ-2>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상위 기초자치단체

(단위: 명)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이들 특정 기초자치단체가 징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징수인력지원과 징수비용의 지급이 필수적임
 - 실제로 서울시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4일에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징세비용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서울시 강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에 징수교부금을 추가하고 징수비용 및 세무인력 등 징세비용 보전이 없을 경우 가뜩이나 사회복지비용지출로 재정이 어려운데 종합부동산세 업무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음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지방세 주무부서인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에서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업무량을 기초로 소요인력과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징수비용을 반영하여야 종합부동산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임

다. 적극적 징수독려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징수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징수인센티브 성격의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징수율이 다른 세금에 비해 낮고 납세자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세목이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징수에 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율은 재산세나 다른 지방세에 비해 훨씬 낮음
 - 201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징수결정액은 1조 3653억원, 불납결손액 499억원, 미수납액 1843억원, 수납액 1조 1311억원임
 - 201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율은 82.8%로 재산세 징수율(96.4%)에 비해 13.6%p 낮음⁵⁾
- 이런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징수의 위탁주체가 모호하고 징수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도 부재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더욱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시·도세, 부담금, 체납액의 징수위임은 징수의 위탁·수탁관계가 명확한데 반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징수의 위탁·수탁관계가 모호함
 - 시·도세 징수위임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교부하고 있으므로 시·도세는 일종의 공동재원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시·도세 징수를 독려할 수 있음
 - 부담금과 체납액의 징수위임은 징수액의 30% 정도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설 유인이 있음
-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실제로 서울시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초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 이유로 “고령자나 은퇴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5) 2012년 기준 지방세 전체의 징수율은 92.2%임

- 서울시 강남구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중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은퇴자인 경우가 많고 이들 고령자는 소득이 없어 세금부담이 크다고 언급함
- 기초자치단체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보유세 징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과거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인하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음
 - 2000년대 중반 정부는 ‘동일가격·동일세금’을 공평과세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함
 - 주택에 대한 평가 및 과세방법이 토지와 건물의 ‘분리평가·분리과세’에서 ‘통합평가·통합과세’로 변경됨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함
 - 이에 대해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상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제도를 이용해 주택 재산세를 인하함
 - 2005년에는 탄력세율제도를 이용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가 재산세를 10~40% 인하하였으며, 2006년에는 20개 자치구가 재산세를 10~50% 인하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세율인하가 계속 이어지자 중앙정부에서는 과세대상의 가격이 동일함에도 지역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의 탄력세율제도를 엄격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함
 - 즉, 2006년 9월 1일자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다르게 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을 두게 됨
 - 이후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세 세율인하를 더 이상 단행하지 않음
- 따라서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80%대의 종합부동산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납세자의 반발을 무릅쓰면서도 적극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나서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종합부동산세 체납 등이 발생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증가 방지 등을 위해 징수액 중 일정 부분을 징수인센티브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3. 징수비용의 지급규모 추정

가. 업무처리 비용보전 성격의 징수비용

- 지방세 기본법, 부담금 관련법 등에 의거하여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에 시·도세나 부담금 징수를 위임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징수를 위임하는 경우 관련법령에서는 업무처리비용의 보전을 위해 징수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징수를 위임하는 경우 징수비용의 지급규모, 지급방식 등은 다양함
- 기초자치단체가 시·도세를 징수하고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비용은 징수액의 3%인 반면, 중앙정부의 부담금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받는 징수비용은 징수액의 30%임
- 기초자치단체의 종합부동산세 징수는 위임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체납액을 위임하는 '징수촉탁'과 유사함
 - 기초자치단체의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징수촉탁은 기초자치단체 간 징수위임임
 - 시·도세와 부담금 징수위임은 상위정부가 하위정부에 위임을 하는 것임
- 하지만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징수의 어려움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 징수와는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다름
- 지방세라는 점에서 본다면 기초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시·도세 징수와 가장 유사함
 -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징수만 할 뿐 징수한 세금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시·도세나 부담금징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임
 - 건당 부과액 규모, 징수율 등 징수의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징수는 부담금보다는 시·도세 징수와 더 유사함

<표 Ⅲ-4> 건당 부과액과 징수율 비교

(단위: 백만원, 건수, 천원, %)

구분	부과액	징수액	부과건수	건당 부과액	징수율
시·도세(취득세)	14,114,893	13,802,393	5,902,047	2,391.5	97.8
환경개선부담금	1,452,954	662,738	34,004,205	42.7	45.6
교통유발부담금	187,933	175,255	256,822	731.8	93.2
종합부동산세	1,365,306	1,131,106	273,955	4,983.7	82.8

자료: 지방세통계연보, 국세통계연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시·도세 징수비용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 징수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업무처리비용은 징수액의 3% 정도가 적절함
 - 광역자치단체가 시·도세 징수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징수비용으로 징수액의 3%를 지급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을 추정하여 산정한 징세비용도 징수액의 3% 수준으로 추정됨
 - 현재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 규모는 468명으로 추정⁶⁾
 - 2012년 기준 국세청의 세무공무원 1인당 징세비용은 7천 1백만원임
 - 추정된 운영인력 수에 1인당 징세비용을 곱하여 산정된 종합부동산세 징세비용은 332.3억원임
 - 종합부동산세 징수비용은 징수액(1조 1311억원, 2012년)의 2.9%임

나. 인센티브 성격의 징수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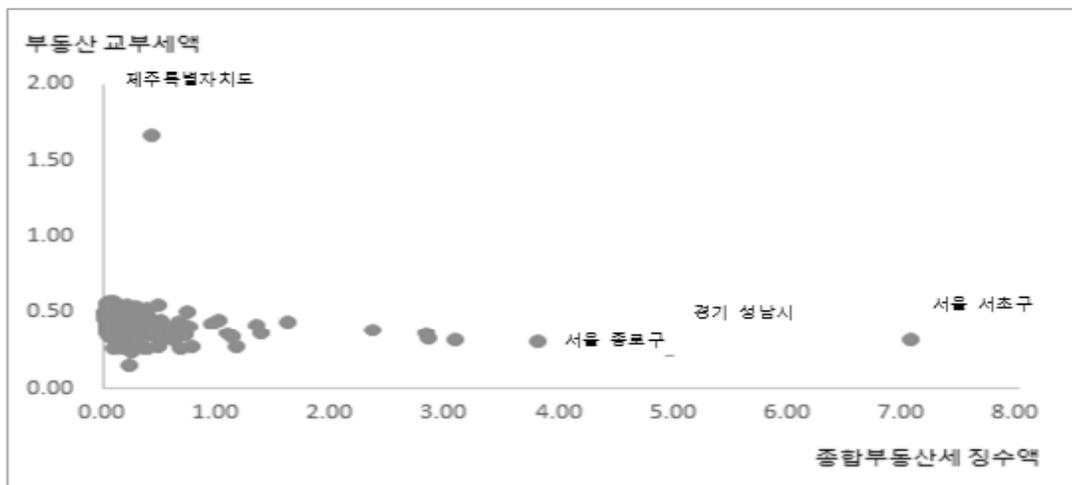
- 201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율(82.8%)은 재산세(96.4%)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징수액 중 일정 부분을 징수인센티브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지방세(예, 재산세)와 달리 징수액과 세입이 분리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

6) 중앙정부인력은 포함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 추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IV장 참조

- 기초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과 부동산 교부세액은 음(-)의 관계임
- 2012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초 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과 부동산 교부세액 상관계수는 -0.17임
- 종합부동산세 징수액과 부동산 교부세액이 음(-)의 관계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많은 지자체가 부동산 교부세액을 적게 받고 있음을 의미함
 - 실제로 서울 강남 3구가 전체 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8%인 반면 부동산 교부세액 비율은 1.2%에 불과함
 -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경우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지자체가 받는 부동산 교부세액도 미미함
 -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상위 10개 기초 자치단체가 전체 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9%이지만,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가 받는 부동산 교부세액 비율은 3.6%에 불과함

<그림 Ⅲ-3> 지자체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과 부동산교부세의 관계 (2012년)

(단위: %)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또한 시·도세 징수위임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징수의 위탁주체가 모호하고 징수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도 부재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더욱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징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징수액의 1~2% 정도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다. 전체 징수비용

-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해야 할 징수비용은 실제 업무처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징수 장려차원의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도세 징수위임과 종합부동산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수비용의 전체규모는 징수액의 3~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함
 - 종합부동산세의 징수비용은 인건비, 전산관리비 등 실제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징수 장려차원의 인센티브를 모두 포함함
 - 201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징수비용규모는 339억원(3%)~566억원(5%) 정도임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시·도세 징수를 위임하는 경우 징수액의 3%를 지급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3%는 징수에 들어가는 비용보전 성격임
 -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 유지비용도 징수액의 3% 수준으로 추정됨
-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인 1~2%는 기초자치단체에 징수를 장려하는 차원의 인센티브 성격임
 - 종합부동산세의 인센티브 지급규모, 지급방식 등은 종합부동산세 징수율을 어느 정도나 장려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있어 징수를 장려하기 위해 징수액 등을 지급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징수율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자치단체에만 추가적으로 1~2%를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임

4. 기초자치단체별 징수비용 시뮬레이션

가. 기본 가정

- 기초자치단체별 징수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함
- 첫째, 종합부동산세 징수비용은 징수액의 3%로 설정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분석함
 - 종합부동산세 징수비용을 징수액의 4~5%로 설정한 경우의 결과는 부록에 제시함

- 둘째, 징수비용 지급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별 납세인원과 징수액을 사용함
 -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에 따라 업무량이 좌우되므로 납세인원은 징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는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납세인원에 비해 징수액은 징수 장려차원의 성격을 지님
- 셋째, 기초자치단체별 징수비용 산정은 납세인원과 징수액 간의 비율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가지 안을 설정함
 - 제1안은 납세인원만을 사용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징수비용을 산정함
 - 제2안은 납세인원 70%, 징수액 30%를 반영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징수비용을 산정함⁷⁾
- 기초자치단체별 납세인원과 징수액은 안전행정부의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
 - 2012년 기준 기초자치단체별 납세인원과 징수액 자료임
 - 국세청 세무서의 관할구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의 납세인원과 징수액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안분하는 과정이 필요함
 - 2개 이상 시·군·구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경우 시·군·구 인구 기준으로 안분함

나. 기초자치단체별 시뮬레이션 결과

- 기초자치단체의 징수비용을 납세인원으로만 산정하는 경우 지역별 징수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징수비용이 많은 지역은 서울(188.8억원, 55.7%), 경기(86억원, 25.3%), 부산(10.7억원, 3.2%) 등임
 - 징수비용이 적은 지역은 광주(2.1억원, 0.6%), 전남(2.4억원, 0.7%), 울산(2.6억원, 0.8%) 등임
- 기초자치단체의 징수비용을 납세인원 70%, 징수액 30%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지역별 징수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울(191.8억원), 경기(81.8억원), 인천(11.6억원) 순으로 징수비용이 많음
 - 광주(2.1억원), 울산(2.4억원), 전남(2.6억원) 순으로 징수비용이 적음

7) 납세인원과 징수액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함. 전체적으로 징수액의 비중이 커지면 서울 지역은 증가하고, 경기 지역은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남. 예를 들어, 징수액이 100%인 경우 서울 지역이 받는 징수비용은 198.6억원으로 납세인원 100% 기준(188.9억원)에 비해 9.7억원 증가함

<표 Ⅲ-5> 배부기준에 따른 징수비용 시뮬레이션 (징수액의 3% 가정)

패널 A : 시·도별 금액

(단위: 백만원, %)

단체명 시·도	납세인원 100%(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전국	33,933.2	33,933.2	0.0	-0.00
서울	18,886.3	19,177.2	290.9	1.54
부산	1,072.9	1,063.2	-9.7	-0.90
대구	509.6	454.4	-55.1	-10.82
인천	963.8	1,158.6	194.8	20.22
광주	232.2	211.0	-21.2	-9.13
대전	459.9	461.3	1.4	0.31
울산	256.2	241.6	-14.6	-5.69
세종특별자치시	27.6	24.0	-3.6	-13.15
경기	8,597.9	8,179.1	-418.8	-4.87
강원	375.3	402.2	26.9	7.16
충북	285.0	267.1	-17.9	-6.29
충남	581.0	564.7	-16.4	-2.82
전북	317.8	277.3	-40.5	-12.75
전남	235.8	256.9	21.0	8.91
경북	383.0	480.0	97.0	25.34
경남	595.2	566.5	-28.6	-4.81
제주특별자치도	153.6	148.0	-5.6	-3.65

패널 B : 시·도별 구성비

(단위: 백만원, %p)

단체명 시·도	납세인원 100%(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전국	100.0	100.0	0.0
서울	55.7	56.5	0.9
부산	3.2	3.1	0.0
대구	1.5	1.3	-0.2
인천	2.8	3.4	0.6
광주	0.7	0.6	-0.1
대전	1.4	1.4	0.0
울산	0.8	0.7	0.0
세종특별자치시	0.1	0.1	0.0
경기	25.3	24.1	-1.2
강원	1.1	1.2	0.1
충북	0.8	0.8	-0.1
충남	1.7	1.7	0.0
전북	0.9	0.8	-0.1
전남	0.7	0.8	0.1
경북	1.1	1.4	0.3
경남	1.8	1.7	-0.1
제주특별자치도	0.5	0.4	0.0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기초자치단체별 징수비용 산정기준으로 납세인원 70%, 징수액 30%을 사용하는 경우 납세인원 100% 기준에 비해 징수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북 등임
 - 납세인원 70%, 징수액 30% 기준인 경우 서울 지역의 징수비용은 191.8억원으로, 납세인원 100% 기준(188.9억원)에 비해 2.9억원(1.5%) 증가함
 - 납세인원 70%, 징수액 30% 기준인 경우 인천 지역의 징수비용은 11.6억원으로, 납세인원 100% 기준(9.6억원)에 비해 1.9억원(20.2%) 증가함
 - 납세인원 70%, 징수액 30% 기준인 경우 경북 지역의 징수비용은 4.8억원으로, 납세인원 100% 기준(3.8억원)에 비해 1.0억원(25.3%) 증가함
- 기초자치단체별 징수비용 산정기준으로 납세인원 70%, 징수액 30%을 사용하는 경우 납세인원 100% 기준에 비해 징수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지역은 경기, 대구, 전북 등임
 - 납세인원 70%, 징수액 30% 기준인 경우 경기 지역의 징수비용은 81.8억원으로, 납세인원 100% 기준(86.0억원)에 비해 4.2억원(4.9%) 감소함
 - 납세인원 70%, 징수액 30% 기준인 경우 대구 지역의 징수비용은 4.5억원으로, 납세인원 100% 기준(5.1억원)에 비해 0.6억원(10.8%) 감소함
 - 납세인원 70%, 징수액 30% 기준인 경우 전북 지역의 징수비용은 2.8억원으로, 납세인원 100% 기준(3.2억원)에 비해 0.4억원(12.8%) 감소함
- 징수비용을 납세인원으로만 산정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별 징수비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47.4억원), 서울 서초구(34.6억원), 서울 송파구(23.1억원), 경기 성남시(16.0억원), 경기 용인시(14.1억원) 등이 많고, 경북 영양군(2.5백만원), 경북 울릉군(2.6백만원), 전남 진도군(2.6백만원), 전북 순창군(2.6백만원), 전북 임실군(2.6백만원) 등이 적음
- 기초자치단체별 징수비용 산정기준으로 납세인원 70%, 징수액 30%을 사용하는 경우 납세인원 100% 기준에 비해 징수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중구, 서울 종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남구, 인천 남동구 등임
 - 납세인원 70%, 징수액 30% 기준인 경우 서울 중구의 징수비용은 14.3억원으로, 납세인원 100% 기준(2.8억원)에 비해 11.5억원(416.3%) 증가함
 - 납세인원 70%, 징수액 30% 기준인 경우 서울 종로구의 징수비용은 7.9억원으로, 납세인원 100% 기준(4.1억원)에 비해 3.8억원(91.6%) 증가함
 - 납세인원 70%, 징수액 30% 기준인 경우 서울 영등포구의 징수비용은 7.5억원으로, 납세인원 100% 기준(6.3억원)에 비해 1.2억원(19.5%) 증가함

- 납세인원 70%, 징수액 30% 기준인 경우 서울 강남구의 징수비용은 48.4억원으로, 납세인원 100% 기준(47.4억원)에 비해 1.0억원(2.1%) 증가함
- 납세인원 70%, 징수액 30% 기준인 경우 인천 남동구의 징수비용은 3.1억으로, 납세인원 100% 기준(2.1억원)에 비해 1.0억원(45.6%) 증가함
- 기초자치단체별 징수비용 산정기준으로 납세인원 70%, 징수액 30%을 사용하는 경우 납세인원 100% 기준에 비해 징수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송파구, 서울 서초구, 서울 양천구, 경기 용인시, 경기 고양시 등임
 - 납세인원 70%, 징수액 30% 기준인 경우 서울 송파구의 징수비용은 19.0억으로, 납세인원 100% 기준(23.1억원)에 비해 4.1억원(17.7%) 감소함
 - 납세인원 70%, 징수액 30% 기준인 경우 서울 서초구의 징수비용은 31.4억으로, 납세인원 100% 기준(34.6억원)에 비해 3.2억원(9.3%) 감소함
 - 납세인원 70%, 징수액 30% 기준인 경우 서울 양천구의 징수비용은 6.3억으로, 납세인원 100% 기준(8.0억원)에 비해 1.7억원(21.7%) 감소함
 - 납세인원 70%, 징수액 30% 기준인 경우 경기 용인시의 징수비용은 12.7억으로, 납세인원 100% 기준(14.1억원)에 비해 1.3억원(9.5%) 감소함
 - 납세인원 70%, 징수액 30% 기준인 경우 경기 고양시의 징수비용은 7.4억으로, 납세인원 100% 기준(8.7억원)에 비해 1.3억원(14.6%) 감소함
- 위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기초자치단체별 징수비용 산정기준으로 징수액을 고려하는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징수비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 안에서 징수비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6> 기초자치단체별 징수비용 시뮬레이션 (징수액의 3% 가정)

(단위: 억원, %)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도	시·군·구					
합계		273,955	33,933.2	33,933.2	0.0	0.0
서울	소계	152,476	18,886.3	19,177.2	290.9	263.1
	종로구	3,330	412.5	790.5	378.0	91.6
	중구	2,231	276.3	1,426.9	1,150.5	416.3
	용산구	8,463	1,048.3	1,118.1	69.8	6.7
	성동구	3,221	399.0	391.4	-7.6	-1.9
	광진구	3,991	494.3	485.0	-9.3	-1.9
	동대문구	1,238	153.3	133.8	-19.6	-12.8
	중랑구	1,429	177.0	154.4	-22.6	-12.8
	성북구	3,261	403.9	354.4	-49.5	-12.3
	강북구	910	112.7	89.3	-23.4	-20.7
	도봉구	1,113	137.9	109.2	-28.7	-20.8
	노원구	2,489	308.3	244.0	-64.3	-20.9
	은평구	2,495	309.0	257.1	-51.9	-16.8
	서대문구	1,568	194.2	161.6	-32.6	-16.8
	마포구	3,902	483.3	447.6	-35.7	-7.4
	양천구	6,455	799.5	625.7	-173.9	-21.7
	강서구	2,778	344.1	341.3	-2.8	-0.8
	구로구	1,962	243.0	225.2	-17.8	-7.3
	금천구	924	114.5	94.8	-19.6	-17.1
	영등포구	5,102	632.0	754.9	123.0	19.5
동작구	4,222	523.0	436.7	-86.2	-16.5	
관악구	1,986	246.0	203.8	-42.2	-17.1	
서초구	27,926	3,459.0	3,138.5	-320.5	-9.3	
강남구	38,299	4,743.9	4,845.1	101.2	2.1	
송파구	18,674	2,313.0	1,904.0	-409.0	-17.7	
강동구	4,507	558.3	443.9	-114.4	-20.5	

(계속)

시·도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군·구					
부산	소계	8,662	1072.8	1063.3	-9.6	278.7
	중구	59	7.3	18.1	10.8	147.1
	서구	161	19.9	18.3	-1.6	-8.1
	동구	168	20.8	26.4	5.6	26.9
	영도구	173	21.4	52.6	31.1	145.3
	부산진구	668	82.7	105.1	22.4	27.0
	동래구	604	74.8	69.3	-5.5	-7.4
	남구	1,365	169.1	148.0	-21.1	-12.5
	북구	453	56.1	54.4	-1.7	-3.1
	해운대구	2,008	248.7	217.7	-31.0	-12.5
	사하구	471	58.3	53.6	-4.7	-8.1
	금정구	544	67.4	70.8	3.4	5.1
	강서구	95	11.8	11.4	-0.4	-3.0
	연제구	459	56.9	52.6	-4.2	-7.4
	수영구	828	102.6	89.8	-12.8	-12.5
	사상구	362	44.8	43.5	-1.4	-3.1
기장군	244	30.2	31.7	1.5	5.0	
대구	소계	4,114	509.7	454.3	-55.1	-55.9
	중구	75	9.3	10.9	1.6	17.6
	동구	980	121.4	103.5	-17.8	-14.7
	서구	195	24.2	21.1	-3.0	-12.5
	남구	213	26.4	21.9	-4.5	-16.9
	북구	448	55.5	65.1	9.7	17.4
	수성구	1,316	163.0	139.1	-23.9	-14.7
	달서구	654	81.0	68.7	-12.3	-15.2
	달성군	233	28.9	24.0	-4.9	-16.9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도	시·군·구					
인천	소계	7,781	963.9	1,158.6	194.8	198.1
	중구	236	29.2	37.6	8.4	28.8
	동구	184	22.8	29.3	6.5	28.6
	남구	994	123.1	158.4	35.2	28.6
	연수구	1,010	125.1	182.1	57.0	45.6
	남동구	1,738	215.3	313.5	98.2	45.6
	부평구	987	122.3	132.5	10.2	8.4
	계양구	604	74.8	81.1	6.3	8.4
	서구	1,733	214.7	189.5	-25.1	-11.7
	강화군	246	30.5	26.9	-3.6	-11.7
	옹진군	49	6.1	7.7	1.7	27.5
광주	소계	1,875	232.3	211.0	-21.2	-41.5
	동구	187	23.2	22.3	-0.9	-3.7
	서구	380	47.1	43.0	-4.0	-8.6
	남구	386	47.8	46.0	-1.8	-3.7
	북구	460	57.0	47.4	-9.6	-16.9
	광산구	462	57.2	52.3	-4.9	-8.6
대전	소계	3,713	459.9	461.3	1.4	25.7
	동구	349	43.2	50.8	7.5	17.4
	중구	366	45.3	53.2	7.9	17.4
	서구	1,542	191.0	182.3	-8.7	-4.6
	유성구	951	117.8	112.4	-5.4	-4.6
	대덕구	505	62.6	62.6	0.1	0.1
울산	소계	2,068	256.2	241.6	-14.6	-8.6
	중구	327	40.5	42.2	1.7	4.2
	남구	854	105.8	89.9	-15.9	-15.0
	동구	246	30.5	31.8	1.3	4.3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도	시·군·구					
울산	북구	258	32.0	33.3	1.4	4.3
	울주군	383	47.4	44.4	-3.1	-6.4
세종특별자치시		223	27.6	24.0	-3.6	-13.2
경기	소계	69,414	8,598.0	8,179.0	-419.0	-154.0
	수원시	3,957	490.1	582.0	91.9	18.7
	성남시	12,889	1,596.5	1,621.9	25.4	1.6
	의정부시	1,089	134.9	134.4	-0.5	-0.4
	안양시	4,253	526.8	486.0	-40.8	-7.7
	부천시	2,437	301.9	250.1	-51.7	-17.1
	광명시	1,099	136.1	110.9	-25.2	-18.5
	평택시	1,550	192.0	191.0	-1.0	-0.5
	동두천시	247	30.6	30.5	-0.1	-0.4
	안산시	1,573	194.8	212.0	17.1	8.8
	고양시	7,003	867.4	741.1	-126.3	-14.6
	과천시	658	81.5	78.3	-3.2	-3.9
	구리시	1,004	124.4	108.7	-15.6	-12.6
	남양주시	3,129	387.6	338.9	-48.7	-12.6
	오산시	1,054	130.6	128.2	-2.4	-1.8
	시흥시	1,234	152.8	124.6	-28.3	-18.5
	군포시	1,064	131.8	103.6	-28.2	-21.4
	의왕시	1,433	177.5	170.6	-6.9	-3.9
	하남시	910	112.7	114.1	1.4	1.3
	용인시	11,371	1,408.5	1,274.5	-133.9	-9.5
	파주시	1,660	205.6	204.5	-1.1	-0.5
이천시	1,274	157.8	159.8	2.0	1.3	
안성시	648	80.3	79.9	-0.4	-0.5	
김포시	1,060	131.3	115.9	-15.4	-11.7	

(계속)

시·도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군·구					
경기	화성시	2,547	315.5	298.5	-17.0	-5.4
	광주시	1,714	212.3	215.0	2.7	1.3
	양주시	508	62.9	62.7	-0.2	-0.4
	포천시	400	49.5	49.3	-0.2	-0.4
	여주군	682	84.5	85.5	1.1	1.2
	연천군	116	14.4	14.3	-0.1	-0.5
	가평군	318	39.4	34.4	-5.0	-12.6
	양평군	533	66.0	57.7	-8.3	-12.6
강원	소계	3,030	375.2	402.2	26.8	251.5
	춘천시	553	68.5	70.7	2.2	3.2
	원주시	770	95.4	91.1	-4.3	-4.5
	강릉시	452	56.0	57.5	1.5	2.7
	동해시	114	14.1	11.4	-2.7	-19.4
	태백시	61	7.6	6.1	-1.5	-19.5
	속초시	154	19.1	23.6	4.5	23.7
	삼척시	89	11.0	8.9	-2.1	-19.5
	홍천군	136	16.8	32.1	15.3	90.8
	횡성군	106	13.1	12.5	-0.6	-4.5
	영월군	58	7.2	9.1	1.9	26.5
	평창군	89	11.0	11.4	0.4	3.6
	정선군	60	7.4	9.2	1.7	23.2
	철원군	122	15.1	15.0	-0.1	-0.5
	화천군	51	6.3	6.5	0.2	2.9
	양구군	46	5.7	5.9	0.2	3.2
	인제군	63	7.8	14.9	7.1	91.4
	고성군	55	6.8	8.5	1.6	24.2
	양양군	51	6.3	7.8	1.5	24.0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도	시·군·구					
충북	소계	2,301	285.1	267.1	-18.1	-120.9
	청주시	1,017	126.0	119.4	-6.5	-5.2
	충주시	370	45.8	41.0	-4.9	-10.6
	제천시	151	18.7	16.8	-1.9	-10.1
	청원군	233	28.9	32.3	3.5	12.0
	보은군	30	3.7	3.0	-0.7	-19.3
	옥천군	45	5.6	4.5	-1.1	-19.0
	영동군	44	5.5	4.4	-1.1	-19.3
	진천군	97	12.0	10.3	-1.8	-14.6
	괴산군	62	7.7	7.7	0.0	0.5
	음성군	165	20.4	18.3	-2.2	-10.6
	단양군	34	4.2	3.8	-0.4	-9.9
	증평군	53	6.6	5.6	-1.0	-14.8
	충남	소계	4,691	581.0	565.0	-17.0
천안시		1,499	185.7	187.4	1.8	1.0
공주시		231	28.6	24.8	-3.8	-13.2
보령시		171	21.2	19.1	-2.1	-9.7
아산시		723	89.6	90.4	0.8	0.9
서산시		403	49.9	50.5	0.6	1.1
논산시		135	16.7	14.9	-1.8	-10.6
계룡시		45	5.6	5.0	-0.6	-10.9
당진시		584	72.3	66.0	-6.4	-8.8
금산군		77	9.5	11.2	1.7	17.5
부여군		79	9.8	8.7	-1.1	-10.8
서천군		96	11.9	10.7	-1.2	-9.8
청양군		45	5.6	5.3	-0.3	-5.1
홍성군		125	15.5	14.7	-0.8	-5.3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도	시·군·구					
충남	예산군	324	40.1	36.6	-3.5	-8.8
	태안군	154	19.1	19.3	0.2	1.2
전북	소계	2,566	317.9	277.2	-40.6	-130.9
	전주시	1,131	140.1	118.7	-21.4	-15.3
	군산시	407	50.4	45.3	-5.1	-10.0
	익산시	373	46.2	41.5	-4.7	-10.1
	정읍시	84	10.4	9.1	-1.3	-12.6
	남원시	61	7.6	7.4	-0.2	-2.3
	김제시	112	13.9	12.5	-1.4	-10.0
	완주군	180	22.3	18.1	-4.2	-18.9
	진안군	35	4.3	4.0	-0.3	-7.9
	무주군	33	4.1	3.8	-0.3	-8.0
	장수군	24	3.0	2.8	-0.2	-6.0
	임실군	21	2.6	2.5	-0.1	-2.3
	순창군	21	2.6	2.5	-0.1	-2.2
	고창군	43	5.3	4.6	-0.7	-12.8
	부안군	41	5.1	4.4	-0.6	-12.5
전남	소계	1,904	235.6	256.7	21.1	70.3
	목포시	292	36.2	39.3	3.1	8.7
	여수시	266	32.9	34.1	1.1	3.5
	순천시	272	33.7	43.4	9.7	28.8
	나주시	66	8.2	9.0	0.9	10.6
	광양시	150	18.6	23.9	5.3	28.7
	담양군	49	6.1	5.1	-1.0	-16.8
	곡성군	55	6.8	6.5	-0.3	-3.9
	구례군	27	3.3	4.3	1.0	28.6
	고흥군	71	8.8	11.3	2.5	28.9
	보성군	47	5.8	7.5	1.7	28.5
	화순군	121	15.0	14.4	-0.6	-3.7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도	시·군·구					
전남	장흥군	26	3.2	2.7	-0.5	-16.5
	강진군	25	3.1	2.6	-0.5	-16.8
	해남군	49	6.1	5.0	-1.0	-16.9
	영암군	48	5.9	6.5	0.6	9.8
	무안군	90	11.1	12.1	1.0	8.8
	함평군	27	3.3	3.7	0.3	10.3
	영광군	69	8.5	7.8	-0.7	-8.7
	장성군	48	5.9	4.9	-1.0	-16.9
	완도군	33	4.1	3.4	-0.7	-16.6
	진도군	21	2.6	2.2	-0.4	-17.0
	신안군	52	6.4	7.0	0.6	8.9
경북	소계	3,092	382.9	480.0	96.9	260.0
	포항시	1,001	124.0	152.4	28.4	22.9
	경주시	282	34.9	65.0	30.1	86.2
	김천시	130	16.1	14.6	-1.5	-9.3
	안동시	153	19.0	18.4	-0.6	-2.9
	구미시	389	48.2	53.6	5.4	11.3
	영주시	115	14.2	11.2	-3.0	-21.2
	영천시	109	13.5	25.1	11.6	85.9
	상주시	94	11.6	9.2	-2.5	-21.1
	문경시	69	8.5	6.7	-1.8	-21.2
	경산시	246	30.5	58.1	27.6	90.5
	군위군	22	2.7	2.6	-0.1	-3.0
	의성군	52	6.4	6.2	-0.2	-3.0
	청송군	24	3.0	2.9	-0.1	-2.9
	영양군	20	2.5	2.3	-0.2	-7.6
영덕군	24	3.0	2.9	-0.1	-2.5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도	시·군·구					
경북	청도군	44	5.5	10.4	4.9	90.3
	고령군	31	3.8	3.4	-0.5	-12.3
	성주군	43	5.3	4.8	-0.5	-9.2
	칠곡군	112	13.9	15.4	1.6	11.2
	예천군	47	5.8	4.6	-1.2	-21.2
	봉화군	34	4.2	3.3	-0.9	-21.1
	울진군	30	3.7	3.7	-0.1	-1.7
	울릉군	21	2.6	3.2	0.6	21.9
	소계	4,805	595.0	566.0	-29.0	-105.0
경남	창원시	1,817	225.1	194.8	-30.3	-13.4
	진주시	353	43.7	40.9	-2.9	-6.6
	통영시	181	22.4	19.9	-2.5	-11.1
	사천시	121	15.0	14.0	-1.0	-6.6
	김해시	796	98.6	110.2	11.6	11.8
	밀양시	169	20.9	23.4	2.5	11.7
	거제시	308	38.2	33.9	-4.2	-11.1
	양산시	575	71.2	74.8	3.6	5.1
	의령군	32	4.0	3.4	-0.5	-13.5
	함안군	70	8.7	7.5	-1.1	-13.2
	창녕군	66	8.2	7.1	-1.1	-13.4
	고성군	74	9.2	8.1	-1.0	-11.1
	남해군	50	6.2	5.8	-0.4	-6.3
	하동군	53	6.6	6.1	-0.4	-6.5
	산청군	37	4.6	4.3	-0.3	-6.3
	함양군	27	3.3	3.2	-0.2	-4.6
	거창군	42	5.2	5.0	-0.2	-4.7
	합천군	34	4.2	4.0	-0.2	-5.1
	제주특별자치도		1,240	153.6	148.0	-5.6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IV.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 확보와 인원 추정

1. 지방세 관련 업무와 인력현황
2. 인력 확보의 기본방향
3. 운영인력 추정
4. 기초자치단체별 운영인력 시뮬레이션



Ⅳ.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 확보와 인원 추정

1. 지방세 관련 업무와 인력현황

가. 지방세 관련 업무현황⁸⁾

- 안전행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세 관련업무를 나누어서 수행
-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이 지방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 및 제도를 제·개정
 - 세제업무는 지방세 정책과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지방세제 연구와 정책의 수립·조정, 지방세 구제제도 등임
 - 세정업무는 지방세 운영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연구와 운영지원,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지원 등임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세정, 체납징수, 세무지도, 과표심사, 세입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함
 - 세정담당은 세정기획, 시·도세운영, 세정실적평가 및 감사, 시·도세 조례 제·개정, 지방세 정보화, 각종 통계자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체납징수담당은 체납징수, 고액·상습 체납자명단공개, 체납관련통계, 부동산·기타 재산 조회 및 압류 관련업무를 수행
 - 세무지도담당은 지방세 세원조사·발굴, 세무조사 관련업무를 수행
 - 과표심사담당은 부동산 가격조사, 지방세 구제제도 관련업무, 지방세소송 관련업무를 수행
 - 세입관리담당은 세외수입 및 금고, 세입결산, 과태료 관련업무를 수행

8) 허명환 등(2014)의 보고서(pp.47~92)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함

<표 IV-1>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의 담당 업무

부서	업무내용
세정기획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정전반의 기획, 지방세 법령개정·제도개선 시세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관련업무 국세이양 및 지방세 신세원 개발 관련사무
세정관리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부과관련 법령 및 사례연구 도세 및 구세 부과·징수, 종합부동산세(국세)부과 관련사무 기준재정수입 및 수요액산정 관련사무
세무지도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자치구·군 세원조사 업무 지도감독 법인 세무조사, 지방세 비리업무 - 과세자료 통계, 세무지도 제도개선
심사과표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구·군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처리 주택가격 공시업무, 지방세 소송업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업무, 주택가격 공시업무
세입운영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배정, 세외수입 및 시금고 관련업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업무, 체납액 압류 관련업무 직속기관·사업소·구·군의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자금배정 승인
세정정보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정정보화 발전계획 수립, 지방세온라인 수납관련 업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개발주택가격 열람 시스템 운영관리, 민원·납세편의 시책사업 발굴
징세특별기동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납세 정리 종합계획, 자치구·군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 자치구별 체납자료 인계인수 및 체납처분 금융재산 및 급여, 자동차 공매 및 압류 등 업무

자료: 부산시청(www.busan.go.kr); 허명환 등(2014), “효율적인 지방제정 인프라 구축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p.57에서 재인용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과·징수, 과표, 세무조사, 세입운용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함
 - 시는 일반적으로 세정과에 6개 정도의 담당을 두고 있으며 도세와 시세, 징수, 세입운용, 과표,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거제시 등)
 - 자치단체에 따라 시세 대신에 재산세를 별도의 담당으로 두거나 체납관련 담당조직을 별도로 두기도 함(화성시, 여주시, 구미시 등)
 - 군은 일반적으로 재무과에 5개 정도의 담당을 두고 있으며 부과, 경리, 징수, 재산관리, 과표 등의 업무를 담당함(영암군 등)
 - 군은 세무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만을 담당하며, 재무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부과·징수업무 외에 경리와 관재까지 담당함

- 자치구의 지방세무조직은 지방세 세목별로 조직을 구성하는 형태가 자주 발견되고 있음
- 자치구에서 보통 세목별로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세목별 구성 외에도 세정과 세무조사, 과표 등의 담당을 별도로 두는 경우가 있음

<표 IV-2> 광양시 세정과의 담당 업무

부서	업무내용
세정 담당	▪ 지방세 전산, 등록면허세, 지방세 제증명
부과 담당	▪ 차량취득세,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부과, 등록면허세(부동산)
재산세 담당	▪ 재산세(건물분, 토지분, 주택분) 부과
징수 담당	▪ 법원경매 배당금 수령, 지방세 체납안내 발송
체납 담당	▪ 체납차량 징수촉탁 업무
지방세정리 담당	▪ 세입정리 및 채권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등록
세외수입 담당	▪ 자금배정, 국도비, 세외수입
세무조사 담당	▪ 세무조사,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과표 담당	▪ 개별주택가격 조사

자료: 광양시청(www.gwangyang.go.kr); 허명환 등(2014), “효율적인 지방제정 인프라 구축방안”, 한국지방세 연구원, p.63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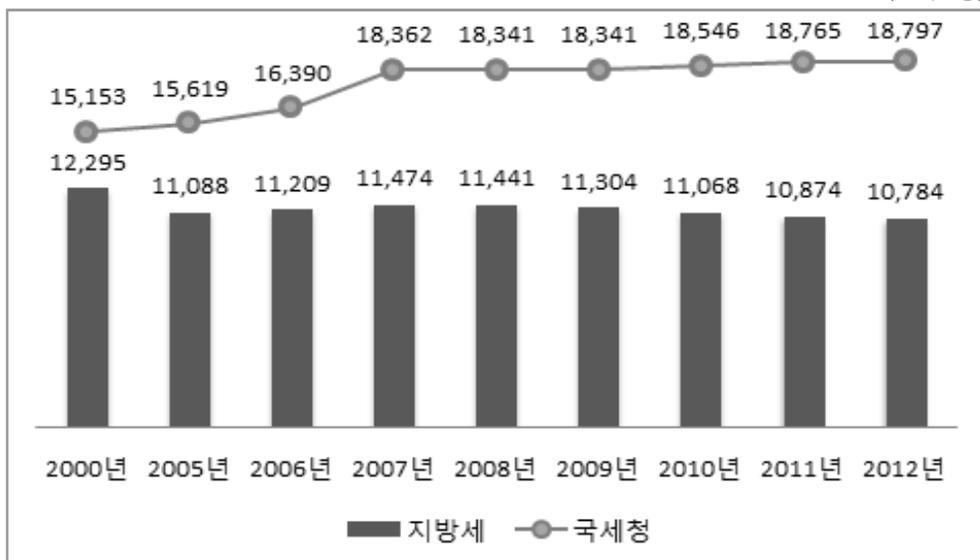
나. 지방세 관련 인력현황

- 지방세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인력의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 2012년 기준 지방 세무공무원의 수는 1만 784명임
 - 2012년 기준 세무인력은 2000년(1만 2295명)에 비해 12.3% 감소하였으며, 세무직이 본격적으로 충원된 1994년(1만 6270명)에 비해 33.7% 감소함
 - 지방 세무공무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원인으로는 관련업무가 자동화·정문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지방세와 달리 국세청 인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냄
 - 2012년 기준 국세청의 인력 수는 1만 8797명임
 - 2012년 기준 국세청의 인력은 2000년(1만 5153명)에 비해 24.1% 증가함
 - 특히 국세청 인력은 2006년에 771명, 2007년에 1972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에 따른 인력확충의 영향으로 보임

<그림 IV-1> 연도별 국세청 및 지방세공무원 인력증가 현황

(단위: 명)



자료: 안전행정부(2013), 『지방세통계연보』; 국세청(2013), 『국세통계』

- 지방세 인력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1인당 징수세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지방세 징수액은 2000년 20조 6006억원에서 2012년 53조 9380억원으로 2.62배 수준으로 증가함
 - 동일 기간 중 세무공무원 1인당 징수액은 16억 7천 6백만원에서 2012년 50억 2백만원으로 2.98배 수준으로 증가함
 - 이러한 결과에서 지방세무공무원 1인당 징수액이 전체 지방세 징수액에 비해 더 빨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IV-3> 연도별 지방세 인력 및 1인당 징수비 현황

연도	지 방 세 징수세액		지 방 세 공무원수	1 인 당 징수세액
	단위	억원	명	백만원
1994년		132,309	16,270	813
1995년		153,160	13,365	1,146
1996년		173,947	14,352	1,212
1997년		184,057	14,452	1,274
1998년		171,497	13,504	1,270
1999년		185,861	12,999	1,430
2000년		206,006	12,295	1,676
2001년		266,649	11,989	2,224
2002년		315,257	11,695	2,696
2003년		331,329	10,766	3,078
2004년		342,017	10,857	3,150
2005년		359,774	11,088	3,245
2006년		412,937	11,209	3,684
2007년		435,243	11,474	3,793
2008년		454,797	11,441	3,980
2009년		451,678	11,304	4,000
2010년		491,598	11,068	4,441
2011년		523,001	10,874	4,810
2012년		539,380	10,784	5,002

자료: 안전행정부(2013), 『지방세통계연보』

- 국세의 경우에도 1인당 징수세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국세 징수액은 2000년 86조 6013억원에서 2012년 192조 926억원으로 2.22배 수준으로 늘어남
 - 동일 기간 중 국세인력 1인당 징수액은 57억 1천 5백만원에서 2012년 102억 1천 9백만원으로 1.79배 수준으로 늘어남
 - 국세인력 1인당 징세비용은 2000년 4천 6백만원에서 2012년 7천 1백만원으로 1.54배 수준으로 늘어남

<표 IV-4> 국세청의 연도별 인력 및 징세비 현황

구 분	징수세액 (억원)	징세비 (백만원)	정원 (명)	1인당징수세액 (백만원)	1인당징세비 (백만원)
1980년	42,177	51,209	12,034	350	4
1984년	79,649	91,492	12,462	639	7
1985년	89,416	102,796	12,592	710	8
1986년	100,990	111,555	12,604	801	9
1987년	120,159	123,042	12,613	953	10
1988년	150,838	146,629	12,613	1,196	12
1989년	180,780	174,116	13,099	1,380	13
1990년	226,778	210,614	14,094	1,609	15
1991년	269,854	267,149	14,094	1,914	19
1992년	320,853	313,866	14,502	2,212	22
1993년	363,747	347,860	14,806	2,457	23
1994년	436,905	393,808	14,986	2,915	26
1995년	517,487	471,944	14,986	3,453	31
1996년	591,997	551,158	15,318	3,865	36
1997년	636,459	582,151	15,284	4,164	38
1998년	635,315	581,022	15,182	4,185	38
1999년	704,769	595,132	15,153	4,651	39
2000년	866,013	691,228	15,153	5,715	46
2001년	892,717	755,329	15,145	5,894	50
2002년	966,166	817,385	15,158	6,374	54
2003년	1,070,486	879,652	15,158	7,062	58
2004년	1,102,172	949,234	15,329	7,190	62
2005년	1,204,237	976,479	15,619	7,710	63
2006년	1,302,609	1,023,822	16,390	7,948	62
2007년	1,530,628	1,081,983	18,362	8,336	59
2008년	1,575,286	1,239,631	18,341	8,589	68
2009년	1,543,305	1,300,741	18,341	8,415	71
2010년	1,660,149	1,341,752	18,546	8,952	72
2011년	1,801,532	1,364,417	18,765	9,600	73
2012년	1,920,926	1,339,749	18,797	10,219	71

주: 1) 징수세액은 내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임

2) 징세비는 국세청에서 연간 지출한 총 지출금액(결산기준 : 일반회계)

3) 정원은 해당 연도 12.31일 현재 인원임(정무·별정, 기능직 제외)

자료: 국세청(2013), 『국세통계』

-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세무공무원 1인당 징수액 증가율은 지방세가 국세의 2배 수준임
 -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세인력 1인당 징수액 증가율은 9.5%임
 - 동일 기간 중 국세인력 1인당 징수액 증가율은 5.0%임
- 세무공무원 1인당 징수액 증가율은 지방세가 국세보다 높지만, 세무공무원 1인당 징수액 규모는 지방세가 국세의 절반에 불과함
 - 2012년 기준 지방세인력 1인당 징수액은 50억원으로 국세(102.2억원)의 49% 수준임
-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정책수립 및 조정 등의 인력이 취약함
 - 지방세 관련 정책적 대응과 징수·부과업무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중앙과 광역조직의 인력이 국세에 비해 훨씬 부족함
 - 중앙과 광역의 지방세 인력수는 각각 국세의 6.8%, 20.4%에 불과함⁹⁾
 - 기초의 지방세 인력수는 국세의 71.1%에 달함

<표 IV-5> 국세와 지방세 조직 및 인력비교

구분	국 세		지방세		국세대비 지방세 수준
	조직	인력	조직	인력	
중앙 조직	·기획재정부 : 1실4관 15과2팀	133명	·안전행정부 : 1정책관 4과	73명	6.8%
	·조세심판원 : 원장, 6심판관, 1실, 13조사관	111명			
	·국세청 : 청장, 차장, 5관 6국 15담당관 23과 2팀	832명			
광역 조직	·지방국세청 : 6청	2,851명	·광역자치단체 : 14과 4관 1실 29팀 56담당	581명	20.4%
기초 조직	·세무서 : 124서	16,097명	·기초자치단체 : 304과	11,451명	71.1%
합계	-	20,024명	-	12,105명	60.5%

자료: 허명환 등(2014), “효율적인 지방세정 인프라 구축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p.98에서 재인용

9) 세무공무원의 범위, 중앙조직의 포함여부, 인력의 조사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 『지방세통계연보』, 『국세통계』의 전체 공무원 수와 다름

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인력현황

- 기획재정부, 국세청 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를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정책수립, 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함
 - 국세청 본청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경정·환급·감면 등 관리업무, 과세자료 통보·접수, 납세고지서 발급·송달 등 업무를 담당함
 - 지방국세청은 불복·고충 등 민원처리, 세무조사 등 업무를 담당함
 - 세무서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부과·징수·감면·환급처리와 과세자료 수집, 통보 등 업무를 담당함
 - 국세청은 산하에 6개의 지방국세청이 있고, 111개의 세무서와 19개의 지서가 있음 (김태호, 2014)

<표 IV-6>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과 세무서 수

구분	기 구	관 할 구 역	세무서 수
국세청	12국 40과	-	111
소 계		29국 112과	
서울청	7국 28과	서울	25
중부청	6국 21과	인천, 경기, 강원	29
대전청	4국 16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14
광주청	4국 15과	광주, 전남, 전북	14
대구청	4국 15과	대구, 경북	13
부산청	4국 17과	부산, 울산, 경남, 제주	16

자료: 국세청(2013), 「업무현황보고」, 대한민국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참고자료(국정감사자료); 김태호(2014),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수요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p.56 에서 재인용

-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관련 주요 업무는 국세청의 일선 세무서에서 주로 담당함
 - 일선 세무서 조직은 세무서장 산하에 운영지원과, 세원관리과, 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으로 구분됨
- 세무서의 재산세과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함

- 재산세과 소속 공무원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함
 - 즉, 재산세과 소속 동일 공무원이 매년 5월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징수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재산세과 관련업무를 병행함
- 업무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납세인원을 살펴보면 재산세과에서 부과·징수하는 납세인원은 82만명(2012년) 수준임
- 2012년 기준 재산세과 납세인원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45만 1302명, 종합부동산세 27만 3955명, 상속세 6201명, 증여세 9만 1331명임

<표 IV-7> 국세의 재산세과 납세인원 추이

패널 A : 납세인원 수

(단위: 명)

세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계
양도소득세	527,769	500,804	538,915	451,302	2,018,790
종합부동산세	212,618	250,214	248,477	273,955	985,264
상속세	4,340	4,547	5,720	6,201	20,808
증여세	96,654	96,623	126,409	91,331	411,017
합계	841,381	852,188	919,521	822,789	3,435,879

패널 B : 납세인원 구성비

(단위: %)

세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계
양도소득세	62.7	58.8	58.6	54.9	58.8
종합부동산세	25.3	29.4	27.0	33.3	28.7
상속세	0.5	0.5	0.6	0.8	0.6
증여세	11.5	11.3	13.7	11.1	12.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세청의 『국세통계』를 이용하여 분석

- 국세청 재산세과 업무비중을 납세인원으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업무는 줄어들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업무는 늘어나고 있음
- 양도소득세 납세인원 비율은 2009년 62.7%에서 2012년 54.9%로 7.8%p 감소함
 -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비율은 2009년 25.3%에서 2012년 33.3%로 8.0%p 증가함
 - 상속세·증여세 납세인원 비율은 2009년 12.0%, 2012년 11.9%로 거의 변화가 없음

-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징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83.9%임
 -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55.7%, 경기 25.0%, 인천 3.2%임

<표 IV-8>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납세인원

(단위: 명, %)

지역별	합계		개인		법인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국	273,955	100.0	261,640	100.0	12,315	100.0
서울	152,476	55.7	148,282	56.7	4,194	34.1
부산	9,238	3.4	8,327	3.2	911	7.4
대구	4,145	1.5	3,809	1.5	336	2.7
인천	8,841	3.2	8,272	3.2	569	4.6
광주	2,217	0.8	1,876	0.7	341	2.8
대전	3,791	1.4	3,530	1.3	261	2.1
울산	2,068	0.8	1,877	0.7	191	1.6
세종	222	0.1	203	0.1	19	0.2
경기	68,476	25.0	65,653	25.1	2,823	22.9
강원	2,908	1.1	2,609	1.0	299	2.4
충북	2,298	0.8	2,002	0.8	296	2.4
충남	4,618	1.7	4,160	1.6	458	3.7
전북	2,566	0.9	2,302	0.9	264	2.1
전남	1,562	0.6	1,350	0.5	212	1.7
경북	3,058	1.1	2,615	1.0	443	3.6
경남	4,231	1.5	3,703	1.4	528	4.3
제주	1,240	0.5	1,070	0.4	170	1.4

자료: 국세청(2013), 『국세통계연보』

-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개인이 대부분임
 - 201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중 개인은 26만 1640명(95.5%), 법인이 1만 2315명(4.5%)임
- 법인은 납세인원수는 미미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세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 정도임
 - 201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은 1조 2427억원임
 - 개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은 3737억원(30.1%), 법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은 8690억원(69.9%)임

2. 인력 확보의 기본방향

○ 종합부동산세 징세비용과 인력은 현행 수준 유지

-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면 국세청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뿐이고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음
 -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수립, 제도개선 업무와 국세청 본청의 종합부동산세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 등이 안전행정부로 이관됨
 - 지방국세청의 불복·고충 등 민원처리업무는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됨
 - 세무서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부과·징수·감면·환급, 불복·고충 민원처리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전체 업무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무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업무량의 증감요인이 발생함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요건, 부과·징수 등이 재산세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러한 협업으로 인해 필요인력이 줄어들 수 있음
 -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별로 세무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명의 인력을 배정해야하고 이로 인해 필요인력이 늘어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인 경우에는 세무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인력을 배정하지 않고 납세인원에 따라 인력을 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인력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이처럼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면 업무량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이 동시에 상존함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세수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세비용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현행과 동일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변동 등 경제여건이 아닌 지방세 전환 이유로 인해 세수가 변동할 이유는 없음
- 징세비용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로 전환된 종합부동산세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수도 현재 수준이어야 함
 - 즉, 국세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기획재정부, 국세청 본청, 지방 국세청, 세무서의 인력 등) 수와 지방세인 경우 세무공무원(안전행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수가 동일해야 됨
-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수는 국세인 경우의 운영인력을 상회하지 않아야 함

○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현행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 이관이 바람직

-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편의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세무공무원이 필요함
 - 신고·부과·징수·감면·환급, 세무조사, 불복·고충 등의 민원처리 등,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려면 세무공무원은 법률해석 및 부동산 등 연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함
 - 특히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함
 -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조세 순응도가 낮기 때문에 납세자의 이의를 원활히 처리하려면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
- 징세비용의 최소화, 납세자 편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현행 국세청 등에서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종합부동산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중, 개인 신상 등의 이유로 국세청 등에서 이관되지 않은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인력을 새로 충원함

3. 운영인력 추정

○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은 ‘납세인원’으로 추정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서에서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담당하는 정·현원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1명, 국토교통부 2명, 국세청 본청 3명 등, 총 6명이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담당함
- 하지만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정과정을 거쳐야 함
 -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는 세목별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목을 통합하여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임
 - 2013년 말 기준 지방국세청의 총현원은 1481명, 각 세무서의 재산세과 총현원은 1536명임
- 지방국세청과 각 세무서의 재산세과 전체인력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운영인력을 추정하는 기준으로 ‘납세인원’을 사용함¹⁰⁾
 - 김태호(2013)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른 인력수요를 산출하기 위해 업무량을 기준으로 산출함
 - 구체적으로 ‘세무서 인력비례 산출방식’과 ‘지방소득세 업무량별 인력산출방식’을 이용하였음
 - ‘세무서 인력비례 산출방식’은 국세청의 소득세·법인세 부과·징수 인력에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방소득세 업무비율(지방소득세의 업무량/소득세·법인세의 업무량)을 곱하여 추가될 인력을 산출함
 - ‘지방소득세 업무량 비례방식’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는 경우의 업무량과 현재 시·군·구에서 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량을 비교하여 추가될 인력을 산출함

10)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할지를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직 진단, 직무 분석 등의 작업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업무를 분석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그 결과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접근을 채택하지 않았음

- 납세인원에 따라 각 세무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신고·부과·징수·환급 등 업무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무량의 대응치로 납세인원을 사용함¹¹⁾

○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전환 시 이관되어야 할 운영인력 수는 474명

- 먼저, 지방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담당인력수는 총현원(1481명)에 국세 총납세인원 대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 총납세인원 대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비율은 1.68~1.91%임
 - 연도별 국세 총납세인원 대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비율은 2009년 1.68%, 2010년 1.91%, 2011년 1.83%, 2012년 1.99%임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간 국세 총납세인원 대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평균 비율은 1.85%임
 -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비율은 최근 들어 다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음을 뜻함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 총납세인원 대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비율을 이용하여 지방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담당인력을 추정하면 최소 25명에서 최대 29명임
 - 2013년 말 기준, 지방국세청 총현원(1481명)에 연도별 국세 총납세인원 대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비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 담당인력을 추정하면 2009년 25명, 2010년 28명, 2011년 27명, 2012년 29명임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평균 납세인원 비율을 적용하여 지방국세청 인원에서 종합부동산세 담당인력을 추정하면 27명임

11) 지자체별로 납세인원이 비슷하더라도 업무량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즉, 납세자가 단일 물건으로 중부세 대상이 된 경우와 여러 지자체에 산재해 있는 물건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량과 세무처리비용이 크게 달라질 것임

<표 IV-9>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비율 추이

(단위: 명, %)

세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년 누계
종합부동산세	212,618	250,214	248,477	273,955	985,264
총납세인원	12,668,330	13,124,742	13,590,725	13,792,461	53,176,258
종합부동산세비율	1.68	1.91	1.83	1.99	1.85

자료: 국세청(2013), 『국세통계연보』

- 다음으로, 세무서의 재산세과 인력 중 종합부동산세 담당인력은 총현원(1536명)에 재산세과 총납세인원 대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비율을 곱하여 추정됨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재산세과 총납세인원 대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비율은 25.3~33.3%임
 - 연도별 재산세과 총납세인원 대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비율은 2009년 25.3%, 2010년 29.4%, 2011년 27.0%, 2012년 33.3%임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간 재산세과 총납세인원 대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평균 비율은 28.7%임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재산세과 총납세인원 대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비율을 이용하여 세무서 재산세과의 종합부동산세 담당인력을 추정하면 최소 388명에서 최대 511명임
 - 2013년 말 기준, 세무서 재산세과의 총현원(1536명)에 연도별 재산세과 총납세인원 대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비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 담당인력을 추정하면 2009년 388명, 2010년 451명, 2011년 415명, 2012년 511명임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평균 납세인원 비율을 적용하여 세무서 재산세과 인원에서 종합부동산세 담당인력을 추정하면 441명임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서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야 할 총인력의 수는 474명임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본청에서 이관되어야 할 인력수는 6명임
 - 지방국세청에서 이관되어야 할 인력수는 27명임
 - 세무서에서 이관되어야 할 인력수는 441명임

4. 기초자치단체별 운영인력 시뮬레이션

가. 운영인력 산정방법

-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체인력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 즉, 종합부동산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의 전체인력규모는 현재 세무서의 종합부동산세 관련인력의 수와 동일함
-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담당하는 인력수는 441명으로 추정됨
 - 2013년 말 기준, 세무서의 재산세과 총현원은 1536명임¹²⁾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재산세과 전체 납세인원 중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의 비율은 28.7%임
 - 재산세과 총현원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비율인 28.7%를 곱한 441명이 종합부동산세 담당인력수로 추정됨
- 기초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납세인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납세인원 비례방식’과 종합부동산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납세인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단계적 배정방식’이 있음
- 첫째, ‘납세인원 비례방식’은 기초자치단체별 납세인원에 비례하여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을 배정하는 방안임
- 납세인원 비례방식은 업무량에 비례하여 인원이 산정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별로 세무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방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납세인원과 달리 세무공무원 수는 소수점으로 나누어서 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인력배정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¹³⁾

12) 안전행정부 내부자료를 통해 총 현원을 파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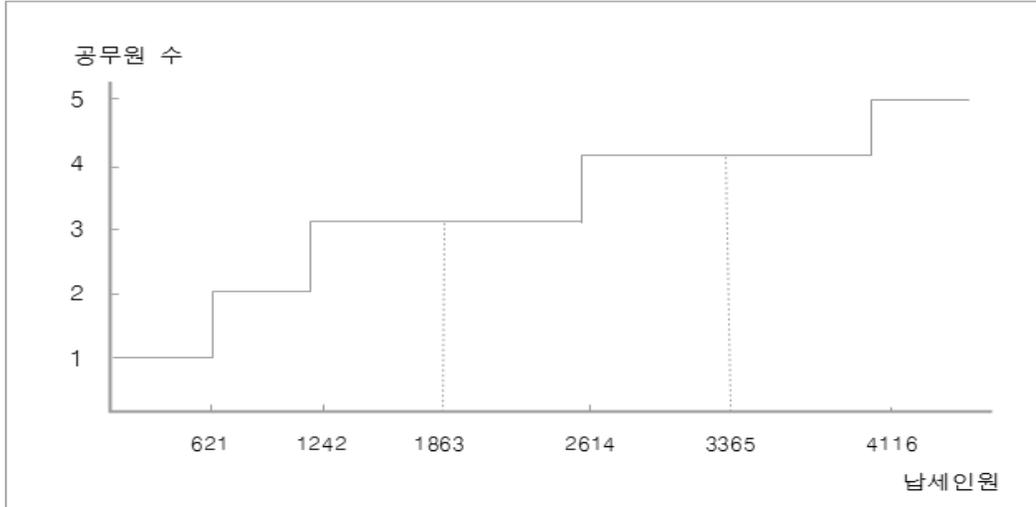
13) 이러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반올림을 하여 인력을 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납세인원이 적어 세무공무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지자체가 다수 발생함

- 둘째, ‘단계적 배정방식’은 기초자치단체가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수행하려면 최소한 1명 이상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인원수에 따라 인력을 차등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임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수행되어야 함
 -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최소 1명 이상의 세무공무원이 필요함
-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종합부동산세 공무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분업과 협업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 1인당 감당할 수 있는 납세인원이 더 많음
 - 인원 배정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납세인원이 적더라도 소정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인원을 배분함
 - 자치단체별로 종합부동산세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배정방식’은 기초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1863명을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감당할 수 있는 납세인원을 달리 정함
 - 201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전체납세인원은 27만 3955명임
 - 세무서의 종합부동산세 담당 전체인력은 441명임
 - 종합부동산세 담당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납세인원은 621명임
 - 기초자치단체의 납세인원 1863명이면 공무원 1인당 평균 납세인원(621명)을 고려하면 3명을 배정받을 수 있음
- 즉,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1863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는 납세인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무원을 배정받고, 납세인원 1863명 초과인 기초자치단체는 납세인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공무원을 배정받도록 설정함
- 먼저,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이 1863명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621명을 기준으로 필요인력이 산정됨
 - 납세인원 1863명 미만인 기초자치단체 수는 총 201개임

- 구체적으로 납세인원 1~621명 미만인 경우는 공무원 1명, 납세인원 621~1241명 미만인 경우는 공무원 2명, 납세인원 1242~1863명 미만인 경우는 공무원 3명을 배정함
-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이 1863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도 납세인원 1863명까지는 3명이지만 1863명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인원 1502명 당 1명의 인력이 배정됨
-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1863명까지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후, 할당되지 않은 납세인원을 배정되지 않은 공무원 수로 나누면 납세인원 1502명 당 1명의 인력이 산정됨
 - 1863명 초과 부분에 대해 납세인원 1502명 당 1명의 공무원 배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산정됨
 -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납세인원 1863명 부분까지에 할당된 납세인원은 13만 1231명, 공무원은 346명임
 - 종합부동산세 전체 납세인원은 27만 3955명이므로 납세인원 1863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할당되어야 할 납세인원은 14만 2724명임
 - 기초자치단체에 배정이 가능한 전체인력은 441명이므로 납세인원 1863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배정이 가능한 인력은 95명임
 - 추가적으로 할당되어야 할 납세인원(14만 2724명)을 추가적으로 배정이 가능한 인력수(95명)로 나누면 1502명임
 - 납세인원 1863명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인원 1502명 당 공무원 1명을 배정하는데, 이 경우에는 반올림을 적용함
- 결과적으로 납세인원 1863명 초과 기초자치단체는 납세인원 1863~2614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납세인원 2614~4116명 미만인 경우에는 4명, 납세인원 4116~5618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 등으로 증가함

<그림 IV-2> 납세인원별 필요공무원 수

(단위 : 명)



나. 기초자치단체별 운영인력 시뮬레이션 결과

- ‘단계적 배정방식’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필요 운영인력 수를 살펴보면 운영인력 1명인 기초자치단체는 총 155개입¹⁴⁾
 - 납세인원이 621명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명의 운영인력을 배정받음
 - 운영인력이 1명인 기초자치단체 중 납세인원이 적은 지역은 경북 영양군(20명), 전남 진도군(21명), 전북 임실군(21명), 경북 울릉군(21명) 등임
 - 운영인력이 1명인 기초자치단체 중 납세인원이 많은 지역은 인천 계양구(604명), 부산 동래구(납세인원 604명), 충남 당진시(584명), 경남 양산시(584명) 등임
-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이 2명인 기초자치단체는 총 31개입
 - 납세인원이 621~1242명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2명의 운영인력을 배정받음
 - 운영인력이 2명인 기초자치단체 중 납세인원이 적은 지역은 경기 안성시(648명), 대구 달서구(654명), 경기 과천시(658명), 부산 부산진구(668명) 등임

14) 지자체별 운영인력은 납세인원에 따라 배정되었기 때문에 배정인원 수는 부동산교부세액의 배부액과는 반비례 관계를 가짐

- 운영인력이 2명인 기초자치단체 중 납세인원이 많은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1238명), 경기 시흥시(1234명), 전북 전주시(1131명) 등임
-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이 3명인 기초자치단체는 총 23개임
 - 납세인원이 1242~2614명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3명의 운영인력을 배정받음
 - 운영인력이 3명인 기초자치단체 중 납세인원이 적은 지역은 경기 이천시(1274명), 대구 수성구(1316명), 부산 남구(1365명) 등임
 - 운영인력이 3명인 기초자치단체 중 납세인원이 많은 지역은 경기 화성시(2547명), 서울 은평구(2495명), 서울 노원구(2489명), 경기 부천시(2437명) 등임
-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이 4명인 기초자치단체는 총 8개임
 - 납세인원 2614~4116명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4명의 운영인력을 배정받음
 - 운영인력이 4명인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강서구(2778명), 경기 남양주시(3129명), 경기 수원시(3957명), 서울 광진구(납세인원 3991명) 등임
-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이 5명인 기초자치단체는 총 4개임
 - 납세인원 4116~5618명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5명의 운영인력을 배정받음
 - 운영인력이 5명인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동작구(4222명), 경기 안양시(4253명), 서울 강동구(4507명), 서울 영등포구(5102명) 등임
-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이 6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총 9개임
 - 서울 양천구(6455명)와 경기 고양시(7003명)가 6명이고, 서울 송파구(1만 8674명) 14명, 서울 서초구(2만 7926명)와 서울 강남구(3만 8299명)가 27명 등임

<표 IV-10> 기초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필요공무원 수

(단위: 억원, 명)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비례방식의 필요공무원 수(A)	단계적 배정방식의 필요공무원 수(B)	차이 인원 (B-A)
시·도	시·군·구				
전국	합계	273,955	441.00	441	-
서울	소계	152,476	245.00	144	-101.00
	종로구	3,330	5.36	4	-1.36
	중구	2,231	3.59	3	-0.59
	용산구	8,463	13.62	7	-6.62
	성동구	3,221	5.19	4	-1.19
	광진구	3,991	6.42	4	-2.42
	동대문구	1,238	1.99	2	0.01
	중랑구	1,429	2.30	3	0.70
	성북구	3,261	5.25	4	-1.25
	강북구	910	1.46	2	0.54
	도봉구	1,113	1.79	2	0.21
	노원구	2,489	4.01	4	-0.01
	은평구	2,495	4.02	4	-0.02
	서대문구	1,568	2.52	3	0.48
	마포구	3,902	6.28	4	-2.28
	양천구	6,455	10.39	6	-4.39
	강서구	2,778	4.47	4	-0.47
	구로구	1,962	3.16	3	-0.16
	금천구	924	1.49	2	0.51
	영등포구	5,102	8.21	5	-3.21
	동작구	4,222	6.80	5	-1.80
	관악구	1,986	3.20	3	-0.20
	서초구	27,926	44.95	20	-24.95
	강남구	38,299	61.65	27	-34.65
송파구	18,674	30.06	14	-16.06	
강동구	4,507	7.26	5	- 2.26	

(계속)

시·도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비례방식의 필요공무원 수(A)	단계적 배정방식의 필요공무원 수(B)	차이 인원 (B-A)
	시·군·구				
부산	소계	8,662	13.94	22	8.06
	중구	59	0.09	1	0.91
	서구	161	0.26	1	0.74
	동구	168	0.27	1	0.73
	영도구	173	0.28	1	0.72
	부산진구	668	1.08	2	0.92
	동래구	604	0.97	1	0.03
	남구	1,365	2.20	3	0.80
	북구	453	0.73	1	0.27
	해운대구	2,008	3.23	3	-0.23
	사하구	471	0.76	1	0.24
	금정구	544	0.88	1	0.12
	강서구	95	0.15	1	0.85
	연제구	459	0.74	1	0.26
	수영구	828	1.33	2	0.67
	사상구	362	0.58	1	0.42
	기장군	244	0.39	1	0.61
	대구	소계	4,114	6.62	12
중구		75	0.12	1	0.88
동구		980	1.58	2	0.42
서구		195	0.31	1	0.69
남구		213	0.34	1	0.66
북구		448	0.72	1	0.28
수성구		1,316	2.12	3	0.88
달서구		654	1.05	2	0.95
달성군		233	0.38	1	0.62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비례방식의 필요공무원 수(A)	단계적 배정방식의 필요공무원 수(B)	차이 인원 (B-A)
시·도	시·군·구				
인천	소계	7,781	12.54	17	4.46
	중구	236	0.38	1	0.62
	동구	184	0.30	1	0.70
	남구	994	1.60	2	0.40
	연수구	1,010	1.63	2	0.37
	남동구	1,738	2.80	3	0.20
	부평구	987	1.59	2	0.41
	계양구	604	0.97	1	0.03
	서구	1,733	2.79	3	0.21
	강화군	246	0.40	1	0.60
	옹진군	49	0.08	1	0.92
광주	소계	1,875	3.01	5	1.99
	동구	187	0.30	1	0.70
	서구	380	0.61	1	0.39
	남구	386	0.62	1	0.38
	북구	460	0.74	1	0.26
	광산구	462	0.74	1	0.26
대전	소계	3,713	5.97	8	2.03
	동구	349	0.56	1	0.44
	중구	366	0.59	1	0.41
	서구	1,542	2.48	3	0.52
	유성구	951	1.53	2	0.47
	대덕구	505	0.81	1	0.19
울산	소계	2,068	3.34	6	2.66
	중구	327	0.53	1	0.47
	남구	854	1.37	2	0.63
	동구	246	0.40	1	0.60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비례방식의 필요공무원 수(A)	단계적 배정방식의 필요공무원 수(B)	차이 인원 (B-A)
시·도	시·군·구				
울산	북구	258	0.42	1	0.58
	울주군	383	0.62	1	0.38
세종특별자치시		223	0.36	1	0.64
경기	소계	69,414	112.00	92	- 20.00
	수원시	3,957	6.37	4	-2.37
	성남시	12,889	20.75	10	-0.75
	의정부시	1,089	1.75	2	0.25
	안양시	4,253	6.85	5	-1.85
	부천시	2,437	3.92	4	0.08
	광명시	1,099	1.77	2	0.23
	평택시	1,550	2.50	3	0.50
	동두천시	247	0.40	1	0.60
	안산시	1,573	2.53	3	0.47
	고양시	7,003	11.27	6	-5.27
	과천시	658	1.06	2	0.94
	구리시	1,004	1.62	2	0.38
	남양주시	3,129	5.04	4	-1.04
	오산시	1,054	1.70	2	0.30
	시흥시	1,234	1.99	2	0.01
	군포시	1,064	1.71	2	0.29
	의왕시	1,433	2.31	3	0.69
	하남시	910	1.46	2	0.54
	용인시	11,371	18.30	9	-9.30
	파주시	1,660	2.67	3	0.33
이천시	1,274	2.05	3	0.95	
안성시	648	1.04	2	0.96	
김포시	1,060	1.71	2	0.29	

(계속)

시·도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비례방식의 필요공무원 수(A)	단계적 배정방식의 필요공무원 수(B)	차이 인원 (B-A)
	시·군·구				
경기	화성시	2,547	4.10	4	-0.10
	광주시	1,714	2.76	3	0.24
	양주시	508	0.82	1	0.18
	포천시	400	0.64	1	0.36
	여주군	682	1.10	2	0.90
	연천군	116	0.19	1	0.81
	가평군	318	0.51	1	0.49
	양평군	533	0.86	1	0.14
	소계	3,030	4.87	19	14.13
강원	춘천시	553	0.89	1	0.11
	원주시	770	1.24	2	0.76
	강릉시	452	0.73	1	0.27
	동해시	114	0.18	1	0.82
	태백시	61	0.10	1	0.90
	속초시	154	0.25	1	0.75
	삼척시	89	0.14	1	0.86
	홍천군	136	0.22	1	0.78
	횡성군	106	0.17	1	0.83
	영월군	58	0.09	1	0.91
	평창군	89	0.14	1	0.86
	정선군	60	0.10	1	0.90
	철원군	122	0.20	1	0.80
	화천군	51	0.08	1	0.92
	양구군	46	0.07	1	0.93
	인제군	63	0.10	1	0.90
	고성군	55	0.09	1	0.91
양양군	51	0.08	1	0.92	

(계속)

시·도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비례방식의 필요공무원 수(A)	단계적 배정방식의 필요공무원 수(B)	차이 인원 (B-A)
	시·군·구				
충북	소계	2,301	4.00	13	9.00
	청주시	1,017	1.64	2	0.36
	충주시	370	0.60	1	0.40
	제천시	151	0.24	1	0.76
	청원군	233	0.38	1	0.62
	보은군	30	0.05	1	0.95
	옥천군	45	0.07	1	0.93
	영동군	44	0.07	1	0.93
	진천군	97	0.16	1	0.84
	괴산군	62	0.10	1	0.90
	음성군	165	0.27	1	0.73
	단양군	34	0.05	1	0.95
	증평군	53	0.09	1	0.91
	충남	소계	4,691	8.00	18
천안시		1,499	2.41	3	0.59
공주시		231	0.37	1	0.63
보령시		171	0.28	1	0.72
아산시		723	1.16	2	0.84
서산시		403	0.65	1	0.35
논산시		135	0.22	1	0.78
계룡시		45	0.07	1	0.93
당진시		584	0.94	1	0.06
금산군		77	0.12	1	0.88
부여군		79	0.13	1	0.87
서천군		96	0.15	1	0.85
청양군		45	0.07	1	0.93
홍성군		125	0.20	1	0.80

(계속)

시·도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비례방식의 필요공무원 수(A)	단계적 배정방식의 필요공무원 수(B)	차이 인원 (B-A)
	시·군·구				
충남	예산군	324	0.52	1	0.48
	태안군	154	0.25	1	0.75
전북	소계	2,566	4.00	15	11.00
	전주시	1,131	1.82	2	0.18
	군산시	407	0.66	1	0.34
	익산시	373	0.60	1	0.40
	정읍시	84	0.14	1	0.86
	남원시	61	0.10	1	0.90
	김제시	112	0.18	1	0.82
	완주군	180	0.29	1	0.71
	진안군	35	0.06	1	0.94
	무주군	33	0.05	1	0.95
	장수군	24	0.04	1	0.96
	임실군	21	0.03	1	0.97
	순창군	21	0.03	1	0.97
	고창군	43	0.07	1	0.93
	부안군	41	0.07	1	0.93
	전남	소계	1,904	3.05	22
목포시		292	0.47	1	0.53
여수시		266	0.43	1	0.57
순천시		272	0.44	1	0.56
나주시		66	0.11	1	0.89
광양시		150	0.24	1	0.76
담양군		49	0.08	1	0.92
곡성군		55	0.09	1	0.91
구례군		27	0.04	1	0.96
고흥군		71	0.11	1	0.89
보성군		47	0.08	1	0.92
화순군	121	0.19	1	0.81	

(계속)

시·도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비례방식의 필요공무원 수(A)	단계적 배정방식의 필요공무원 수(B)	차이 인원 (B-A)
	시·군·구				
전남	장흥군	26	0.04	1	0.96
	강진군	25	0.04	1	0.96
	해남군	49	0.08	1	0.92
	영암군	48	0.08	1	0.92
	무안군	90	0.14	1	0.86
	함평군	27	0.04	1	0.96
	영광군	69	0.11	1	0.89
	장성군	48	0.08	1	0.92
	완도군	33	0.05	1	0.95
	진도군	21	0.03	1	0.97
	신안군	52	0.08	1	0.92
경북	소계	3,092	5.00	24	19.00
	포항시	1,001	1.61	2	0.39
	경주시	282	0.45	1	0.55
	김천시	130	0.21	1	0.79
	안동시	153	0.25	1	0.75
	구미시	389	0.63	1	0.37
	영주시	115	0.19	1	0.81
	영천시	109	0.18	1	0.82
	상주시	94	0.15	1	0.85
	문경시	69	0.11	1	0.89
	경산시	246	0.40	1	0.60
	군위군	22	0.04	1	0.96
	의성군	52	0.08	1	0.92
	청송군	24	0.04	1	0.96
	영양군	20	0.03	1	0.97
영덕군	24	0.04	1	0.96	

(계속)

시·도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비례방식의 필요공무원 수(A)	단계적 배정방식의 필요공무원 수(B)	차이 인원 (B-A)
	시·군·구				
경북	청도군	44	0.07	1	0.93
	고령군	31	0.05	1	0.95
	성주군	43	0.07	1	0.93
	칠곡군	112	0.18	1	0.82
	예천군	47	0.08	1	0.92
	봉화군	34	0.05	1	0.95
	울진군	30	0.05	1	0.95
	울릉군	21	0.03	1	0.97
경남	소계	4,805	8.00	21	13.00
	창원시	1,817	2.92	3	0.08
	진주시	353	0.57	1	0.43
	통영시	181	0.29	1	0.71
	사천시	121	0.19	1	0.81
	김해시	796	1.28	2	0.72
	밀양시	169	0.27	1	0.73
	거제시	308	0.50	1	0.50
	양산시	575	0.93	1	0.07
	의령군	32	0.05	1	0.95
	함안군	70	0.11	1	0.89
	창녕군	66	0.11	1	0.89
	고성군	74	0.12	1	0.88
	남해군	50	0.08	1	0.92
	하동군	53	0.09	1	0.91
	산청군	37	0.06	1	0.94
	함양군	27	0.04	1	0.96
	거창군	42	0.07	1	0.93
	합천군	34	0.05	1	0.95
	제주특별자치도		1,240	2.00	2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V.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 세수배분 방안

1. 기본방향
2. 향후 세수배분의 대안 모색
3. 배분방식 시뮬레이션을 통한 장·단점 분석



V.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 세수배분 방안

1. 기본방향

-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배분은 대상물건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물건소재지에 귀속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임
 -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걸쳐 흩어져 있는 대상물건에 대해 인별 합산하여 누진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소득계층 간의 응능원칙에 따른 수직적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조세의 성격이 강함
 -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종합부동산세의 대상물건의 소재지 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는 공공서비스의 대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여야 지방세로서의 의미를 지닐 것임
 - 지역공공재의 편익은 자본화(capitalization)되어 해당지역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누진적 성격의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물건이 속한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지방세인 재산과세로서 종합부동산세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일 것임
 - 이 때 복수의 물건들 간의 세수배분은 각 물건의 상대적 평가액에 따라 이루어져야 응능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방식은 구(舊) 종합토지세에 적용되었는데, 종합토지세 역시 시·군·구세이면서도 인별 전국합산방식을 사용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시행된 바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부동산교부세의 운용에 대한 논의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함
 -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교부세의 운용은 징세에 있어서 개인 간 응능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정부 간 재정관계에 있어서 지역 간 응능원칙에 따른 수평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지님
 -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걸쳐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인별로 누진구조로 징수하여 세원구조에서의 응능원칙에 의한 형평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임

- 현재까지 부과·징수는 국세청에서 담당하였으나 배분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력지수와 복지 및 교육 등과 같은 기준으로 지역 간 순재정편익(NFB: Net Fiscal Benefit)의 격차를 줄여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의 수평적 형평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음
 -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되면서 형평성의 차원이 하나 더 증가하여 지방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의 운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음
 - 기존의 개인 간 및 지역 간 응능원칙에 따른 형평성의 추구라는 정책목표에 더해 이제 지방세로서 종합부동산세는 응능원칙에 따른 형평성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평가기준을 논의에 추가하게 된 것임
 - 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역공공재에 대한 가격기능을 어느 정도 담보해야 하며, 이는 응능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추구한다고 표현됨
- 단기적으로 이러한 복잡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의 일정부분을 재산세의 비중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 세원구조에서의 응능원칙에 따른 형평성,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의 응능원칙에 따른 수평적 형평성, 그리고 지방세로서 응능원칙에 따른 형평성이 서로 얽혀 상호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대표적인 지방세목인 재산세로 취급하여 그 비중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편리성과 투명성 면에서 우월한 대안일 수 있음
 - 비록 전체 종합부동산세를 대상물건의 소재지별로 물건의 평가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합산한 분포가 재산세수의 지역별 분포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편리성과 투명성 면에서 우월할 대안으로 평가됨
 - 부동산교부세 전체를 재산세와 연동하는 것은 현재의 배분상황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현행 교부액 산정방식에서 재산세 부과액지수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배분비율을 조정하여야 함
- 이와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세수분포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방세로서 작동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교부세 중의 일부는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답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분할 수 있음

- 비록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되어 해당 지방공공재에 대한 배타적 지불수단이 될 수 없기는 하지만,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분포와 특성을 파악하여 지방세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가령 부동산교부세의 50%는 현행과 같이 지역 간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징수지 귀속분을 늘이거나 혹은 재산세 인상노력에 연동하여 배분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서 지방공공재의 가격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도 있을 것임

2. 향후 세수배분의 대안 모색

가. 세수배분의 현황 및 평가

-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부동산교부세액이 배분되고 있음
 - 2012년 기준 부동산교부세액은 총 1조 2427억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배분되고 있음
 - 특별자치시 및 시·군·자치구(이하 ‘자치단체’라 한다)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4개의 범주로 이루어진 기준에 따라 배분됨
 - 재 정 령(50%) : 해당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력지수
 - 복지수요(25%) : 해당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노령인구, 노인보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수
 - 교육수요(20%) :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교육현안수요, 영어체험교실운영, 초등방과후 영어체험교실운영, 실제 설치한 방과후 영어체험교실
 - 재산세부과실적(5%) :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 <표 V-1>은 시·군·구의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교부세액을 광역시·도별로 합제한 것으로 경북, 전남, 경기, 서울 순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2968억원으로 총교부세액의 24.3%를 배분받음

-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교부세의 차이인 순수취액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순수취액이 음수이고 수도권이 총 7531억원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음
 - 서울의 순수취액이 가장 적어 -6112억원이고 경기도가 -1395억이며 인천이 -24억원을 나타냄
 - 순수취액은 전남(1196억), 경북(1087억), 강원(830억), 전북(826억), 경남(794억), 충남(613억) 순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표 V-1> 부동산교부세액 시·도별 배분현황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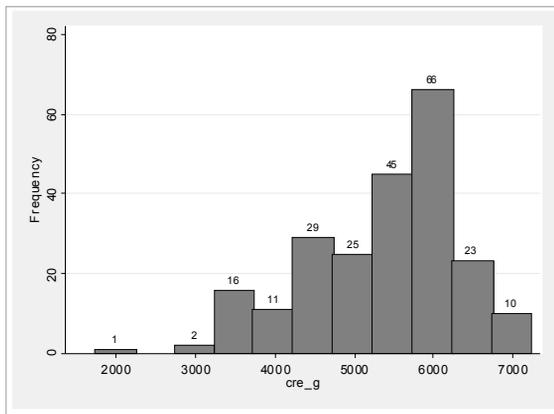
시군구 소계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교부세액 (백만원)	중부세 순수취액 (백만원)	귀속 비율 (%)	납세자 1인당납세액 (백만원)	지역인구 (명)	지역1인당 교부액 (원)
	납세자수 (명)	금액 (백만원)						
전국	273,955	1,242,705	1,242,705	-	-	4.5	50,948,272	24,391
서울	152,476	727,168	115,937	-611,231	0.16	4.8	10,195,318	11,372
부산	8,663	38,108	91,236	53,128	2.39	4.4	3,538,484	25,784
대구	4,115	11,931	49,856	37,926	4.18	2.9	2,505,644	19,898
인천	7,782	59,080	56,694	-2,386	0.96	7.6	2,843,981	19,935
광주	1,875	5,916	31,297	25,381	5.29	3.2	1,469,216	21,302
대전	3,714	17,016	25,731	8,715	1.51	4.6	1,524,583	16,877
울산	2,068	7,602	22,902	15,300	3.01	3.7	1,147,256	19,962
세종	223	568	5,388	4,820	9.49	2.5	113,117	47,629
경기	69,416	263,755	124,235	-139,520	0.47	3.8	12,093,299	10,273
강원	3,028	17,027	100,047	83,020	5.88	5.6	1,538,630	65,023
충북	2,301	8,249	65,540	57,291	7.95	3.6	1,565,628	41,862
충남	4,691	19,279	80,619	61,340	4.18	4.1	2,028,777	39,738
전북	2,566	6,693	89,265	82,571	13.34	2.6	1,873,341	47,650
전남	1,904	11,202	130,847	119,644	11.68	5.9	1,909,618	68,520
경북	3,089	25,873	134,632	108,759	5.20	8.4	2,698,353	49,894
경남	4,805	18,299	97,734	79,435	5.34	3.8	3,319,314	29,444
제주	1,240	4,940	20,745	15,805	4.20	4.0	583,713	35,540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 시·군·구 간의 부동산교부세액의 분포에서 평균값은 54억원이고 중위값은 56억원임
 - <그림 V-1>의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부동산교부세액이 62.5억이 넘는 자치단체가 33개이고 42.5억 이하가 30개임
 - 중위값이 평균값보다 높아 교부액이 상향 편중되는 경향을 보임

- 다시 말해, 비대칭성지수(skewness)값이 음수라는 것은 히스토그램상의 분포도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나타냄(<표 V-2> 참조)
- 평균 부동산교부세액은 53억 5947만원이며, 가장 많이 교부받는 곳은 71억 2338만원 이고 가장 적게 교부받는 곳은 19억 7246만원임(<표 V-2> 참조)
- 상위 10%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교부액은 63억 8370만원이고 하위 10%에 속하는 자치단체의 교부액은 31억 7440만원임

<그림 V-1> <표 V-2> 부동산교부세의 배분현황 (2012년)



(단위: 개, 백만원)

부동산교부세 배분 현황			
주요 분위수			
1 %	3,174		
5 %	3,447		
10 %	3,928		
25 %	4,704		
50 %	5,582	지자체수	228
75 %	6,039	평균	5,359
90 %	6,383	표준편차	950
95 %	6,617	분산	902,595
99 %	6,967	비대칭성	-0.7376

주: 좌측 그림에서 가로축은 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수를 나타냄

○ 부동산 교부세액의 시·군·구 간 격차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합계에서의 격차만큼 크게 나타남

- <표 V-3>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228개 시·군·구의 부동산교부세액의 설명통계 값을 보여주고 있음
- 2012년을 기준으로 부동산교부세액은 과천시, 김포시, 서울 종로구가 가장 낮은 지자체이며 김제시, 광주 북구, 정읍시 등이 가장 높은 지자체임
- 지역주민 1인당 부동산교부세액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가 가장 낮은 지자체이며 경북 울릉군, 경북 영양군, 전북 장수군이 가장 높은 지자체임
- 경기도 성남시는 지역주민 1인당 약 3583원의 부동산교부세를 취득한 반면에, 경북 울릉군은 지역주민 1인당 46만 1627원을 교부받음

- 수도권외의 자치단체의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1인당 부동산교부세액의 차이는 전체 교부세액의 차이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임

○ 부동산교부세의 순수취액과 징수지 귀속률에서도 기초지자체 간 큰 격차를 나타냄

- <표 V-3>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교부세의 차이인 순수취액의 최소값은 -1802억원이고 최대값은 68억원임
 - 서울시 강남구, 중구, 서초구, 종로구, 경기 성남시가 순수취액에서 가장 낮은 지자체이며 전북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대구 남구, 경북 영양군이 순수취액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 군에 속함
 - 종합부동산세에서 서울시 강남구, 중구, 서초구, 종로구, 경기 성남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정도로 이들 자치단체의 순수취액이 가정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징수지 귀속률(종합부동산세액과 부동산교부세액 간의 비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지 귀속률이 작게는 0.02에서 많게는 150.63을 나타냄
 - 서울시 중구, 강남구, 서초구 등이 징수지 귀속률이 가장 낮고 전남 진도군, 경북 봉화군, 전남 강진군이 가장 높은 지자체에 속함
 - 순수취액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중구, 강남구, 서초구가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및 징수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 종합부동산세액과 부동산교부액 간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임

<표 V-3> 부동산교부세액의 시·군·구 배분현황 설명통계 (2012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납세자수(명)	228	1,196	3,647	17	38,299
총부세액(백만원)	228	5,429	18,333	41	186,088
납세자1인당 총부세액(천원)	228	4,968	5,618	1,248	67,490
주민1인당 총부세액(천원)	228	20	83	1	1,130
부동산교부세(백만원)	228	5,359	950	1,972	7,123
납세자1인당 부동산교부세(천원)	228	57,407	74,186	140	387,366
주민1인당 부동산교부세(천원)	228	67	71	4	462
순수취액(백만원)	228	-69	18,596	-180,187	6,785
징수지 귀속률(%)	228	18	27	0	151

- 현행 세수배분방식에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배분 구조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 <표 V-4>에서 부동산교부세로 배분되는 교부액은 재정력역지수와 강한 양의 상관계수를 가지므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가 더 큰 규모의 교부액을 수령함
 -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음
 - 부동산교부세 교부액과 재정자립도는 강한 음의 상관계수를 가지므로 이 두 변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음
 -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지역인구나 1인당 자체수입액과는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음
 - 주민 1인당 부동산교부세 교부액도 총액과 유사하게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많이 배분되는 경향이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적어지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주민 1인당 교부액은 1인당 자체수입액이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고 지역인구가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주민 1인당 교부액과 1인당 자체수입액의 상관계수는 0.52로서 교부액 총액과 자체수입 총액도 동일한 값을 가짐
 - 지역인구가 증가하면서 1인당 교부액이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인구 증가폭에 비해 교부액의 증가폭이 작아 주민 1인당 교부액이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임

<표 V-4>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2012년)

	총부세액 (A)	부동산 교부세 (B)	주민1인당 부동산교부세 (C)	순수취율 (D)	징수지 귀속율 (E)	재정력 역지수 (F)	재정 자립도 (G)	1인당 자체수입액 (H)	지역인구 (I)	재산세액 (J)
A	1.0000									
B	-0.2531	1.0000								
C	-0.2127	0.3556	1.0000							
D	-0.9988	0.3006	0.2278	1.0000						
E	-0.1823	0.3907	0.6627	0.1997	1.0000					
F	-0.4845	0.7333	0.6711	0.5151	0.5682	1.0000				
G	0.5833	-0.7521	-0.6224	-0.6135	-0.5344	-0.9405	1.0000			
H	0.0527	-0.2455	0.5233	-0.0645	0.2842	0.1364	-0.0228	1.0000		
I	0.3095	-0.2212	-0.6265	-0.3164	-0.4753	-0.7464	0.6482	-0.4083	1.0000	
J	0.7971	-0.3593	-0.4480	-0.8041	-0.3630	-0.7524	0.7848	-0.1314	0.7087	1.0000

나. 현행 배분비율의 합리적 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특정 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통해 부동산교부세를 산정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일 것임
 -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방식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복지, 교육, 재산세액 등과 같이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음
 - 현행 배분제도는 자치단체의 평균재정력,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예산 비율, 노령인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 장애인수, 노인요양시설 정원, 초등방과후 영어체험교실 설치지원 학교수, 초등방과후 보육지원 학급수, 재산세 부과액 등과 같이 다양한 지수들을 산출하여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적으로 배분비율을 결정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는 수도권에 특정 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어 부동산교부세의 지역 간 재정조정기능 수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2012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규모에서 상위 18개 자치단체(서울시 강남구, 중구, 서초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용인시, 송파구,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강서구, 경기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안양시, 인천 남동구, 연수구)가 전체 종합부동산세의 68.4%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자치단체의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과 재정압박 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방식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산정방식에서 교육수요 반영분이 20%이고 복지수요 반영분이 25%인데 감소하는 학생수를 반영하여 복지수요 반영분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 자치단체의 주된 세원으로서 재산세를 강화하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도 부동산교부세 배분방식을 설계할 수도 있을 것임
 - 우리나라는 GDP나 세입에서 차지하는 재산세의 비중에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향후 재산세의 인상여력이 충분함(Norregaard, 2013)
 - 그러나 재산세 인상은 어느 조세보다도 더 큰 조세저항에 직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추가적인 유인(incentive)이 없이는 자치단체의 재산세 확충 노력을 유도할 수 없어 보임

- 만약 부동산교부세 배분방식에서 현행 재산세부과액에 주어진 가중치를 5%에서 10%나 20% 등으로 증가시킨다면 재산세 확충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다. 징수지 귀속방식과 현행 배분방식의 혼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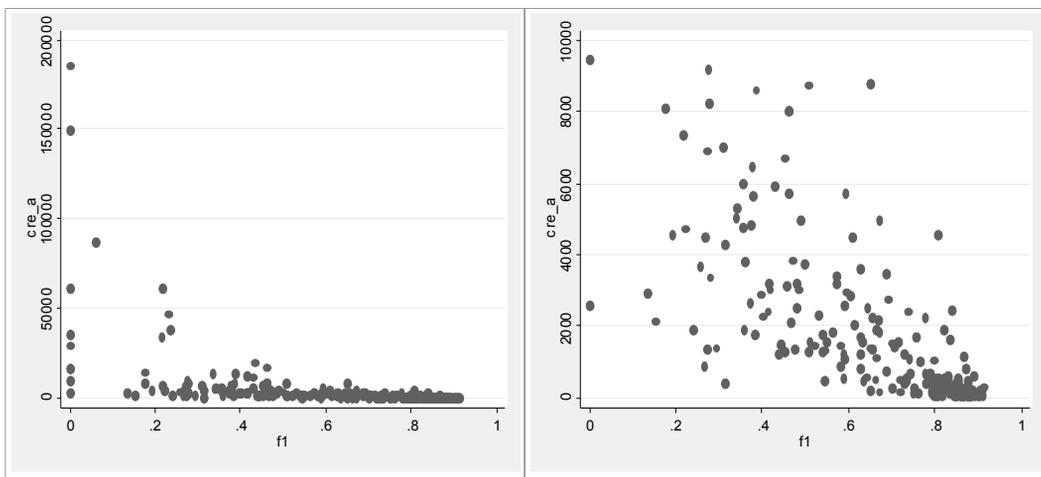
- 부동산교부세액의 일정부분은 현행 배분방식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는 징수지에 귀속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함
 - 만약 지역의 상대적 자산가치와 부동산교부세 세수규모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면 부동산교부세액은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지로 귀속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그 지역의 자산가치에 반영되어 자본화되는 지역공공재를 함께 소비하고 있으므로, 응익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보다 형평성이 높은 배분방식이 될 것임
 - 즉, 높은 수준의 자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에 비례하여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지역공공재의 소비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자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임
 - 아울러 2012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율은 82.8%로 재산세 평균인 96.4%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므로 징수지 귀속방식은 종합부동산세 징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얼마정도의 공공재를 소비하는가는 측정하기 불가능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재정력이 높은 지역에 편중되어 있을 공산이 크므로 징수지 귀속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임
 - 따라서 전체 부동산교부세액의 일정부분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를 징수지에 귀속하는 방식을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임

1) 징수지 세수규모와 자치단체 재정력 간의 관계

-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좋을수록 종합부동산세 세수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예외점(outlier)에 의한 왜곡에도 주의해야 함

- <그림 V-2>의 왼쪽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인 평균 재정력역지수¹⁵⁾가 작은 자치단체의 종합부동산세 세수입은 급격히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재정력역지수의 값이 0인 8개의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입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이들 자치단체는 동일하게 재정력역지수의 값이 0이지만 종합부동산세의 최저 세수 규모는 26억 정도이고 최대 규모는 1860억으로 격차가 매우 큼
- 또한 종합부동산세수가 100억 이상인 18개 자치단체를 예외점(outlier)으로 제외시키고 나머지 210개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분포를 살펴보면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
 - <그림 V-2>의 오른쪽 산포도는 종합부동산세수가 100억원 이상인 18개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단체들만 대상으로 재정력과 세수분포를 살펴본 것임
 - 예외점을 제외하고 보면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종합부동산세의 세수규모의 상관계수는 -0.70정도로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V-2>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종합부동산세 세수분포 I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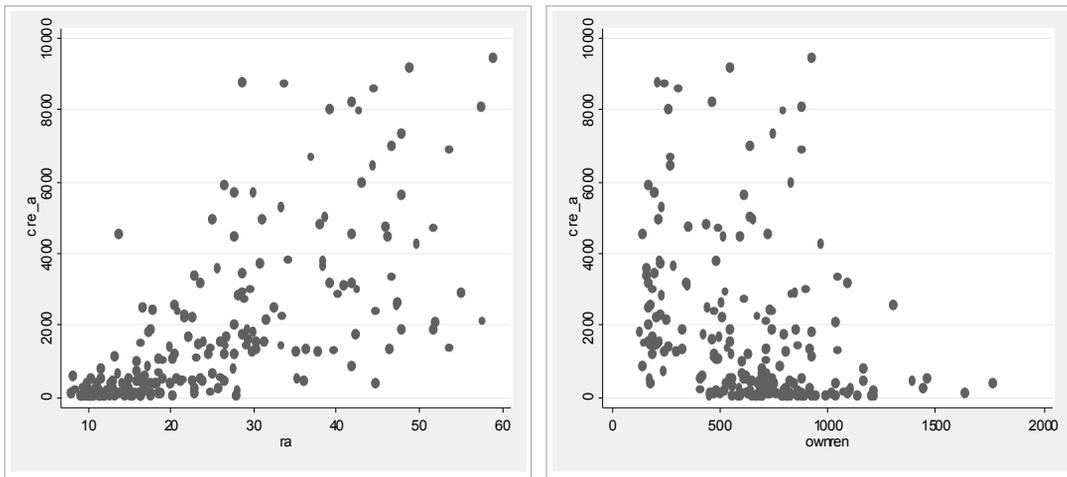


주: 세로축(cre_a)은 종합부동산세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가로축(f1)은 평균 재정력역지수를 나타냄

15)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재정력역지수는 “1-재정력 지수”를 가리킴

- 다른 종류의 재정력 지표와 종합부동산세 세수규모 간의 상관관계는 지수에 따라 상관관계의 강도가 달라짐
 - <그림 V-3>의 왼쪽 산포도는 재정자립도를 가로축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수규모를 세로축으로 하여 나타낸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종합부동산세 세수규모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재정자립도와 종합부동산세 세수규모의 전체적인 상관계수의 값은 0.583임
 - 오른쪽 그림은 재정자립도 대신에 1인당 자체수입액을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살펴본 것인데, 재정자립도와 달리 두 변수 간에 일정한 상관관계는 찾아보기 어려움
 - 1인당 자체수입액과 종합부동산세 세수규모의 전반적인 상관계수의 값은 0.05로 거의 0에 가까움
 -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력의 측정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수규모와의 상관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재정력이 높은 지역이 종합부동산세 세수규모에서도 높은 개연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음

<그림 V-3>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종합부동산세 세수분포 II (2012년)



주: 세로축(cre_a)은 종합부동산세 세수규모를 나타내고, 가로축은 재정자립도와 1인당 자체수입액

2) 징수지 세수규모의 결정요인

- 자치단체의 재정력 이외에 징수지 세수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상대적 자산 가치와 인구수를 고려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들은 고소득층일 확률이 높으므로 자산가치가 높은 지역에 거주할 개연성이 높고 인구수에 따라 납부자 수와 납세액의 규모도 증가할 수 있음
 - 다중회귀분석에 사용할 상대적 자산가치지수로 지역주민 1인당 재산세액을 사용할 것임
 - 일반적으로 자산의 평가가치에 따라 재산세액이 결정되고 인구밀집도를 감안한 주민 1인당 재산세액은 다른 지역에 대비한 해당지역의 상대적 자산가치로 볼 수 있음

- 징수지 세수규모는 지역의 재정력이 높을수록 자산가치가 높을수록 대도시일 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표 V-5>는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자산가치 그리고 인구규모를 통해 징수지 세수규모의 편차를 설명해주고 있음
 - 모형 1과 2는 재정력역지수를 사용하였고, 모형 3과 4는 재정자립도를 사용하였고, 모형 5와 6에서는 재정력의 대리변수로 1인당 자체수입액을 사용하여 최소자승법(OLS)에 의해 추정하였음
 - 모형의 설정에 상관없이 지역의 자산가치가 높을수록 징수지 세수규모는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주민 1인당 재산세액으로 측정된 자산가치가 1% 증가할 때 징수지 세수규모는 모형에 따라 0.5%~2%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모형에 상관없이 인구수가 많을수록 징수지 세수규모도 커짐을 알 수 있음
 - 인구수가 1% 증가할 때 해당지역의 종합부동산세 세수규모도 이와 비슷한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재정자립도와 1인당자체수입액으로 나타낸 자치단체 재정력은 모형의 설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재정자립도와 1인당자체수입액은 지역인구와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모형4와 모형6의 추정치는 편향(biased)될 수 있음

-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측정하는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다중공선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었음
 - 그러나 보다 정밀한 추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관측치가 필요하므로 다년도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분석도 이와 더불어 수행하였음
- 5개년 간의 패널데이터 분석에서도 주민 1인당 자산가치가 높은 지역이 종합부동산세 규모도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부록 3〉 참조)
- 2008년~2012년 동안 228개 자치단체의 종합부동산세 세수규모, 주민 1인당 재산세액, 재정자립도, 1인당 자체수입액, 인구수를 이용한 징수지 세수규모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음(〈부록 3〉 참조)
 - 즉, 인구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1인당 재산세액으로 평가된 자산가치가 높은 지역일수록 종합부동산세 세수규모도 증가함(〈부록 3〉 참조)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두 집단 간에 이러한 결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부록 3〉 참조)
 - 위와 같은 내용은 18개의 예외치들을 제외한 후에 수행한 계량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¹⁶⁾(〈부록 3〉 참조)
 - 추정은 패널데이터에 최소자승법(OLS)과 일반화적률법(GMM)을 적용하여 실시하였음

16) 18개의 예외치는 서울 강남구, 중구, 서초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송파구,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강서구, 경기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안양시, 인천 연수구, 남동구를 가리킴

<표 V-5> 징수지 세수규모의 결정요인 분석 (2012년도)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재정력역지수	-1.8269 *** (0.2350)	-0.3319 (0.2099)				
1인당재산세액	0.9206 *** (0.1725)	0.9383 *** (0.1302)	0.5314 *** (0.1988)	1.0530 *** (0.1684)	1.9704 *** (0.1307)	1.1944 *** (0.1390)
지역인구		0.9546 *** (0.0801)		0.9556 *** (0.0932)		0.9959 *** (0.0707)
재정자립도			2.0348 *** (0.1871)	0.2449 (0.2139)		
1인당자체수입액					-1.0289 *** (0.1011)	-0.0565 (0.0993)
상수항	1.6184 ** (0.7120)	-8.9109 *** (1.0582)	-1.9315 *** (0.5583)	-10.0134 *** (0.9235)	4.2483 *** (0.9745)	-10.0202 *** (1.0891)
관측치수	220	220	228	228	228	228
결정계수	0.6317	0.8083	0.6968	0.8216	0.6646	0.8206

주: 모든 변수는 로그가 적용되었음. 괄호안의 통계량은 표준편차를 가리킴

***는 1% 유의수준에서, **는 5% 유의수준에서, 그리고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나타냄

3) 응능원칙에 따른 형평성과 응익원칙에 따른 형평성의 조화

○ 자산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자치단체의 징수액이 높으므로 징수지 귀속분을 증가시키는 것이 응익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거주지에 상관없이 인별 합산하여 부동산에 대해 초과로 누진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전국 차원에서의 응능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응익원칙에 따른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평가기준이 생기게 되었음

- 응능원칙에 따른 형평성은 공공재 소비량과 상관없이 납세자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액이 높아질 때 확보되는 것임
- 지방세로서 종합부동산세의 가격기능이 작동하려면 응익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때에만 일정부분 가능할 수 있음

- 위의 통계분석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자산가치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며 납부할 개연성이 높음을 보여주었음
- 그러므로 지방세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해당지역의 높은 자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재 소비의 대가로 해당지역에 종합부동산세를 지급하여야 응원원칙에 따른 형평성이 일정부분 확보됨
- 이와 동시에 징수지 귀속방식은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높이게 되므로 지역 간 응원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저해함
 - 위의 회귀분석은 재정력이 높은 지역의 종합부동산세 세수규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므로, 응원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려고 징수지에서 공공재 공급의 대가로 모든 세수를 가져가는 것은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높이게 되며 이는 지역 간 응원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저해함
 - 따라서 징수지 귀속방식과 재정력격차 및 재정수요를 반영한 현행 방식 간의 혼합방식이 또 하나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3. 배분방식 시뮬레이션을 통한 장·단점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부동산교부세액이 배분공식에 의해 배분되고 있음
 - 재정력(50%), 복지수요(25%), 교육수요(20%), 재산세부과실적(5%)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음
- 본 절에서는 우선 배분공식에 사용되는 4개의 항목(재정력, 복지수요, 교육수요, 재산세부과실적)이 각기 최종적인 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임
 - 여러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겠으나 부동산교부세의 배분이 자치단체들 간의 재정력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임
 - 부동산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응원원칙에 따른 수평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즉, 유사한 지역공공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격차를 줄이는 방향이 수평적 형평성을 높이므로,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에서 재정력역지수의 가중치가 50%에 이르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4개의 평가항목 각각이 배분된 교부세 분포와 재정력역지수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살펴보고자함
 - 한 번에 하나의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1로 놓고 나머지는 제외한 채 산정한 시뮬레이션 배분결과가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갖는 상관관계를 분석할 것임
 - 이를 통해 향후 4개 항목에 주어진 현행 가중치를 조정했을 때의 부동산교부세의 지역 간 형평화 기능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임
- 다음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4개의 평가항목 중 교육수요의 비중을 줄이고 재산세부과실적의 비중을 높일 때의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¹⁷⁾
- 교육재정의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에서 주로 재정학적 접근을 하는 연구들은 감소하는 학생수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재정규모는 줄어들어야 한다는 입장임 (임성일·손희준, 2011 ; 안종석, 2012)
 - 이에 반해 교육학적 접근법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주로 환경변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음(나민주, 2012 ; 윤희주, 2012)
 - 만약 교육재정과 관련된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것보다 재산세부과실적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정책목표가 현실적으로 우선시 되는 상황이라면, 교육수요의 비중은 낮추고 재산세부과실적의 비중은 높이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아울러 부동산교부세수의 일부에 대해 적용되는 징수지 귀속방식의 효과도 함께 분석하고자 함

17)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된 이후에 부동산교부세를 배분할 때, 재산세부과실적의 비중이 높아 지더라도 이것은 재산세 자체의 변화가 아니므로 현행과 같이 일반교부세의 변화는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음을 밝혀둠

- 지방세로서 종합부동산세가 지역공공재 소비에 있어서 응익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징수비용 보전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분 이외에 추가로 세수의 일정부분을 징수지에 귀속시키는 방식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앞 절과 <부록 3>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징수지 귀속분을 추가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응익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수의 3%와 10%를 징수지에 귀속시키는 방안이 부동산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아울러 이러한 부동산교부세의 배분분포의 변화가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도 살펴보고자 함
- 징수지 귀속방식은 종합부동산세의 응익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 이외에 징수인센티브를 제고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동반할 것으로 기대됨
 - 2012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율은 82.8%로 재산세 평균인 96.4%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므로, 징수지 귀속방식은 종합부동산세 징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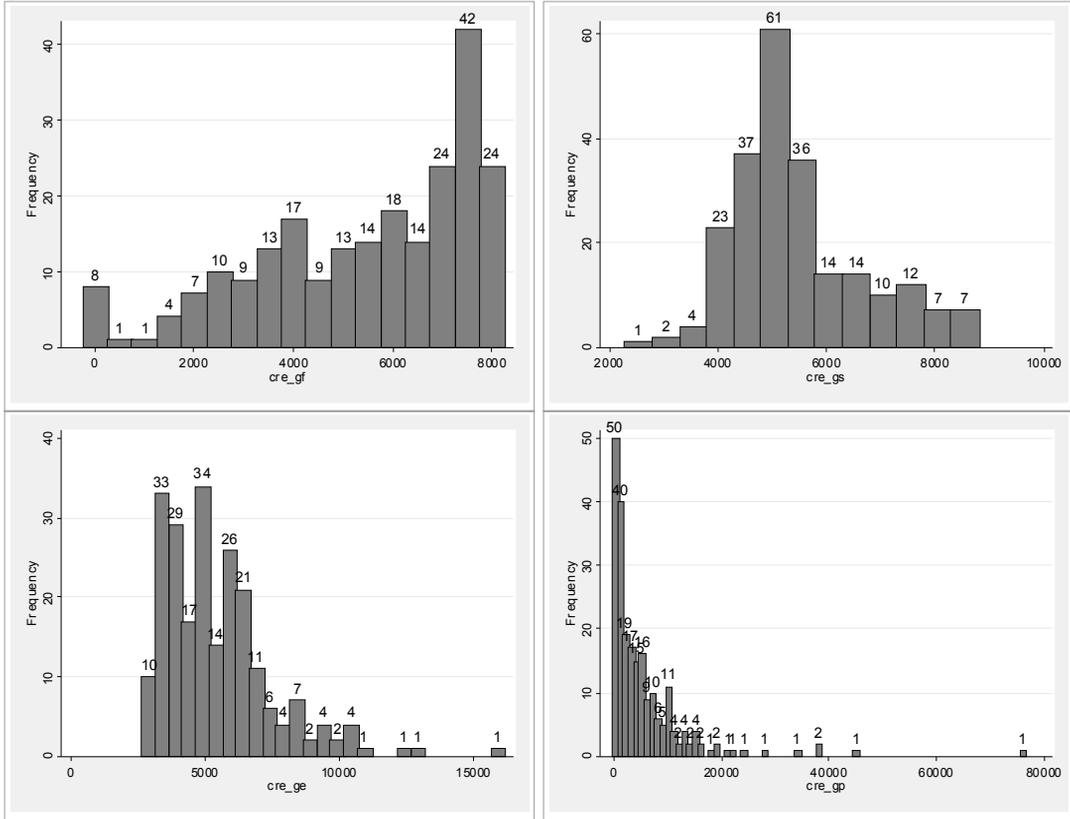
가. 현행 교부액 산정요인별 배분효과

- 우선 현행 배분공식에 사용되는 4개의 항목(재정력, 복지수요, 교육수요, 재산세부과실적)별로 배타적으로 부동산교부세를 배분했을 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재정여건을 측정하는 재정력역지수만을 기준으로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했을 때의 교부세액(cre_gf)의 분포는 <그림 V-4>의 좌측상단과 같음
 - 분포상의 최소값은 0원이고 최대값은 81억원이며, 평균 약55억의 교부세를 수령하였고 표준편차는 약 22억으로 나타났음
 - 교부세 규모의 분포는 규모가 큰 우측으로 편중되어 있음
 - 경북 봉화군, 경북 영양군, 경북 의성군, 전남 곡성군, 전남 신안군 등이 교부세액 규모가 가장 큰 집단에 속하는 반면 재정력이 좋은 서울 강남구, 중구, 경기 고양시, 과천시, 성남시 등의 교부액은 전무하였음
 - 사회복지비지수, 노령인구지수, 노인보호지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수, 장애인

지수들로 이루어진 복지수요만을 기준으로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했을 때의 교부세액(cre_gs)의 분포는 <그림 V-4>의 우측상단과 같음

- 분포상의 최소·최대값은 각각 25억과 87억이며 표준편차는 12억으로 나타났음
 - 광주 북구,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인천 부평구 등의 교부세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경기 과천시, 경남 거제시,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충남 계룡시의 교부세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음
- 지역교육 현안수요지수, 초등방과후 영어체험교실운영지수, 초등방과후 보육·교육지원지수, 전년도 실제 설치·운영한 초등방과후 보육·교육 학급수로 이루어진 교육수요만을 기준으로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했을 때의 교부세액(cre_ge)의 분포도는 <그림 V-4>의 좌측하단과 같음
- 분포상의 최소·최대값은 각각 29억원과 158억으로 표준편차는 20억원이며, 예외적으로 교부세가 큰 자치단체가 생겨나게 되고 분포가 좌측으로 편향되어 있음
 - 경기 고양시, 수원시, 경남 창원시, 전북 익산시, 전주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세를 배분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충남 계룡시, 경기 과천시, 하남시, 구리시, 부산 수영구 등은 상대적으로 교부세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재산세 부과액지수만을 기준으로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했을 때의 교부세액(cre_gp)의 분포도는 <그림 V-4>의 우측하단과 같음
- 분포상의 최소·최대값은 각각 0.6억원과 760억으로 표준편차가 82억원 정도로 다른 어떤 기준보다 지역 간의 배분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재산세부과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 성남시, 용인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의 자치단체의 교부세 수령액은 300억원이 넘어서는 반면 경북 울릉군, 영양군, 전북 장수군, 강원 양구군, 화천군 등의 교부세 교부액은 30억원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지역 간 배분액의 격차가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됨

<그림 V-4> 배분기준별 교부세 배분결과의 도수분포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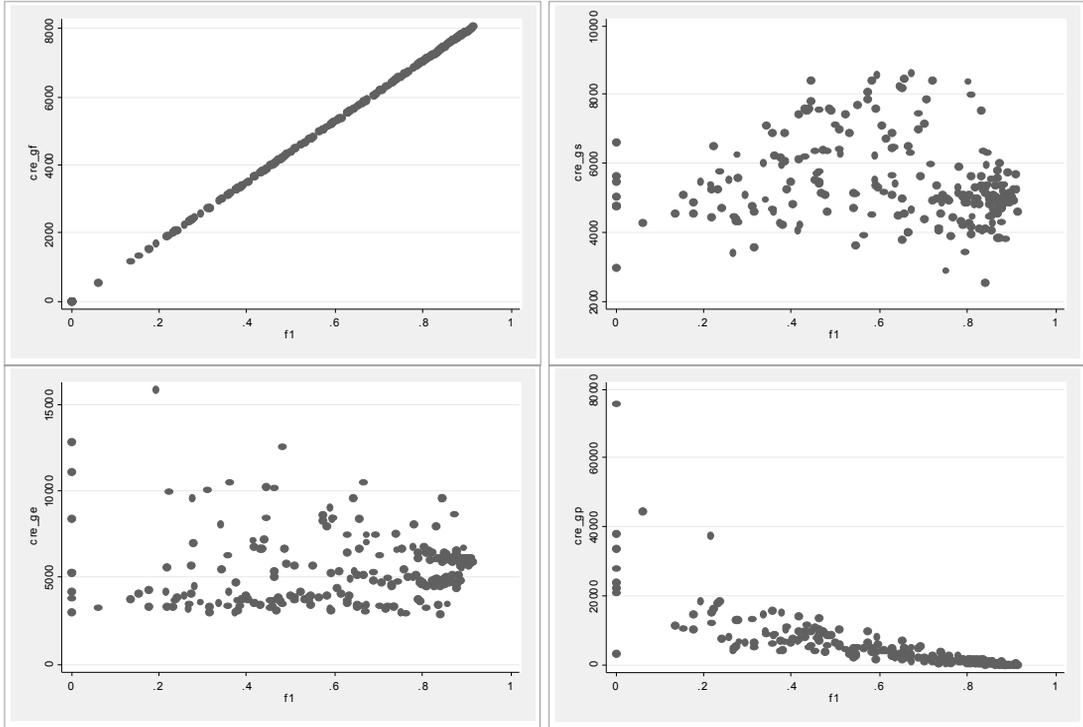


주: 세로축은 각 구간별 도수의 수(frequency)를 나타내고, 가로축은 각 배분기준에 따라 배타적으로 교부세를 교부했을 때의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액을 나타냄

- 재정수요와 재산세부과실적을 기준으로 부동산교부세를 배분했을 때의 교부세의 분포는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상관성이 매우 높음
 - 재정력역지수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을 산정하면 당연히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가 더 많은 교부세를 교부받을 것임(<그림 V-5>의 좌측상단 그림)
 - 만약 재산세부과액지수만으로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을 산정하면 <그림 V-5>의 우측하단 그림에서와 같이 재정력이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액을 수령하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는 반대로 교부액의 상대적 규모가 크게 작아짐을 알 수 있음

- 재정력역지수와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간의 상관계수 값은 -0.756 으로 재정력이 약할 수록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액이 줄어들을 의미함
- 복지수요와 교육수요를 기준으로 부동산교부세를 배분했을 때의 교부세의 분포는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상관성이 크지 않음
- 〈그림 V-5〉의 우측상단은 복지수요만을 고려하여 교부액을 산정했을 때의 교부세액과 재정력역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눈에 띄는 상관관계는 찾아보기 힘들
 - 두 변수의 상관계수는 -0.11 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비지출이나 노령인구수와 같은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그림 V-5〉의 좌측하단은 교육수요만을 고려하여 교부액을 산정했을 때의 교부세액과 재정력역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복지수요의 경우와 유사하게 눈에 띄는 상관관계는 찾아보기 힘들
 -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0.01 로 상대적으로 낮음
 - 따라서 복지수요와 교육수요를 산정방식에 반영한다는 것은 교부세 배분에서 지역 간 재정력과는 무관하게 배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재산세부과실적을 통해 교부세를 배분한다는 것은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그림 V-5> 배분기준별 교부세 배분액과 재정력역지수와의 관계



주: 가로축(f1)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역지수를 가리키고, 세로축은 각 배분기준에 따라 배타적으로 교부세를 배분했을 때의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액을 가리킴

○ 복지수요나 재산세부과실적을 기준으로 부동산교부세를 배분했을 경우 재정력에서 취약한 자치단체는 현행 산정방식보다 더 적은 교부세를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됨

- <그림 V-6>의 우측상단은 복지수요만을 고려하여 교부액을 산정했을 때의 교부세액과 현행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된 교부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재정력이 취약할수록 현재보다 더 적은 교부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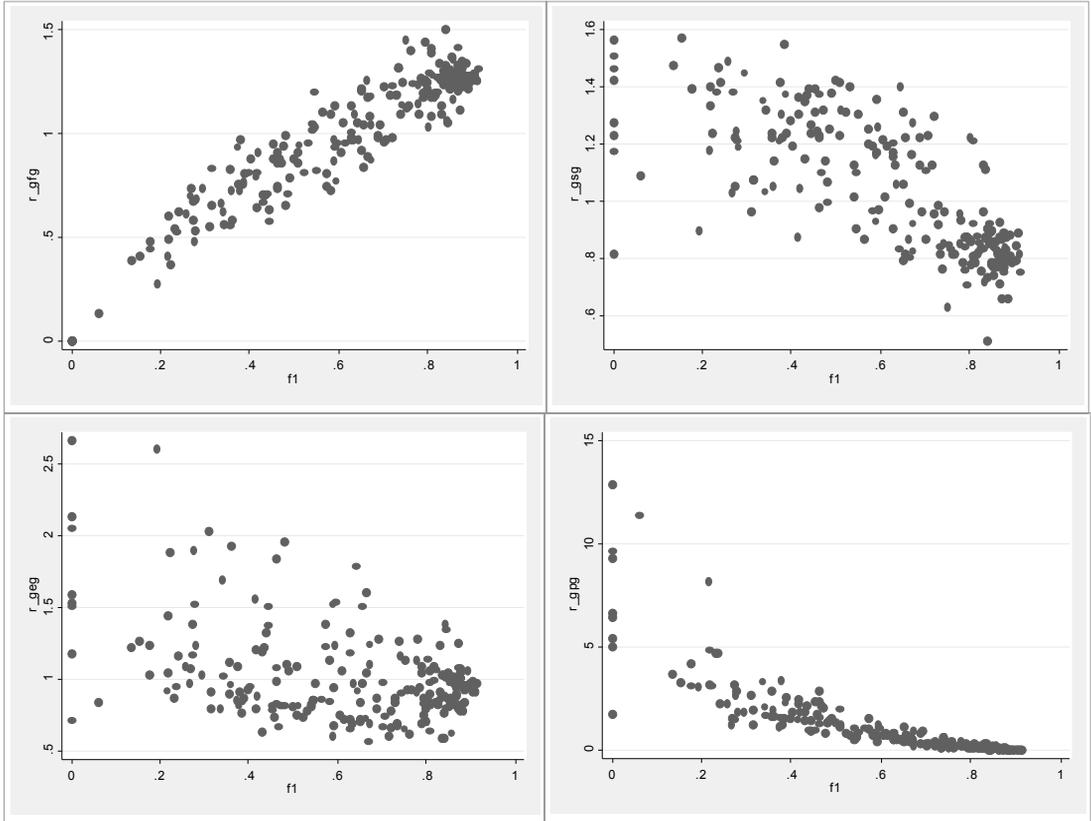
- 재정력역지수가 높아질수록 새로운 산정방식의 결과를 현재의 교부액으로 나눈 비율이 1보다 작아진다는 것은 현재의 교부액보다 더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 재정력역지수를 기준으로 228개 자치단체의 평균(0.6143)보다 높은 자치단체의 수는 130개인데, 이 중 복지수요만을 고려하여 교부액을 산정하면 109개의 자치단체는 현행보다 적은 금액을 교부받고 21개의 자치단체만이 현행보다 많은 교부세를 수령하게 됨

- <그림 V-6>의 우측하단은 재산세부과실적만을 고려했을 때의 교부세액과 현행 교부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재정력이 떨어질수록 현재보다 교부세의 규모가 줄어들음을 알 수 있음
 - 평균 재정력역지수보다 높은 자치단체 130개 중에서 재산세부과액을 기준으로 교부액을 산정하면 1곳을 제외한 129개의 자치단체가 현재보다 교부세를 적게 교부받아 지역 간 재정력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교육수요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배분했을 때, 지역 간 재정력 차이가 교부액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음

- <그림 V-6>의 좌측하단은 교육수요만을 고려했을 때의 교부세액과 현행 교부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재정력이 떨어질수록 현재보다 교부세의 규모가 줄어드는 자치단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평균 재정력역지수보다 높은 자치단체 130개 중에서 교육수요를 기준으로 교부액을 산정했을 때, 92곳의 자치단체는 현행 교부세보다 줄어드는데 반해 38개의 자치단체의 교부세는 증가함
- 그러나 재정력역지수가 평균보다 낮은 98개의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50곳은 현행 교부세보다 증가하지만 나머지 48곳은 현행 교부세보다 적은 금액을 교부받게 되어 재정력과 교부액 간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음
- 따라서 전반적으로 교육수요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을 산정할 경우, 재정력이 낮을수록 부동산교부세의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이 더 강하지만 재정력이 높다는 것이 반대로 부동산교부세의 규모를 높여주지는 않음
- 끝으로, <그림 V-6>의 좌측상단은 재정력역지수만을 고려하여 부동산교부세를 배분했을 때의 교부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재정력이 약한 지역일수록 현행보다 더 많은 교부세를 교부받을 것임은 자명할 것임
 - 평균 재정력역지수보다 높은 자치단체 130개 중에서 재정력역지수만을 기준으로 교부액을 산정했을 때, 117곳의 교부세는 증가했으나 13곳의 자치단체는 현행보다 더 적은 교부세를 배분받음

<그림 V-6> 배분기준별 교부세 배분액과 현행 배분액의 비교



주: 가로축(f1)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역지수를 가리키고 세로축은 각 배분기준에 따라 배타적으로 교부세를 배분했을 때의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액을 현행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했을 때의 교부액으로 나눈 값이므로, 1보다 큰 자치단체는 현행보다 더 많은 교부세를 수령하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작은 수는 현행 방식에서보다 더 적은 교부세를 교부받음을 의미함

- 요컨대, 현행 산정방식의 4가지 평가항목 중에서 복지수요항목이나 재산세 부과액의 가중치가 높아지면 자치단체들 간 수평적 형평성은 현행보다 악화됨
- 최근 들어 증가하는 복지지출로 인해 가중되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배분에서 복지수요항목의 가중치를 높임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한다면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복지재정의 지출요인이 많은 자치단체가 반드시 기본적인 재정력이 취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복지수요에 부여된 가중치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완화해주리라 기대할 수 없는 것임

- 지방세로서 종합부동산세의 가격기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자 교부액 산정방식에서 재산세부과액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 역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 따라서 산정방식의 평가항목 간 가중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도하는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재정형평화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정책목표들 간에 확실한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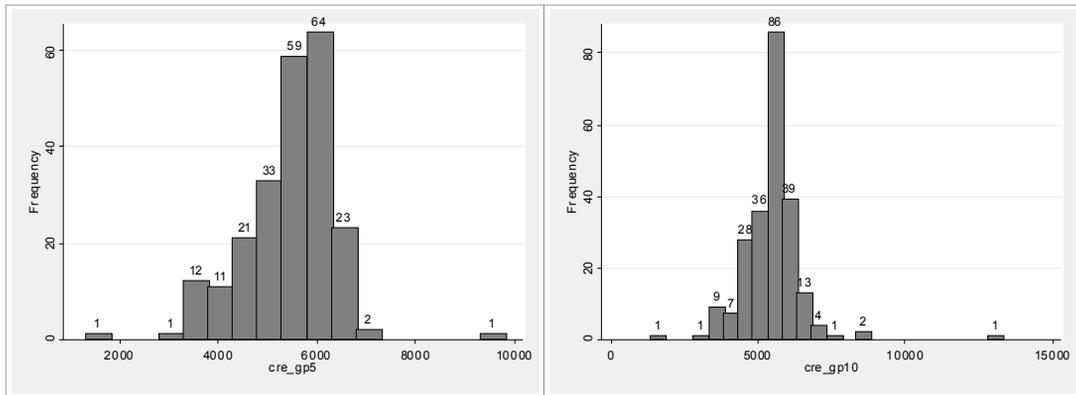
나. 교육수요와 재산세부과액지수 간 비중조정의 결과

- 한 가지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4개의 평가항목 중 교육수요의 비중을 줄이고 재산세부과실적의 비중을 높일 때의 교부액 분포를 분석하고자 함
 - 만약 취학계층의 축소와 같은 교육재정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재산세부과실적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정책목표가 현실적으로 우선시 되는 상황이라면 교육수요의 비중을 줄이고 재산세부과실적의 비중을 높이는 상황을 설정해 볼 수 있음
 - 현행 산정방식에서 교육수요는 총 20%의 가중치를 부여받고 있으며 재산세부과액지수는 5%의 가중치로 계산되고 있음
 - 교육수요에 대한 가중치를 20%에서 15%로 줄이고 재산세부과액지수의 가중치를 5%에서 10%로, 5%p씩 조정하는 대안과 10%p씩 조정하는 대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함
- 교육수요비중의 축소와 재산세부과실적비중의 확대는 몇 개의 예외치를 제외하면 자치단체들 간의 교부액 격차는 줄어들거나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림 V-7>의 좌측그림은 5%p 조정 시의 교부액 분포의 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행 산정방식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 V-1>보다 최대값은 증가하였으나 표준편차는 오히려 줄어들었음

- 현행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액 분포의 최소·최대 값은 각각 19.7억과 71.2억이며 표준편차는 9.5억 정도이나, 5% 조정 시의 교부액 분포의 최소·최대 값은 각각 15.5억과 94.3억원이며 표준편차는 8.9억임
 - 서울 강남구가 현행방식으로 59억원을 교부받던 것이 5%조정 시 최대값인 94.3억원을 교부받는 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자치단체들 간의 교부액의 분산과 표준편차는 줄어드는 것이 특징임
- <그림 V-7>의 우측그림은 10%p 조정 시의 교부액 도수분포표를 나타내며, 현행보다 최소값이 더 작고 최대값은 더 크며 분산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예외치를 제외하면 현행보다 분산이 오히려 줄어들음
- 10% 조정 시의 교부액 분포의 최소·최대 값은 각각 15.7억과 130.2억이며 표준편차는 9.6억원으로 현행이나 5% 조정안보다도 자치단체들 간의 격차가 커짐
 - 그러나 10% 조정 시의 교부액 분포에서 상위 3개 자치단체인 서울시 강남구(130.2억원), 서초구(83.6억원), 송파구(83.8억원)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최대값이 78.2억원이고 표준편차는 7.7억원으로 자치단체들 간의 격차가 현행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옴

<그림 V-7> 교육수요지수와 재산세부과지수 간의 가중치 조정 후의 교부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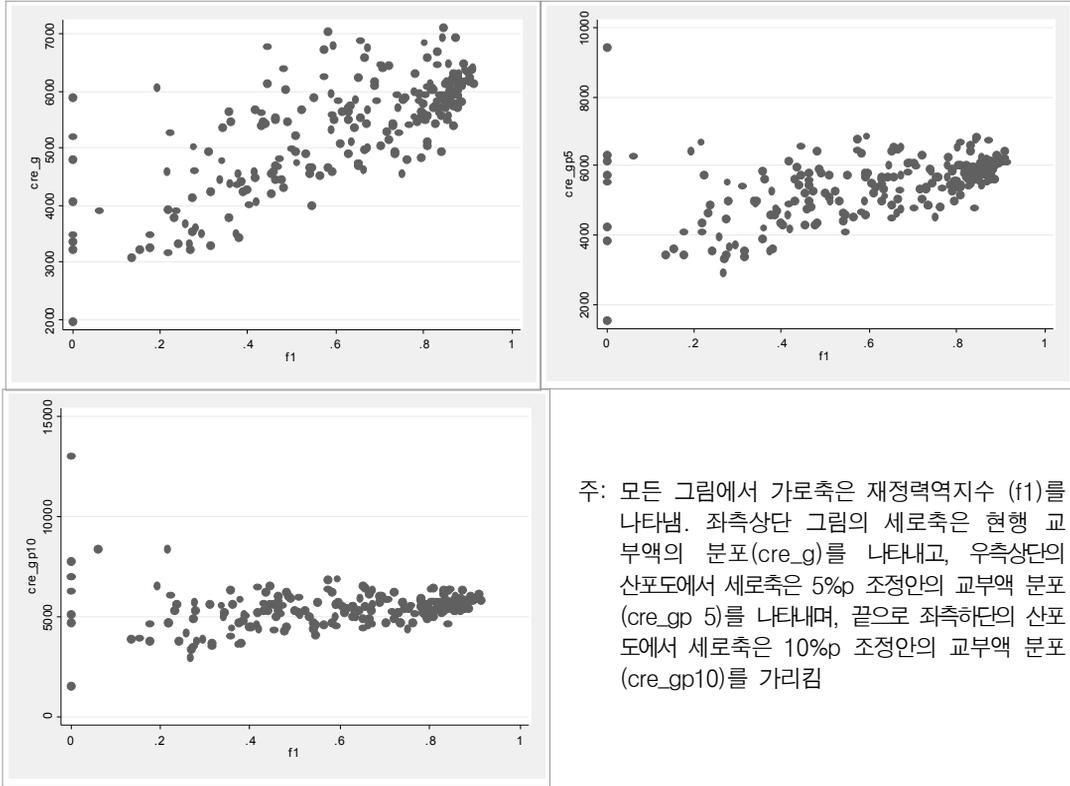
(단위: 개, 백만원)



주: 세로축은 각 구간별 도수의 수(frequency)를 나타내고, 가로축은 5%p와 10%p를 각각 조정했을 때의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액을 나타냄. 즉, cre_gp5는 교육수요의 가중치는 5% 줄이고 재산세 부과액지수의 가중치는 5% 늘이는 경우의 교부액을 나타내고, cre_gp10은 10%씩 조정한 후의 교부액 분포를 나타냄

- 교육수요비중의 축소와 재산세부과실적 비중의 확대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의 축소를 초래함
 - <그림 V-8>의 좌측상단 그림은 현행 교부액(cre_g)과 재정력역지수(f1)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 현행 교부액(cre_g)과 재정력역지수(f1) 간의 상관계수는 0.733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즉,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더 많은 교부액을 배분받음을 의미함
 - <그림 V-8>의 우측상단의 그림은 교육수요지수와 재산세부과지수의 가중치를 5%p 조정했을 때의 교부액(cre_gp5)과 재정력역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임
 - 5%p 조정 시의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액과 재정력역지수 간의 상관계수 값은 0.489로 현행 산정방식에서보다 17.6% 감소하였음
 - <그림 V-8>의 좌측하단의 그림은 교육수요지수와 재산세부과지수의 가중치를 10%p 조정했을 때의 교부액(cre_gp10)과 재정력역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임
 - 10%p 조정 시의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액과 재정력역지수 간의 상관계수 값은 0.127로 현행 산정방식에서보다 86.1% 감소하여 이제 더 이상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부동산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V-8>의 산포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로축인 교부액과 가로축인 재정력역지수의 단순회귀선을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 그 기울기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현행 산정방식에 따른 교부세와 재정력역지수 간의 로그-로그 단순회귀분석에서의 계수값은 0.30으로 재정력역지수가 1% 증가했을 때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액은 0.3% 증가하였음
 - 그러나 5%p 조정안에 따른 교부세와 재정력역지수 간의 관계를 보면, 재정력역지수의 값이 1% 증가했을 때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액은 0.2% 증가하였음
 - 10%p 조정안에 따른 교부세와 재정력역지수 간의 상관관계는 더욱 불분명해지면서 단순회귀분석에서의 계수값은 0.1에 불과했고 결정계수값은 0.12로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V-8> 교육수요지수와 재산세부과지수 간의 가중치 조정 후의 교부액 분포와 재정력역지수와의 관계 (2012년)



주: 모든 그림에서 가로축은 재정력역지수 (f1)를 나타냄. 좌측상단 그림의 세로축은 현행 교부액의 분포(cre_g)를 나타내고, 우측상단의 산포도에서 세로축은 5%p 조정안의 교부액 분포(cre_gp 5)를 나타내며, 끝으로 좌측하단의 산포도에서 세로축은 10%p 조정안의 교부액 분포(cre_gp10)를 가리킴

○ 이와 같이 가중치를 조정했을 때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일수록 현행보다 더 많은 교부액을 배분받는 경향이 나타남

- <그림 V-9>의 좌측 산포도는 5%p 가중치 조정 전후의 교부액 비율과 변화율을 나타내며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치단체에서 교부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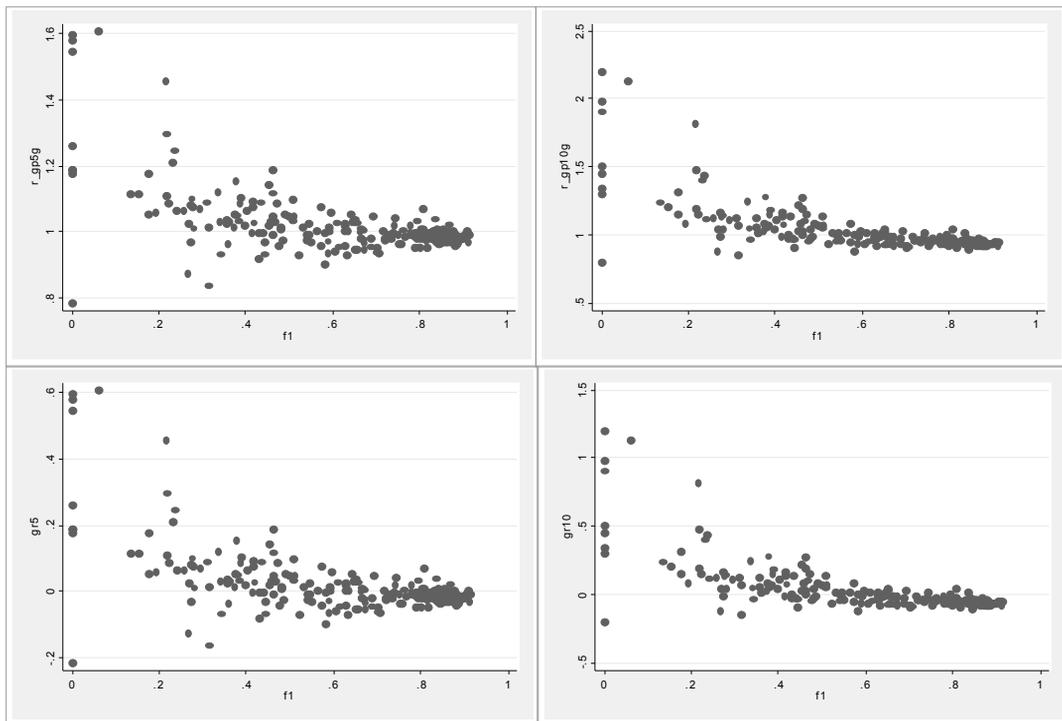
- 가로축은 재정력역지수를 가리키고 세로축은 5%p 조정 전후의 교부금 비율과 변화율을 나타내므로 재정력역지수 값이 평균(0.614)보다 작은 자치단체들에서 교부금의 증가세가 뚜렷이 보임

- 재정력이 평균보다 좋은 98개 자치단체 중, 73곳(74%)에서 교부액이 증가한 반면에, 재정력이 평균보다 약한 130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37곳(28%)에서만 교부액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93곳의 자치단체의 교부액은 현행보다 줄어들게 됨

- <그림 V-9>의 우측 산포도는 10%p 가중치 조정 전후의 교부액 비율과 변화율을 각각 나타내며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치단체에서 교부액도 증가하는 경향은 5% 조정 안에서보다 더 강해짐

- 가로축은 재정력역지수를 가리키고 세로축은 10%p 조정 전후의 교부금 비율과 변화율을 나타내므로, 재정력역지수 값이 평균(0.614)보다 높은 자치단체들에서 교부금의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남
- 재정력이 평균보다 높은 98개 자치단체 중에서 74곳(75%)에서 교부액이 증가한 반면에 재정력이 평균보다 낮은 130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9군데(6%)에서만 교부액이 증가하여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의 교부액이 줄어들음

<그림 V-9> 가중치 조정 후의 교부액 변화율과 재정력역지수와의 관계



주: 모든 그림에서 가로축은 재정력역지수(f1)를 나타냄. 좌측상단 산포도의 세로축은 5%p 조정 후의 교부액과 현행 교부액의 비율(r_gp5g)을 나타내고, 우측상단 산포도의 세로축은 10%p 조정 후의 교부액과 현행 교부액의 비율(r_gp10g)을 나타냄. 좌측하단 산포도는 5%p 조정 전·후의 교부액 변화율을 나타내고 우측하단 산포도는 10%p 조정 전·후의 교부액 변화율을 나타냄

○ 교부액 변화는 일부 지역에서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교부액 변화는 $\pm 10\%$ 를 넘지 않음

- 5%p 조정 전·후의 교부액 변화는 일부지역에서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교부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자치단체는 서울 서초구(60.8%), 서울 강남구(59.9%), 경기 성남시(58.4%), 경기 용인시(54.7%), 서울 송파구(45.9%)로 나타났음
- 반면에 교부액이 현재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단체는 경기 과천시(-21.5%), 경남 거제시(-12.5%), 광주 북구(-9.6%), 부산 강서구(-16.1%), 부산 사상구(-7.1%), 인천 연수구(-7.9%) 순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전체의 88.5%인 202개 자치단체의 교부액 변화율은 $\pm 10\%$ 내로 상대적으로 작으며 이들 202개 자치단체 중에서 87곳의 교부액이 증가하게 됨
- 또한 전체의 72.3%인 165개 자치단체의 교부액 변화율은 $\pm 5\%$ 에 머물러 있음

- 10%p 조정 전·후의 교부액 변화 역시 일부지역에서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현재보다 교부액이 크게 늘어날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120.7%), 서울 서초구(113.6%), 경기 성남시(99.3%), 경기 용인시(91.0%), 서울 송파구(82.2%) 순임
- 반면에 교부액이 현재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자치단체는 경기 과천시(-20.1%), 부산 강서구(-13.9%), 광주 북구(-11.8%), 경남 거제시(-11.2%), 전북 김제시(-10.0%) 순서임
- 그러나 전체의 80.2%에 해당하는 183개 자치단체의 교부액 변화율은 $\pm 10\%$ 이내임
- 또한 교부액 변화율이 $\pm 5\%$ 이내인 자치단체의 수는 102개로 전체의 44.7% 수준임

다. 3% 징수지 귀속방식의 배분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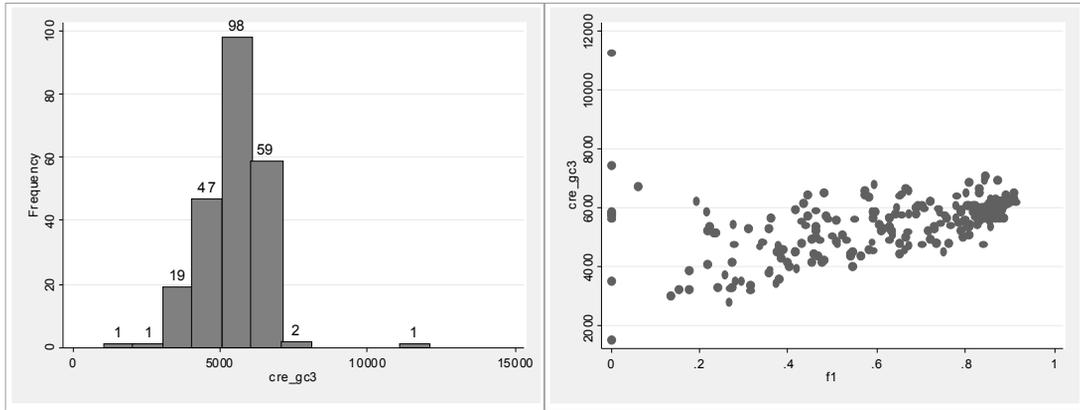
○ 종합부동산세의 3%를 징수지에 귀속시키는 배분방식이 부동산교부세의 지역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 3% 징수지 귀속방식이 도입될 때의 최종적인 교부세의 배분분포가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함

- 우선 <그림 V-10>의 왼쪽 도수분포도는 교부액의 최소·최대값의 격차는 물론 자치단체들 간의 편차도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액 분포의 최소·최대 값은 각각 19.7억과 71.2억이며 표준편차는 9.5억원 정도이나, 3%의 징수교부금을 도입하면 교부액 분포의 최소·최대 값이 각각 15.6억원과 112.8억원이며 표준편차는 10.0억원임
- 그러나 최대값을 예외치로 제외하고 분포를 살펴보면, 현행 산정방식에 따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최소·최대값 및 표준편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서울 강남구가 현행 방식으로 59억원을 교부받던 것이 3% 징수비용보전금 도입 시 112.8억원을 교부받는 것을 제외하고 분포를 살펴보면, 최소·최대 값이 각각 15.6억원과 74.6억원이며 표준편차는 9.2억원으로 현행 교부액의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그림 V-10>의 우측 산포도는 3% 징수지 귀속방식에 따른 교부액 분포와 재정력 간의 관계를 보여주며 현행 산정방식보다 재정력과의 상관관계가 약화되었음
 - 현행 산정방식에서의 교부액과 재정력역지수 간의 상관계수는 0.733이었으나 3% 징수지 귀속분의 도입으로 교부액과 재정력역지수 간의 상관계수는 0.456으로 하락하였음
 - 현행 교부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재정력역지수를 설명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재정력역지수가 1% 증가하면 교부액이 0.30% 증가함(결정계수 값은 0.56)
 - 3% 징수지 귀속분을 가정하면 위와 동일한 단순회귀분석은 재정력역지수가 1% 증가할 때 교부액은 0.24% 증가하는데 그쳐 현행보다 지역 간 재정형평화 기능이 축소되었음을 보여줌(결정계수 값은 0.38)
 - 이러한 결과는 <표 V-5>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자치단체의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해마다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임

<그림 V-10> 3% 징수지 귀속방식에 따른 교부액 분포와 재정력 간의 관계

(단위: 개, 백만원)



주: 왼쪽 그림의 세로축은 각 구간별 도수의 수(frequency)를 나타내고, 왼쪽 그림의 가로축과 오른쪽 산포도의 세로축은 3% 징수지 귀속분을 도입했을 때의 부동산교부세교부액(cre_gc3)을 나타내며, 오른쪽 산포도의 가로축은 재정력역지수(f1)를 가리킴

○ 이와 같이 3% 징수지 귀속분을 도입했을 때, 예외치를 제외하면 교부액의 변화는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큰 관련이 없어 보임

- <그림 V-11>의 좌측 산포도는 3% 징수지 귀속분 도입 전·후의 교부액 비율을 나타내며,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치단체에서 교부액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임

- 가로축은 재정력역지수를 가리키고 세로축은 3% 징수지 귀속분 도입 전후의 교부금 비율을 나타내며, 좌측 산포도는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우측의 산포도는 증가율이 60% 이상인 5개의 예외치를 제외한 산포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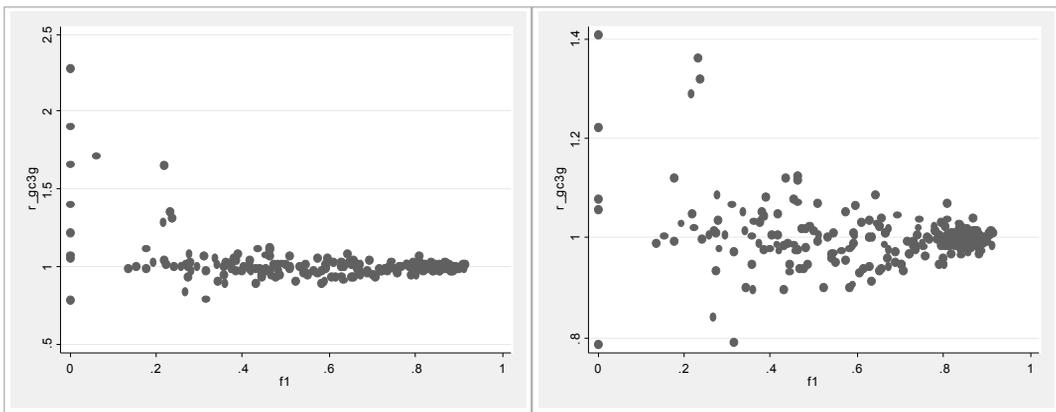
- 재정력역지수 값이 평균(0.614)보다 작은 자치단체들 중의 일부에서 교부액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재정력역지수의 값이 평균보다 낮은 지역 즉, 재정력이 평균수준보다 양호한 98개 자치단체 중 55곳(56.1%)에서 교부액이 증가한 반면, 재정력이 평균보다 낮은 130개 자치단체 중 69곳(53.0%)에서 교부액이 증가하여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

- 또한 <그림 V-11>의 우측 산포도는 교부액의 변화방향이 재정력과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림 V-11>의 우측 산포도는 증가율이 60% 이상인 5개의 예외치(서울시 중구,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경기 성남시)를 제외하고 구간을 확대하여 그린 산포도임
- 예외치 5곳을 제외한 223개 자치단체들 중에서 119곳(53.4%)은 현행 산정방식에 따른 교부액보다 늘었고 104곳(44.6%)의 교부액은 줄었음
-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자치단체(재정력역지수 > 0.8) 76곳 가운데서도 교부액이 증가한 곳이 43곳이고 감소한 곳이 33곳으로, 현행보다 교부액이 증가한 자치단체의 수가 더 많음

<그림 V-11> 3% 징수지 귀속방식에 따른 교부액 변화와 재정력 간의 관계



주: 좌우 산포도에서 가로축은 재정력역지수(f1)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3% 징수비용보전금을 도입했을 때의 교부액과 현행 교부액의 비율(r_gc3g)을 나타내며, 우측의 산포도는 예외점들을 제외한 경우임

- 교부액 변화는 일부지역에서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대다수의 자치단체의 교부액 변화는 ±10%로 제한적임
 - 징수지 귀속분 도입으로 인한 교부액 변화는 일부지역에서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교부액이 현행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자치단체는 서울 중구(129.1%), 서울 강남구(91.1%), 서울 서초구(72.0%), 경기 성남시(66.9%), 서울 종로구(65.5%)로 종합부동산세가 주로 징수되는 곳임
 - 반면에 교부액이 현재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단체는 경기 과천시(-21.1%), 부산 강서구(-20.5%), 경남 거제시(-15.5%), 인천 연수구(-10.2%), 울산 남구(-9.9%) 순서임

- 그러나 총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210개(92.1%)의 교부액 변화는 $\pm 10\%$ 이내이며, 171개(75.0%)의 교부액 변화는 $\pm 5\%$ 이내로 제한적임

○ 아래의 <표 V-6>과 <표 V-7>은 본 장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음

- <표 V-6>은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과 현행 제도에서의 기초통계량(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을 요약하고 있음
- <표 V-7>은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력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 대안별로 새롭게 계산되어 교부되는 금액이 현행 부동산교부액에 비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요약하여 보여줌

<표 V-6> 각 대안별 기초통계량

(단위: 개, 백만원)

	현행	재산세부과액 비중 5%p 증가	재산세부과액 비중 10%p 증가		3% 징수지 귀속방식	
			전체	예외치 3개 제외	전체	예외치 1개 제외
최소	19.7	15.5	15.7	15.7	15.6	15.6
최대	71.2	94.3	130.2	78.2	112.8	74.6
표준편차	9.5	8.9	9.6	7.7	10	9.2

<표 V-7> 각 대안별 부동산교부액의 증감분포

재정력지수	재산세부과액 비중 5%p 증가		재산세부과액 비중 10%p 증가		3% 징수지 귀속방식	
	평균이하	평균이상	평균이하	평균이상	평균이하	평균이상
교부액증가	37개	73개	9개	74개	69개	55개
교부액감소	93개	25개	121개	24개	61개	43개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Ⅵ. 정책 제언



Ⅵ. 정책 제언

- 지방세로 전환되는 종합부동산세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모색
 - 지난해 11월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발표하였고, 이후 유승우 의원의 대표 발의로 관련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
 -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권자가 ‘관할 세무서장’에서 납세자의 주소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되는 등 종합부동산세 징수업무가 국세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
 -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수립, 제도개선업무와 국세청 본청의 종합부동산세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 등이 안전행정부로 이관됨
 - 지방국세청의 불복·고충 등 민원처리업무는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됨
 - 국세청 세무서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부과·징수·감면·환급관련 업무는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
 - 현재 각 세무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크게 늘어남
 -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인력 확보, 징수비용 지급, 세수배부기준의 개선 등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징수비용 지급과 운영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체계에 부합하는 세수배부기준이 모색되어야 함
- 종합부동산세 징수는 징수위임 성격을 지니므로 징수비용을 지급받을 필요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등)를 징수한 지자체가 세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하지만 지방세로 전환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등 여타 지방세와 달리 세금을 부과·징수한 기초자치단체에 세입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세의 배분기준인 시·군·구의 재정여건 등에 의해 배부됨
- 이처럼 부과·징수와 세수귀속이 분리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
- 기초자치단체가 상위 정부로부터 징수를 위임받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임받는 경우 징수비용을 지급받고 있음
- 즉 기초자치단체가 시·도세를 징수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징수액의 3%를 받으며, 중앙정부의 부담금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시·도세 징수 등이 위임된 업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징수비용을 지급받아야 함

○ 종합부동산세 징수비용 규모는 징수액의 3~5% 수준이 적절

- 징수비용 지급규모는 인건비 및 시스템 구축비 등 징수업무에 들어가는 비용보전과 징수독려 차원의 징수인센티브가 고려되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먼저, 시·도세 징수부담금 규모를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 징수관련 인건비 및 시스템 구축비 등 업무처리 비용보전 규모는 징수액의 3% 선이 적절함
 - 광역자치단체가 시·도세 징수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징수비용으로 징수액의 3%를 지급하고 있음
 - 건당 부과액규모, 징수율 등을 비교하면 종합부동산세 징수는 부담금이나 지방세 체납액보다는 시·도세 징수와 더 유사함
-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을 추정하여 산정된 징세비용도 징수액의 3% 수준임
 - 현재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 규모는 468명으로 추정되고 여기에 1인당 징세비용을 곱하여 산정된 종합부동산세 징세비용은 332.3억원임
 - 추정된 종합부동산세 징수비용은 징수액(1조 1311억원, 2012년)의 2.9%임

- 둘째, 업무처리 비용보전에 추가하여 종합부동산세 징세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징수액의 1~2%를 징수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징수의 위탁주체가 모호하고 위탁주체가 징수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도 부재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 시·도세, 부담금, 체납액의 징수위임은 징수의 위탁·수탁관계가 명확한데 반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징수의 위탁·수탁관계가 모호함
 - 시·도세 징수위임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교부하고 있으므로 시·도세는 일종의 공동 재원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시·도세 징수를 독려할 수 있음
 - 부담금과 체납액의 징수위임은 징수액의 30% 정도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설 유인이 있음
- 201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율(82.8%)은 재산세(96.4%)보다 훨씬 낮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면 불분명한 위탁·수탁관계로 인해 징수율이 더욱 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수액의 1~2% 정도를 징수인센티브 재원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징수비용 지급규모는 실제 업무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보전과 징수 장려차원의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징수액의 3~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함
 - 201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징수비용 지급규모는 339억원(3%)~566억원(5%)임

○ 현행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이 지방자치단체로 재배치되는 것이 바람직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세수규모나 징세업무가 크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로 전환된 종합부동산세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수도 현행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 징세비용의 최소화, 납세자 편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현행 국세청 등에서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지방자치단체로 재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함
 - 종합부동산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중에서 개인 신상 등의 이유로 국세청 등에서 재배치되지 않은 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인력을 충원함

-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 국세청은 세목별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목을 통합하여 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을 가장 잘 나타내는 납세인원을 사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관련인력을 추정하여야 함
 - ‘납세인원’을 사용하여 국세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운영인력을 추정한 결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수는 474명으로 추정됨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본청의 인력수는 6명임
 - 지방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수는 27명임
 -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수는 441명임
 - 종합부동산세 전체인원을 기초자치단체별로 배정하는 방법으로 ‘납세인원 비례방식’과 ‘단계적 배정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납세인원 비례방식’은 기초자치단체별 납세인원에 비례하여 종합부동산세 운영인력을 배정하는 방안임
 - ‘단계적 배정방식’은 기초자치단체가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수행하려면 최소한 1명 이상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별 납세인원수에 따라 인력을 차등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임
 - 납세인원 비례방식은 업무량에 비례하여 인원이 산정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무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음
 - 납세인원 비례방식으로 필요인력이 산정되면 1명도 배정받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상당수 발생함
 - 인력을 배정받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징세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인원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최소 1명 이상의 세무공무원을 배정하는 단계적 배정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세수배분의 단기대안으로 재산세 비중을 상향
-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면 세수배분에 대한 논의는 더욱 복잡해짐

- 기존의 세수배부기준에 추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에 부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해짐
 - 기존의 개인간 및 지역간 응능원칙에 따른 형평성의 추구라는 정책목표에 더해서 이제 지방세로서 종합부동산세는 응익원칙에 따른 형평성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평가기준을 논의에 추가하게 된 것임
 - 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역공공재에 대한 가격기능을 어느 정도 담보해야하며 이는 응익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대표적인 지방세목인 재산세로 취급하여 그 비중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편리성과 투명성 면에서 우월한 대안일 수 있음
- 비록 납세자 개인의 종합부동산세를 물건의 과세표준의 비중에 따라 대상물건의 소재지에 귀속시키는 기본방안의 세수분포가 재산세 세수의 지역별 분포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단기적으로 편리성과 투명성 면에서 우월할 대안으로 평가됨
 - 부동산교부세 전체를 재산세와 연동하는 것은 현재의 배분상황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현행 교부액 산정방식에서 재산세 부과액지수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배분비율을 조정하여야 함
- 구체적인 단기대안으로서 현행 배분기준들 중 교육수요의 비중을 줄이고 재산세부과실적의 비중을 높일 수 있음
- 만약 취학계층의 축소와 같은 교육재정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재산세부과실적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정책목표가 현실적으로 우선시 되는 상황이라면, 배분공식에서 교육수요의 비중을 줄이고 재산세부과실적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함
- 몇 개의 예외치를 제외하면, 5%p나 10%p 수준에서 교육수요비중의 축소와 재산세부과실적비중의 확대에 의한 자치단체들의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변화는 전체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교육수요비중의 축소와 재산세부과실적비중의 확대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의 축소를 초래하여,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일수록 현행보다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을 배분받는 경향이 나타남
 - 그러나 교부액 변화는 일부지역에서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교부액 변화는 $\pm 10\%$ 를 넘지 않음

-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물건소재지에 귀속시키는 방향이 지방세로서의 성격과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수배분 방안을 모색함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종합부동산세의 대상물건의 소재지 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는 공공서비스의 대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여야 지방세로서의 의미를 지닐 것임
 - 이 때 납세자의 복수물건들 간의 세수배분은 각 물건의 과세표준의 비중에 따라 이루어져야 응익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구(舊) 종합토지세에 적용된 선례가 있음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참고문헌 및 부록



참고문헌

- 권강웅(2011), 『지방세강론』, 영화조세통람.
- 김대영·이영희·하능식·김성주(2011), 『지방세제의 선진화』, 박영사.
- 김종희(2003), “징수교부금의 수평적 재정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제 13권 제4호, pp. 151-165.
- 김태호(2014),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수요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 연구원.
- 나민주(2012), “교육세 제도의 성과와 과제, 지방교육재정 제도의 성과와 과제”, 2012년 한국 교육재정경제학회 논문집.
- 노영훈(2009),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의 변화와 정책과제”, 『지방재정과 지방세』, pp. 51-73.
- 류민정(2013), “지방세 합리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 대회 발표논문집』.
- 박종수·서보국 (2010),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공법학회.
- 박훈(2009),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이전시 개편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pp. 22-29.
- 송상훈(2010), “지방세제 선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안종석 (20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발전 방향”, 재정포럼 8월호, pp. 6-23.
- 안종석·박명호(2009),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윤홍주 (2012),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제도의 성과와 과제”, 2012년 한국교육재정경제 학회 논문집.
- 이병태(2012),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 이삼주·이상범(2005), “지방세무행정 조직체계의 개선방안”, 『지방세』, 통권제90호, pp. 3-18.
- 이영희·김대영(2005),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임성일·손희준(2011),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지방행정연구, pp. 59-92.
- 전동훈(2011), 『지방세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 정선엽(2013), “세무조직 재설계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 『지방세포럼』, 통권 제7호, pp. 81-87.
- 최병호·이근재·정종필(2010), “징수교부금 교부방식 개편의 자원 재분배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3권 제2호(통권 제65호), pp. 63-95.
- 허명환·송상훈·정지선·류민정(2014), “효율적인 지방세정 인프라 구축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2007),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 기획재정부(2013), 『201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안전행정부, 각 연도, 『지방세통계연감』.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Allen, M. and W. Dare(2002), “Identifying Determinants of Horizontal Property Tax Inequity: Evidence from Florida”,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Vol. 24 No. 2, pp. 153-164.
- Cordes, Joseph J. and R.D. Ebel and J. G. Gravelle(2005), 『Taxation & Tax Policy』, The Urban Institute Press.
- Norregaard, J. (2013), “Taxing immovable property: Revenue potential and implementation challenges”, IMF working paper.

부록

<부록 1> 기초자치단체별 징수비용 시뮬레이션 (징수액의 4% 가정)

(단위: 억원, %)

시·도	단체명 시·군·구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를 [(B-A)/A]
	합계	273,955	45,244.2	45,244.2	0.0	0.0
서울	소계	152,476	25,182.1	25,569.6	388.0	263.1
	종로구	3,330	550.0	1,053.9	504.0	91.6
	중구	2,231	368.5	1,902.5	1,534.0	416.3
	용산구	8,463	1,397.7	1,490.8	93.1	6.7
	성동구	3,221	532.0	521.9	-10.1	-1.9
	광진구	3,991	659.1	646.7	-12.4	-1.9
	동대문구	1,238	204.5	178.4	-26.1	-12.8
	중랑구	1,429	236.0	205.9	-30.1	-12.8
	성북구	3,261	538.6	472.5	-66.1	-12.3
	강북구	910	150.3	119.1	-31.2	-20.7
	도봉구	1,113	183.8	145.6	-38.2	-20.8
	노원구	2,489	411.1	325.3	-85.8	-20.9
	은평구	2,495	412.1	342.8	-69.2	-16.8
	서대문구	1,568	259.0	215.4	-43.5	-16.8
	마포구	3,902	644.4	596.9	-47.6	-7.4
	양천구	6,455	1,066.1	834.2	-231.8	-21.7
	강서구	2,778	458.8	455.0	-3.8	-0.8
	구로구	1,962	324.0	300.3	-23.7	-7.3
	금천구	924	152.6	126.4	-26.2	-17.1
	영등포구	5,102	842.6	1,006.6	164.0	19.5
	동작구	4,222	697.3	582.3	-115.0	-16.5
관악구	1,986	328.0	271.8	-56.2	-17.1	
서초구	27,926	4,612.0	4,184.7	-427.3	-9.3	
강남구	38,299	6,325.2	6,460.1	135.0	2.1	
송파구	18,674	3,084.1	2,538.7	-545.3	-17.7	
강동구	4,507	744.3	591.8	-152.5	-20.5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도	시·군·구					
부산	소계	8,662	1,430.4	1,417.7	-12.8	278.7
	중구	59	9.7	24.1	14.3	147.1
	서구	161	26.6	24.4	-2.1	-8.1
	동구	168	27.7	35.2	7.5	26.9
	영도구	173	28.6	70.1	41.5	145.3
	부산진구	668	110.3	140.1	29.8	27.0
	동래구	604	99.8	92.4	-7.4	-7.4
	남구	1,365	225.4	197.3	-28.1	-12.5
	북구	453	74.8	72.5	-2.3	-3.1
	해운대구	2,008	331.6	290.3	-41.4	-12.5
	사하구	471	77.8	71.5	-6.3	-8.1
	금정구	544	89.8	94.4	4.6	5.1
	강서구	95	15.7	15.2	-0.5	-3.0
	연제구	459	75.8	70.2	-5.6	-7.4
	수영구	828	136.7	119.7	-17.0	-12.5
	사상구	362	59.8	58.0	-1.8	-3.1
기장군	244	40.3	42.3	2.0	5.0	
대구	소계	4,114	679.4	606.0	-73.5	-55.9
	중구	75	12.4	14.6	2.2	17.6
	동구	980	161.8	138.1	-23.8	-14.7
	서구	195	32.2	28.2	-4.0	-12.5
	남구	213	35.2	29.2	-6.0	-16.9
	북구	448	74.0	86.9	12.9	17.4
	수성구	1,316	217.3	185.4	-31.9	-14.7
	달서구	654	108.0	91.6	-16.4	-15.2
	달성군	233	38.5	32.0	-6.5	-16.9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도	시·군·구					
인천	소계	7,781	1,285.1	1,544.7	259.6	198.1
	중구	236	39.0	50.2	11.2	28.8
	동구	184	30.4	39.1	8.7	28.6
	남구	994	164.2	211.1	47.0	28.6
	연수구	1,010	166.8	242.8	76.0	45.6
	남동구	1,738	287.0	417.9	130.9	45.6
	부평구	987	163.0	176.6	13.6	8.4
	계양구	604	99.8	108.1	8.3	8.4
	서구	1,733	286.2	252.7	-33.5	-11.7
	강화군	246	40.6	35.9	-4.8	-11.7
	옹진군	49	8.1	10.3	2.2	27.5
광주	소계	1,875	309.7	281.4	-28.3	-41.5
	동구	187	30.9	29.7	-1.1	-3.7
	서구	380	62.8	57.4	-5.4	-8.6
	남구	386	63.7	61.4	-2.4	-3.7
	북구	460	76.0	63.1	-12.8	-16.9
	광산구	462	76.3	69.8	-6.6	-8.6
대전	소계	3,713	613.2	615.1	1.8	25.7
	동구	349	57.6	67.7	10.0	17.4
	중구	366	60.4	71.0	10.5	17.4
	서구	1,542	254.7	243.0	-11.6	-4.6
	유성구	951	157.1	149.9	-7.2	-4.6
	대덕구	505	83.4	83.5	0.1	0.1
울산	소계	2,068	341.5	322.2	-19.5	-8.6
	중구	327	54.0	56.3	2.3	4.2
	남구	854	141.0	119.9	-21.2	-15.0
	동구	246	40.6	42.4	1.7	4.3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도	시·군·구					
울산	북구	258	42.6	44.4	1.8	4.3
	울주군	383	63.3	59.2	-4.1	-6.4
세종특별자치시		223	36.8	32.0	-4.8	-13.2
경기	소계	69,414	11,464.0	10,906.0	-558.0	-154.0
	수원시	3,957	653.5	776.0	122.5	18.7
	성남시	12,889	2,128.6	2,162.5	33.8	1.6
	의정부시	1,089	179.9	179.1	-0.7	-0.4
	안양시	4,253	702.4	648.0	-54.4	-7.7
	부천시	2,437	402.5	333.5	-69.0	-17.1
	광명시	1,099	181.5	147.9	-33.6	-18.5
	평택시	1,550	256.0	254.7	-1.3	-0.5
	동두천시	247	40.8	40.6	-0.2	-0.4
	안산시	1,573	259.8	282.6	22.9	8.8
	고양시	7,003	1,156.6	988.2	-168.4	-14.6
	과천시	658	108.7	104.5	-4.2	-3.9
	구리시	1,004	165.8	145.0	-20.8	-12.6
	남양주시	3,129	516.8	451.8	-64.9	-12.6
	오산시	1,054	174.1	170.9	-3.1	-1.8
	시흥시	1,234	203.8	166.1	-37.7	-18.5
	군포시	1,064	175.7	138.2	-37.5	-21.4
	의왕시	1,433	236.7	227.5	-9.2	-3.9
	하남시	910	150.3	152.2	1.9	1.3
	용인시	11,371	1,877.9	1,699.3	-178.6	-9.5
	파주시	1,660	274.2	272.7	-1.5	-0.5
이천시	1,274	210.4	213.1	2.7	1.3	
안성시	648	107.0	106.5	-0.5	-0.5	
김포시	1,060	175.1	154.6	-20.5	-11.7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도	시·군·구					
경기	화성시	2,547	420.6	398.0	-22.6	-5.4
	광주시	1,714	283.1	286.7	3.6	1.3
	양주시	508	83.9	83.6	-0.3	-0.4
	포천시	400	66.1	65.8	-0.3	-0.4
	여주군	682	112.6	114.0	1.4	1.2
	연천군	116	19.2	19.1	-0.1	-0.5
	가평군	318	52.5	45.9	-6.6	-12.6
	양평군	533	88.0	77.0	-11.1	-12.6
강원	소계	3,030	500.3	536.3	35.6	251.5
	춘천시	553	91.3	94.2	2.9	3.2
	원주시	770	127.2	121.5	-5.7	-4.5
	강릉시	452	74.6	76.7	2.0	2.7
	동해시	114	18.8	15.2	-3.6	-19.4
	태백시	61	10.1	8.1	-2.0	-19.5
	속초시	154	25.4	31.5	6.0	23.7
	삼척시	89	14.7	11.8	-2.9	-19.5
	홍천군	136	22.5	42.9	20.4	90.8
	횡성군	106	17.5	16.7	-0.8	-4.5
	영월군	58	9.6	12.1	2.5	26.5
	평창군	89	14.7	15.2	0.5	3.6
	정선군	60	9.9	12.2	2.3	23.2
	철원군	122	20.1	20.1	-0.1	-0.5
	화천군	51	8.4	8.7	0.2	2.9
	양구군	46	7.6	7.8	0.2	3.2
	인제군	63	10.4	19.9	9.5	91.4
	고성군	55	9.1	11.3	2.2	24.2
양양군	51	8.4	10.4	2.0	24.0	

(계속)

시·도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군·구					
충북	소계	2,301	380.0	356.0	-24.0	-121.0
	청주시	1,017	168.0	159.2	-8.7	-5.2
	충주시	370	61.1	54.6	-6.5	-10.6
	제천시	151	24.9	22.4	-2.5	-10.1
	청원군	233	38.5	43.1	4.6	12.0
	보은군	30	5.0	4.0	-1.0	-19.3
	옥천군	45	7.4	6.0	-1.4	-19.0
	영동군	44	7.3	5.9	-1.4	-19.3
	진천군	97	16.0	13.7	-2.3	-14.6
	괴산군	62	10.2	10.3	0.1	0.5
	음성군	165	27.3	24.4	-2.9	-10.6
	단양군	34	5.6	5.1	-0.6	-9.9
	증평군	53	8.8	7.5	-1.3	-14.8
	충남	소계	4,691	775.0	753.0	-22.0
천안시		1,499	247.6	249.9	2.4	1.0
공주시		231	38.2	33.1	-5.0	-13.2
보령시		171	28.2	25.5	-2.7	-9.7
아산시		723	119.4	120.5	1.1	0.9
서산시		403	66.6	67.3	0.7	1.1
논산시		135	22.3	19.9	-2.4	-10.6
계룡시		45	7.4	6.6	-0.8	-10.9
당진시		584	96.4	88.0	-8.5	-8.8
금산군		77	12.7	14.9	2.2	17.5
부여군		79	13.0	11.6	-1.4	-10.8
서천군		96	15.9	14.3	-1.6	-9.8
청양군		45	7.4	7.1	-0.4	-5.1
홍성군		125	20.6	19.5	-1.1	-5.3

(계속)

시·도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군·구					
충남	예산군	324	53.5	48.8	-4.7	-8.8
	태안군	154	25.4	25.7	0.3	1.2
전북	소계	2,566	424.0	370.0	-54.0	-131.0
	전주시	1,131	186.8	158.2	-28.6	-15.3
	군산시	407	67.2	60.5	-6.8	-10.0
	익산시	373	61.6	55.4	-6.2	-10.1
	정읍시	84	13.9	12.1	-1.8	-12.6
	남원시	61	10.1	9.8	-0.2	-2.3
	김제시	112	18.5	16.6	-1.9	-10.0
	완주군	180	29.7	24.1	-5.6	-18.9
	진안군	35	5.8	5.3	-0.5	-7.9
	무주군	33	5.5	5.0	-0.4	-8.0
	장수군	24	4.0	3.7	-0.2	-6.0
	임실군	21	3.5	3.4	-0.1	-2.3
	순창군	21	3.5	3.4	-0.1	-2.2
	고창군	43	7.1	6.2	-0.9	-12.8
	부안군	41	6.8	5.9	-0.8	-12.5
전남	소계	1,904	314.6	342.5	28.1	70.3
	목포시	292	48.2	52.4	4.2	8.7
	여수시	266	43.9	45.5	1.5	3.5
	순천시	272	44.9	57.9	12.9	28.8
	나주시	66	10.9	12.1	1.2	10.6
	광양시	150	24.8	31.9	7.1	28.7
	담양군	49	8.1	6.7	-1.4	-16.8
	곡성군	55	9.1	8.7	-0.4	-3.9
	구례군	27	4.5	5.7	1.3	28.6
	고흥군	71	11.7	15.1	3.4	28.9
	보성군	47	7.8	10.0	2.2	28.5
	화순군	121	20.0	19.2	-0.7	-3.7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도	시·군·구					
전남	장흥군	26	4.3	3.6	-0.7	-16.5
	강진군	25	4.1	3.4	-0.7	-16.8
	해남군	49	8.1	6.7	-1.4	-16.9
	영암군	48	7.9	8.7	0.8	9.8
	무안군	90	14.9	16.2	1.3	8.8
	함평군	27	4.5	4.9	0.5	10.3
	영광군	69	11.4	10.4	-1.0	-8.7
	장성군	48	7.9	6.6	-1.3	-16.9
	완도군	33	5.5	4.5	-0.9	-16.6
	진도군	21	3.5	2.9	-0.6	-17.0
	신안군	52	8.6	9.4	0.8	8.9
경북	소계	3,092	511.0	640.0	130.0	260.0
	포항시	1,001	165.3	203.2	37.8	22.9
	경주시	282	46.6	86.7	40.1	86.2
	김천시	130	21.5	19.5	-2.0	-9.3
	안동시	153	25.3	24.5	-0.7	-2.9
	구미시	389	64.2	71.5	7.3	11.3
	영주시	115	19.0	15.0	-4.0	-21.2
	영천시	109	18.0	33.5	15.5	85.9
	상주시	94	15.5	12.3	-3.3	-21.1
	문경시	69	11.4	9.0	-2.4	-21.2
	경산시	246	40.6	77.4	36.8	90.5
	군위군	22	3.6	3.5	-0.1	-3.0
	의성군	52	8.6	8.3	-0.3	-3.0
	청송군	24	4.0	3.9	-0.1	-2.9
	영양군	20	3.3	3.1	-0.3	-7.6
	영덕군	24	4.0	3.9	-0.1	-2.5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도	시·군·구					
경북	청도군	44	7.3	13.8	6.6	90.3
	고령군	31	5.1	4.5	-0.6	-12.3
	성주군	43	7.1	6.5	-0.7	-9.2
	칠곡군	112	18.5	20.6	2.1	11.2
	예천군	47	7.8	6.1	-1.6	-21.2
	봉화군	34	5.6	4.4	-1.2	-21.1
	울진군	30	5.0	4.9	-0.1	-1.7
	울릉군	21	3.5	4.2	0.8	21.9
	소계	4,805	794.0	755.0	-38.0	-105.0
경남	창원시	1,817	300.1	259.7	-40.3	-13.4
	진주시	353	58.3	54.5	-3.8	-6.6
	통영시	181	29.9	26.6	-3.3	-11.1
	사천시	121	20.0	18.7	-1.3	-6.6
	김해시	796	131.5	147.0	15.5	11.8
	밀양시	169	27.9	31.2	3.3	11.7
	거제시	308	50.9	45.2	-5.7	-11.1
	양산시	575	95.0	99.8	4.8	5.1
	의령군	32	5.3	4.6	-0.7	-13.5
	함안군	70	11.6	10.0	-1.5	-13.2
	창녕군	66	10.9	9.4	-1.5	-13.4
	고성군	74	12.2	10.9	-1.4	-11.1
	남해군	50	8.3	7.7	-0.5	-6.3
	하동군	53	8.8	8.2	-0.6	-6.5
	산청군	37	6.1	5.7	-0.4	-6.3
	함양군	27	4.5	4.3	-0.2	-4.6
	거창군	42	6.9	6.6	-0.3	-4.7
	합천군	34	5.6	5.3	-0.3	-5.1
	제주특별자치도		1,240	204.8	197.3	-7.5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록 2> 기초자치단체별 징수비용 시뮬레이션 (징수액의 5% 가정)

(단위: 억원, %)

시·도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군·구					
	합계	273,955	56,555.3	56,555.3	0.0	0.0
서울	소계	152,476	31,477.2	31,961.9	484.7	263.1
	종로구	3,330	687.4	1,317.4	630.0	91.6
	중구	2,231	460.6	2,378.1	1,917.6	416.3
	용산구	8,463	1,747.1	1,863.5	116.4	6.7
	성동구	3,221	664.9	652.3	-12.6	-1.9
	광진구	3,991	823.9	808.3	-15.6	-1.9
	동대문구	1,238	255.6	222.9	-32.6	-12.8
	중랑구	1,429	295.0	257.3	-37.7	-12.8
	성북구	3,261	673.2	590.6	-82.6	-12.3
	강북구	910	187.9	148.9	-39.0	-20.7
	도봉구	1,113	229.8	182.0	-47.8	-20.8
	노원구	2,489	513.8	406.6	-107.2	-20.9
	은평구	2,495	515.1	428.5	-86.5	-16.8
	서대문구	1,568	323.7	269.3	-54.4	-16.8
	마포구	3,902	805.5	746.1	-59.5	-7.4
	양천구	6,455	1,332.6	1,042.8	-289.8	-21.7
	강서구	2,778	573.5	568.8	-4.7	-0.8
	구로구	1,962	405.0	375.4	-29.7	-7.3
	금천구	924	190.8	158.0	-32.7	-17.1
	영등포구	5,102	1,053.3	1,258.2	205.0	19.5
	동작구	4,222	871.6	727.9	-143.7	-16.5
관악구	1,986	410.0	339.7	-70.3	-17.1	
서초구	27,926	5,765.0	5,230.9	-534.2	-9.3	
강남구	38,299	7,906.4	8,075.2	168.7	2.1	
송파구	18,674	3,855.1	3,173.4	-681.7	-17.7	
강동구	4,507	930.4	739.8	-190.7	-20.5	

(계속)

시·도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군·구					
부산	소계	8,662	1,788.1	1,771.9	-16.2	278.7
	중구	59	12.2	30.1	17.9	147.1
	서구	161	33.2	30.6	-2.7	-8.1
	동구	168	34.7	44.0	9.3	26.9
	영도구	173	35.7	87.6	51.9	145.3
	부산진구	668	137.9	175.2	37.3	27.0
	동래구	604	124.7	115.4	-9.2	-7.4
	남구	1,365	281.8	246.6	-35.1	-12.5
	북구	453	93.5	90.6	-2.9	-3.1
	해운대구	2,008	414.5	362.8	-51.7	-12.5
	사하구	471	97.2	89.3	-7.9	-8.1
	금정구	544	112.3	118.0	5.7	5.1
	강서구	95	19.6	19.0	-0.6	-3.0
	연제구	459	94.8	87.7	-7.1	-7.4
	수영구	828	170.9	149.6	-21.3	-12.5
	사상구	362	74.7	72.5	-2.3	-3.1
기장군	244	50.4	52.9	2.5	5.0	
대구	소계	4,114	849.4	757.4	-91.9	-55.9
	중구	75	15.5	18.2	2.7	17.6
	동구	980	202.3	172.6	-29.7	-14.7
	서구	195	40.3	35.2	-5.0	-12.5
	남구	213	44.0	36.5	-7.4	-16.9
	북구	448	92.5	108.6	16.1	17.4
	수성구	1,316	271.7	231.8	-39.9	-14.7
	달서구	654	135.0	114.6	-20.5	-15.2
	달성군	233	48.1	39.9	-8.2	-16.9

(계속)

시·도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군·구					
인천	소계	7,781	1,606.4	1,931.0	324.7	198.1
	중구	236	48.7	62.7	14.0	28.8
	동구	184	38.0	48.9	10.9	28.6
	남구	994	205.2	263.9	58.7	28.6
	연수구	1,010	208.5	303.6	95.1	45.6
	남동구	1,738	358.8	522.4	163.6	45.6
	부평구	987	203.8	220.8	17.0	8.4
	계양구	604	124.7	135.1	10.4	8.4
	서구	1,733	357.8	315.9	-41.9	-11.7
	강화군	246	50.8	44.8	-5.9	-11.7
	옹진군	49	10.1	12.9	2.8	27.5
광주	소계	1,875	387.1	351.7	-35.2	-41.5
	동구	187	38.6	37.2	-1.4	-3.7
	서구	380	78.4	71.7	-6.7	-8.6
	남구	386	79.7	76.7	-2.9	-3.7
	북구	460	95.0	78.9	-16.0	-16.9
	광산구	462	95.4	87.2	-8.2	-8.6
대전	소계	3,713	766.5	768.9	2.5	25.7
	동구	349	72.0	84.6	12.6	17.4
	중구	366	75.6	88.7	13.2	17.4
	서구	1,542	318.3	303.8	-14.5	-4.6
	유성구	951	196.3	187.4	-8.9	-4.6
	대덕구	505	104.3	104.4	0.1	0.1
울산	소계	2,068	427.0	402.6	-24.3	-8.6
	중구	327	67.5	70.4	2.8	4.2
	남구	854	176.3	149.8	-26.5	-15.0
	동구	246	50.8	52.9	2.2	4.3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도	시·군·구					
울산	북구	258	53.3	55.5	2.3	4.3
	울주군	383	79.1	74.0	-5.1	-6.4
세종특별자치시		223	46.0	40.0	-6.1	-13.2
경기	소계	69,414	14,329.8	13,632.0	-697.6	-153.8
	수원시	3957	816.9	970.0	153.1	18.7
	성남시	12,889	2,660.8	2,703.1	42.3	1.6
	의정부시	1,089	224.8	223.9	-0.9	-0.4
	안양시	4,253	878.0	810.0	-67.9	-7.7
	부천시	2,437	503.1	416.9	-86.2	-17.1
	광명시	1,099	226.9	184.9	-42.0	-18.5
	평택시	1,550	320.0	318.3	-1.7	-0.5
	동두천시	247	51.0	50.8	-0.2	-0.4
	안산시	1,573	324.7	353.3	28.6	8.8
	고양시	7,003	1,445.7	1,235.2	-210.5	-14.6
	과천시	658	135.8	130.6	-5.3	-3.9
	구리시	1,004	207.3	181.2	-26.0	-12.6
	남양주시	3,129	646.0	564.8	-81.2	-12.6
	오산시	1,054	217.6	213.7	-3.9	-1.8
	시흥시	1,234	254.7	207.6	-47.1	-18.5
	군포시	1,064	219.7	172.7	-46.9	-21.4
	의왕시	1,433	295.8	284.3	-11.5	-3.9
	하남시	910	187.9	190.2	2.4	1.3
	용인시	11,371	2,347.4	2,124.2	-223.2	-9.5
	파주시	1,660	342.7	340.9	-1.8	-0.5
	이천시	1,274	263.0	266.4	3.4	1.3
	안성시	648	133.8	133.1	-0.7	-0.5
김포시	1,060	218.8	193.2	-25.6	-11.7	

(계속)

시·도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군·구					
경기	화성시	2,547	525.8	497.6	-28.3	-5.4
	광주시	1,714	353.8	358.4	4.6	1.3
	양주시	508	104.9	104.5	-0.4	-0.4
	포천시	400	82.6	82.2	-0.3	-0.4
	여주군	682	140.8	142.6	1.8	1.2
	연천군	116	23.9	23.8	-0.1	-0.5
	가평군	318	65.6	57.4	-8.3	-12.6
	양평군	533	110.0	96.2	-13.8	-12.6
강원	소계	3,030	625.7	670.3	44.7	251.5
	춘천시	553	114.2	117.8	3.6	3.2
	원주시	770	159.0	151.8	-7.1	-4.5
	강릉시	452	93.3	95.8	2.5	2.7
	동해시	114	23.5	19.0	-4.6	-19.4
	태백시	61	12.6	10.1	-2.5	-19.5
	속초시	154	31.8	39.3	7.5	23.7
	삼척시	89	18.4	14.8	-3.6	-19.5
	홍천군	136	28.1	53.6	25.5	90.8
	횡성군	106	21.9	20.9	-1.0	-4.5
	영월군	58	12.0	15.1	3.2	26.5
	평창군	89	18.4	19.0	0.7	3.6
	정선군	60	12.4	15.3	2.9	23.2
	철원군	122	25.2	25.1	-0.1	-0.5
	화천군	51	10.5	10.8	0.3	2.9
	양구군	46	9.5	9.8	0.3	3.2
	인제군	63	13.0	24.9	11.9	91.4
	고성군	55	11.4	14.1	2.7	24.2
	양양군	51	10.5	13.1	2.5	24.0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도	시·군·구					
충북	소계	2,301	475.0	445.0	-30.0	-121.0
	청주시	1,017	209.9	199.0	-10.9	-5.2
	충주시	370	76.4	68.3	-8.1	-10.6
	제천시	151	31.2	28.0	-3.2	-10.1
	청원군	233	48.1	53.9	5.8	12.0
	보은군	30	6.2	5.0	-1.2	-19.3
	옥천군	45	9.3	7.5	-1.8	-19.0
	영동군	44	9.1	7.3	-1.8	-19.3
	진천군	97	20.0	17.1	-2.9	-14.6
	괴산군	62	12.8	12.9	0.1	0.5
	음성군	165	34.1	30.5	-3.6	-10.6
	단양군	34	7.0	6.3	-0.7	-9.9
	증평군	53	10.9	9.3	-1.6	-14.8
충남	소계	4,691	969.0	941.0	-27.0	-71.0
	천안시	1,499	309.5	312.4	2.9	1.0
	공주시	231	47.7	41.4	-6.3	-13.2
	보령시	171	35.3	31.9	-3.4	-9.7
	아산시	723	149.3	150.6	1.4	0.9
	서산시	403	83.2	84.1	0.9	1.1
	논산시	135	27.9	24.9	-3.0	-10.6
	계룡시	45	9.3	8.3	-1.0	-10.9
	당진시	584	120.6	110.0	-10.6	-8.8
	금산군	77	15.9	18.7	2.8	17.5
	부여군	79	16.3	14.5	-1.8	-10.8
	서천군	96	19.8	17.9	-1.9	-9.8
	청양군	45	9.3	8.8	-0.5	-5.1
	홍성군	125	25.8	24.4	-1.4	-5.3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도	시·군·구					
충남	예산군	324	66.9	61.0	-5.9	-8.8
	태안군	154	31.8	32.2	0.4	1.2
전북	소계	2,566	529.7	462.2	-67.5	-130.9
	전주시	1,131	233.5	197.8	-35.7	-15.3
	군산시	407	84.0	75.6	-8.4	-10.0
	익산시	373	77.0	69.2	-7.8	-10.1
	정읍시	84	17.3	15.2	-2.2	-12.6
	남원시	61	12.6	12.3	-0.3	-2.3
	김제시	112	23.1	20.8	-2.3	-10.0
	완주군	180	37.2	30.1	-7.0	-18.9
	진안군	35	7.2	6.7	-0.6	-7.9
	무주군	33	6.8	6.3	-0.5	-8.0
	장수군	24	5.0	4.7	-0.3	-6.0
	임실군	21	4.3	4.2	-0.1	-2.3
	순창군	21	4.3	4.2	-0.1	-2.2
	고창군	43	8.9	7.7	-1.1	-12.8
	부안군	41	8.5	7.4	-1.1	-12.5
전남	소계	1,904	393.2	428.2	35.2	70.3
	목포시	292	60.3	65.5	5.2	8.7
	여수시	266	54.9	56.8	1.9	3.5
	순천시	272	56.2	72.3	16.2	28.8
	나주시	66	13.6	15.1	1.4	10.6
	광양시	150	31.0	39.9	8.9	28.7
	담양군	49	10.1	8.4	-1.7	-16.8
	곡성군	55	11.4	10.9	-0.4	-3.9
	구례군	27	5.6	7.2	1.6	28.6
	고흥군	71	14.7	18.9	4.2	28.9
	보성군	47	9.7	12.5	2.8	28.5
화순군	121	25.0	24.1	-0.9	-3.7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도	시·군·구					
전남	장흥군	26	5.4	4.5	-0.9	-16.5
	강진군	25	5.2	4.3	-0.9	-16.8
	해남군	49	10.1	8.4	-1.7	-16.9
	영암군	48	9.9	10.9	1.0	9.8
	무안군	90	18.6	20.2	1.6	8.8
	함평군	27	5.6	6.1	0.6	10.3
	영광군	69	14.2	13.0	-1.2	-8.7
	장성군	48	9.9	8.2	-1.7	-16.9
	완도군	33	6.8	5.7	-1.1	-16.6
	진도군	21	4.3	3.6	-0.7	-17.0
	신안군	52	10.7	11.7	1.0	8.9
경북	소계	3,092	638.1	799.9	161.9	260.0
	포항시	1,001	206.6	253.9	47.3	22.9
	경주시	282	58.2	108.4	50.2	86.2
	김천시	130	26.8	24.3	-2.5	-9.3
	안동시	153	31.6	30.7	-0.9	-2.9
	구미시	389	80.3	89.4	9.1	11.3
	영주시	115	23.7	18.7	-5.0	-21.2
	영천시	109	22.5	41.8	19.3	85.9
	상주시	94	19.4	15.3	-4.1	-21.1
	문경시	69	14.2	11.2	-3.0	-21.2
	경산시	246	50.8	96.8	46.0	90.5
	군위군	22	4.5	4.4	-0.1	-3.0
	의성군	52	10.7	10.4	-0.3	-3.0
	청송군	24	5.0	4.8	-0.1	-2.9
	영양군	20	4.1	3.8	-0.3	-7.6
영덕군	24	5.0	4.8	-0.1	-2.5	

(계속)

단체명		납세인원	납세인원 100% (A)	납세인원 70%, 징수액 30%(B)	차이액 (B-A)	차이율 [(B-A)/A]	
시·도	시·군·구						
경북	청도군	44	9.1	17.3	8.2	90.3	
	고령군	31	6.4	5.6	-0.8	-12.3	
	성주군	43	8.9	8.1	-0.8	-9.2	
	칠곡군	112	23.1	25.7	2.6	11.2	
	예천군	47	9.7	7.6	-2.1	-21.2	
	봉화군	34	7.0	5.5	-1.5	-21.1	
	울진군	30	6.2	6.1	-0.1	-1.7	
	울릉군	21	4.3	5.3	0.9	21.9	
	소계	4,805	992.0	944.0	-48.0	-105.0	
경남	창원시	1,817	375.1	324.7	-50.4	-13.4	
	진주시	353	72.9	68.1	-4.8	-6.6	
	통영시	181	37.4	33.2	-4.2	-11.1	
	사천시	121	25.0	23.3	-1.7	-6.6	
	김해시	796	164.3	183.7	19.4	11.8	
	밀양시	169	34.9	39.0	4.1	11.7	
	거제시	308	63.6	56.5	-7.1	-11.1	
	양산시	575	118.7	124.7	6.0	5.1	
	의령군	32	6.6	5.7	-0.9	-13.5	
	함안군	70	14.5	12.5	-1.9	-13.2	
	창녕군	66	13.6	11.8	-1.8	-13.4	
	고성군	74	15.3	13.6	-1.7	-11.1	
	남해군	50	10.3	9.7	-0.7	-6.3	
	하동군	53	10.9	10.2	-0.7	-6.5	
	산청군	37	7.6	7.2	-0.5	-6.3	
	함양군	27	5.6	5.3	-0.3	-4.6	
	거창군	42	8.7	8.3	-0.4	-4.7	
	합천군	34	7.0	6.7	-0.4	-5.1	
	제주특별자치도		1,240	256.0	246.6	-9.4	-3.7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록 3> 징수지 세수규모의 결정요인 분석

설명변수	FE1	FE2	FE3
1인당자체수입액	-0.7516 *** (0.1189)	-0.8913 *** (0.1182)	-0.9327 *** (0.1192)
수도권더미* 1인당자체수입액	-0.2051 (0.2198)	-0.0878 (0.2222)	-0.0055 (0.2213)
1인당재산세액	0.1157 ** (0.0491)	0.1397 *** (0.0483)	2.1630 *** (0.6382)
지역인구		-0.8243 *** (0.1881)	0.1085 (0.3665)
교차항			-0.1657 *** (0.0508)
상수항	11.3994 *** (0.5890)	21.6991 *** (2.5294)	10.5453 ** (4.5448)
관측치수	1,145	1,145	1,145
결정계수	0.0736	0.0844	0.0987

주: 모든 변수에는 로그가 적용되었음. 종속변수는 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임. FE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에 의한 추정치를 각각 가리킴. 확률효과(Random Effect)는 하우스만 검정치 분석(Hausman Specification Test)결과 기각되었음. 2008년~2012년 간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음. 자치단체의 재정력의 대리변수로 1인당 자체수입액을 사용하였음. 모형의 종류에 상관없이 1인당 재산세액이 징수지 세수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음. <부록 3>의 모든 표에서 괄호의 통계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계속)

설명변수	GMM1	GMM2	GMM3	GMM4	GMM5	GMM6
전년도증부세액	-0.0704 *** (0.0234)	-0.0657 *** (0.0231)	-0.0755 *** (0.0225)	-0.0711 *** (0.0234)	-0.0660 *** (0.0233)	-0.0756 *** (0.0226)
1인당자체수입액	-0.0460 (0.0955)	0.0557 (0.0943)	0.1082 (0.0904)	-0.0700 (0.1100)	0.0471 (0.1142)	0.1036 (0.1102)
1인당재산세액	0.5199 *** (0.0465)	0.5114 *** (0.0464)	3.7697 *** (0.6240)	0.5232 *** (0.0465)	0.5125 *** (0.0467)	3.7671 *** (0.6243)
지역인구		0.3818 ** (0.1713)	1.9624 *** (0.2947)		0.3754 ** (0.1797)	1.9571 *** (0.3009)
교차항			-0.2690 *** (0.0498)			-0.2687 *** (0.0498)
수도권더미* 1인당자체수입액				0.1329 (0.1638)	0.0388 (0.1642)	0.0236 (0.1502)
상수항	5.2269 *** (0.6802)	0.0816 (2.4319)	-19.1360 *** (3.8483)	5.1281 *** (0.6218)	0.1390 (2.5123)	-19.0884 *** (3.9176)
관측치수	687	687	687	687	687	687

주: 모든 변수는 로그가 적용되었음. 종속변수는 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임. GMM1-6은 일반화 적률법을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Data Model)에 적용하여 도출한 계수 추정치임. 자치단체의 재정력의 대리변수로 1인당 자체수입액을 사용한 경우임

(계속)

설명변수	GMM7	GMM8	GMM9	GMM10	GMM11	GMM12
전년도종부세액	-0.0712 *** (0.0235)	-0.0664 *** (0.0230)	-0.0762 *** (0.0224)	-0.0728 *** (0.0234)	-0.0680 *** (0.0229)	-0.0767 *** (0.0224)
재정자립도	-0.2479 ** (0.1048)	-0.2398 ** (0.1054)	-0.1470 (0.1015)	-0.2942 ** (0.1241)	-0.2901 ** (0.1247)	-0.1669 (0.1204)
1인당재산세액	0.5070 *** (0.0465)	0.5121 *** (0.0451)	3.6295 *** (0.6191)	0.5103 *** (0.0464)	0.5157 *** (0.0449)	3.6143 *** (0.6183)
지역인구		0.3156 ** (0.1446)	1.7850 *** (0.2810)		0.3192 ** (0.1440)	1.7783 *** (0.2811)
교차항			-0.2567 *** (0.0495)			-0.2552 *** (0.0494)
수도권더미* 재정자립도				0.2724 (0.2148)	0.2942 (0.2143)	0.1334 (0.1948)
상수항	5.7879 *** (0.4620)	1.9755 (1.8352)	-15.9205 *** (3.5298)	5.6356 *** (0.4540)	1.7688 (1.8171)	-15.9260 *** (3.5251)
관측치수	687	687	687	687	687	687

주: 모든 변수는 로그가 적용되었음. 종속변수는 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임. GMM7-12는 일반화 적률법을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Data Model)에 적용하여 도출한 계수 추정치임. 자치단체의 재정력의 대리변수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한 경우임

(계속)

설명변수	FE1_	FE2_	FE3_
1인당자체수입액	-0.7861 *** (0.1195)	-0.9232 *** (0.1188)	-0.9363 *** (0.1194)
수도권더미*1인당자체 수입액	-0.4123 ** (0.2070)	-0.2980 (0.2100)	-0.2314 (0.2041)
1인당 재산세액	0.1517 *** (0.0512)	0.1752 *** (0.0500)	1.8914 *** (0.7033)
지역인구		-0.8094 *** (0.1896)	-0.0068 (0.3936)
교차항			-0.1425 ** (0.0567)
상수항	11.3876 *** (0.5816)	21.4650 *** (2.5123)	11.8758 ** (4.8352)
관측치수	1,055	1,055	1,055
결정계수	0.0868	0.0977	0.1067

주: 모든 변수는 로그가 적용되었음. 종속변수는 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임. FE1_~FE3_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에 의한 추정치를 각각 가리킴. 확률효과(Random Effect)는 하우스만 검정치 분석(Hausman Specification Test)결과 기각되었음. 2008년~2012년 간 210개 기초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음. 자치단체의 재정력의 대리변수로 1인당 자체수입액을 사용하였음. 징수액 상위 18개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 중구, 서초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송파구,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강서구, 경기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안양시, 인천 연수구, 남동구임

(계속)

설명변수	GMM1_	GMM2_	GMM3_	GMM4_	GMM5_	GMM6_
전년도중부세액	-0.0765 ***	-0.0714 ***	-0.0779 ***	-0.0768 ***	-0.0714 ***	-0.0780 ***
	(0.0254)	(0.0251)	(0.0245)	(0.0254)	(0.0252)	(0.0246)
1인당자체수입액	-0.0696	0.0275	0.1121	-0.0815	0.0279	0.1102
	(0.0983)	(0.1001)	(0.0945)	(0.1100)	(0.1151)	(0.1098)
1인당재산세액	0.5308 ***	0.5222 ***	4.0913 ***	0.5324 ***	0.5221 ***	4.0876 ***
	(0.0500)	(0.0500)	(0.6700)	(0.0501)	(0.0503)	(0.6702)
지역인구		0.3558 **	2.0941 ***		0.3556 **	2.0901 ***
		(0.1739)	(0.3134)		(0.1803)	(0.3176)
교차항			-0.2974 ***			-0.2971 ***
			(0.0539)			(0.0539)
수도권더미* 1인당자체수입액				0.0866	0.0018	0.0163
				(0.1885)	(0.1880)	(0.1669)
상수항	5.0965 ***	0.3231	-20.8356 ***	5.0433 ***	0.3207	-20.8011 ***
	(0.6899)	(2.4745)	(4.0621)	(0.6511)	(2.5324)	(4.1063)
관측치수	633	633	633	633	633	633

주: 모든 변수는 로그가 적용되었음. 종속변수는 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임. GMM1_~GMM6_은 일반화적률법을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Data Model)에 적용하여 도출한 계수 추정치임. 자치단체의 재정력의 대리변수로 1인당 자체수입액을 사용한 경우임. 징수액 상위 18개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 중구, 서초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송파구,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강서구, 경기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안양시, 인천 연수구, 남동구임

(계속)

설명변수	GMM7_	GMM8_	GMM9_	GMM10_	GMM11_	GMM12_
전년도중부세액	-0.0776 *** (0.0255)	-0.0726 *** (0.0250)	-0.0796 *** (0.0244)	-0.0782 *** (0.0254)	-0.0732 *** (0.0249)	-0.0796 *** (0.0244)
재정자립도	-0.2718 ** (0.1094)	-0.2644 ** (0.1100)	-0.1491 (0.1057)	-0.2973 ** (0.1241)	-0.2934 ** (0.1247)	-0.1601 (0.1203)
1인당재산세액	0.5137 *** (0.0494)	0.5198 *** (0.0479)	3.8922 *** (0.6650)	0.5157 *** (0.0494)	0.5221 *** (0.0479)	3.8846 *** (0.6643)
지역인구		0.3137 ** (0.1448)	1.8872 *** (0.2977)		0.3158 ** (0.1447)	1.8832 *** (0.2977)
교차항			-0.2799 *** (0.0536)			-0.2791 *** (0.0535)
수도권더미* 재정자립도				0.1968 (0.2446)	0.2208 (0.2440)	0.1031 (0.2220)
상수항	5.5855 *** (0.4701)	1.8257 (1.8303)	-17.2684 *** (3.7144)	5.4957 *** (0.4681)	1.7022 (1.8238)	-17.2789 *** (3.7093)
관측치수	633	633	633	633	633	633

주: 모든 변수는 로그가 적용되었음. 종속변수는 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임. GMM7_~12_는 일반화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Data Model)에 적용하여 도출한 계수 추정치임. 자치단체의 재정력의 대리변수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한 경우임. 징수액 상위 18개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 중구, 서초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송파구,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강서구, 경기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안양시, 인천 연수구, 남동구임

<부록 4> 10% 징수지 귀속방식의 배분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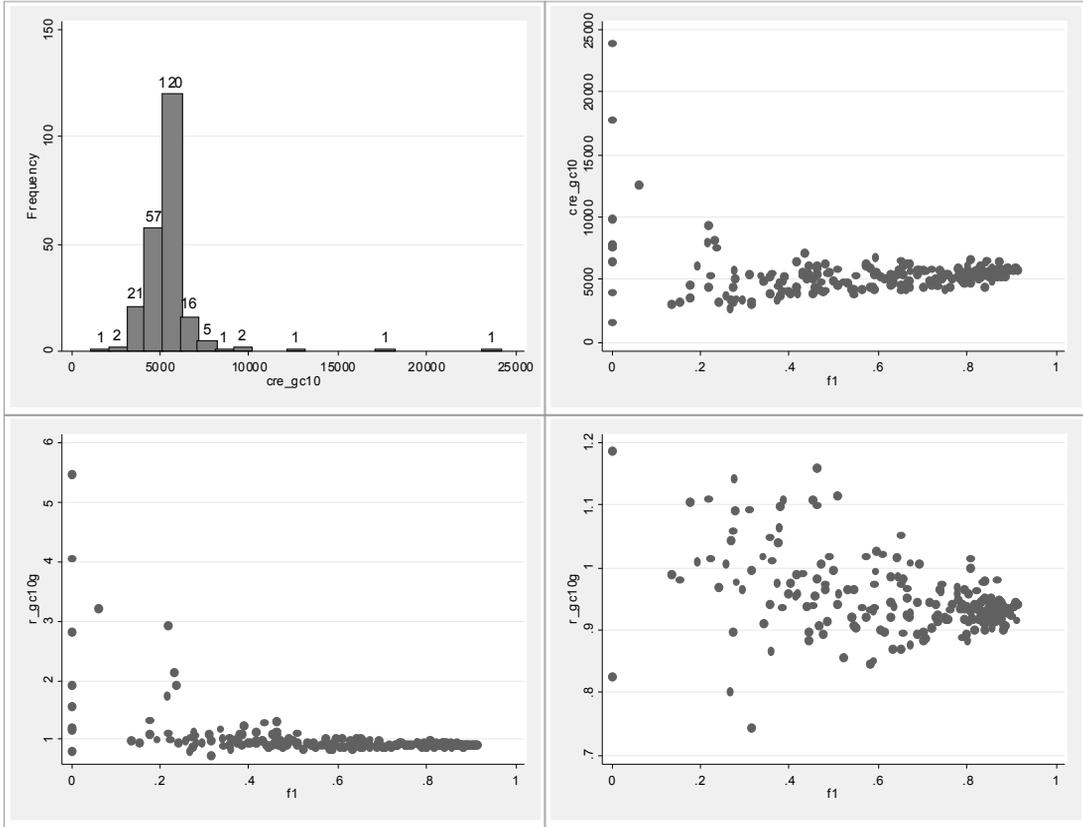
- 부동산교부세의 일부에 대해 적용되는 징수지 귀속방식의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지방세로서 종합부동산세가 지역공공재 소비에 있어서의 응익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징수비용보전금 외에 추가로 징수지에 귀속시키는 방식의 배분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5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징수지 귀속분을 도입하는 것이 응익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본문의 3% 징수지 귀속방식에 이어 본 부록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중의 10%를 징수지에 귀속시키는 방안이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우선 <부그림 1>의 왼쪽상단 도수분포도에서 교부액의 최소·최대값의 격차는 물론 자치단체들 간의 편차도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액 분포의 최소·최대 값은 각각 19.7억과 71.2억이며 표준편차는 9.5억 정도인 반면에, 10% 징수지 귀속방식을 도입하면 교부액 분포의 최소·최대 값이 각각 16.3억과 239.4억원이며 표준편차는 18.5억원로 확대됨
 - 그러나 현행 교부액 분포에서의 최대값인 71.2억원보다 교부액이 높은 11개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분포를 살펴보면, 현행 산정방식에 따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최소·최대값 및 표준편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현행 교부액 최대값인 71.2억원보다 교부액이 높은 11개 자치단체(서울 강남구, 서울 중구, 서울 서초구, 경기 성남시,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송파구, 경기 용인시, 경기 수원시, 서울 영등포구, 인천 남동구)를 제외하고 분포를 살펴보면, 최소·최대 값이 각각 16.3억원과 67.7억이며 표준편차는 8.2억으로 현행 교부액의 분포와 유사함
 - <부그림 1>의 우측상단의 산포도는 10% 징수지 귀속방식의 교부액 분포와 재정력 간의 관계를 보여주며 현행 산정방식보다 재정력과의 상관관계가 약화되었음
 - 현행 산정방식에서의 교부액과 재정력역지수 간의 상관계수는 0.733이었으나, 10% 징수지 귀속방식의 도입으로 교부액과 재정력역지수 간의 상관계수는 -0.120으로 크게 하락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그림 V-2>에서 설명한대로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은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좋아질수록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임
- 재정력에서 평균 이하인 자치단체들 중 대부분이 교부액을 현행보다 적게 배분받을 것으로 전망됨
 - <부그림 1>의 하단좌측 산포도는 재정력이 우수한(재정력역지수 값이 0.2정도보다 작은)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에서 교부세가 눈에 띄게 증가함을 짐작할 수 있음
 - 하단 산포도에서 가로축은 재정력역지수를 가리키고 세로축은 10% 징수지 귀속분 도입 전후의 교부금 비율(r_{gc10g})을 나타내며, 좌측 산포도는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우측의 산포도는 증가율이 20%이상인 자치단체를 제외한 산포도임
 - 재정력역지수 값이 평균(0.614)보다 낮은 자치단체들 중의 일부에서 교부액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이 사실이고, 재정력역지수의 값이 평균보다 낮은 (즉, 재정력이 평균보다 높은) 98개 자치단체 중에서 44곳(44.8%)의 교부액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재정력역지수 값이 평균보다 높은 130개 자치단체 중에서 겨우 5곳(3.8%)에서만 교부액이 증가하여 10% 징수지 귀속방식에 의한 교부액 산정은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교부액 변화는 일부지역에서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대다수의 자치단체의 교부액 변화는 $\pm 10\%$ 로 제한적임

- 10% 징수지 귀속분 도입으로 인한 교부액 변화는 일부지역에서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교부액이 현행보다 60% 이상 증가한 자치단체는 서울 중구(447.7%), 서울 강남구(305.8%), 서울 서초구(221.4%), 서울 종로구(193.3%), 경기 성남시(182.0%), 서울 용산구(115.5%), 경기 용인시(92.9%), 서울 영등포구(92.8%), 서울 송파구(74.5%)로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규모가 높은 지역들의 교부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
 - 반면에 교부액이 현재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단체는 부산 강서구(-25.6%), 경남 거제시(-19.7%), 경기 과천시(-17.3%), 광주 북구(-15.4%), 대구 중구(-14.9), 부산 사상구(-14.2%)의 순서임
- 그러나 총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180개(78.9%)의 교부액 변화는 $\pm 10\%$ 이내이며 이 중에서 61개(26.7%)의 교부액 변화는 $\pm 5\%$ 이내임

<부그림 1> 10% 징수지 귀속방식 적용 시의 교부액 분포와 재정력과의 관계



주: 왼쪽 상단의 도수분포도의 세로축은 각 구간별 도수의 수(frequency)를 나타내고, 가로축은 10% 징수지 귀속방식의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액(cre_gc10)을 나타냄. 산포도(scatter diagram)에서 가로축은 재정력역지수(f1)를 가리키고, 세로축은 10% 징수지 귀속방식의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액(cre_gc10) 또는 10% 징수지귀속방식의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액(cre_gc10)과 현행 방식에서의 교부액 간의 비율(r_gc10g)을 나타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

2014년 6월 30일 발행

저 자 | 박상수·구균철

발 행 인 | 허동훈

발 행 처 | 한국지방세연구원
150-8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T. 02-2071-2728
<http://www.kilf.re.kr>

인 쇄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T. 031-906-7735
ISBN 978-89-97818-87-7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